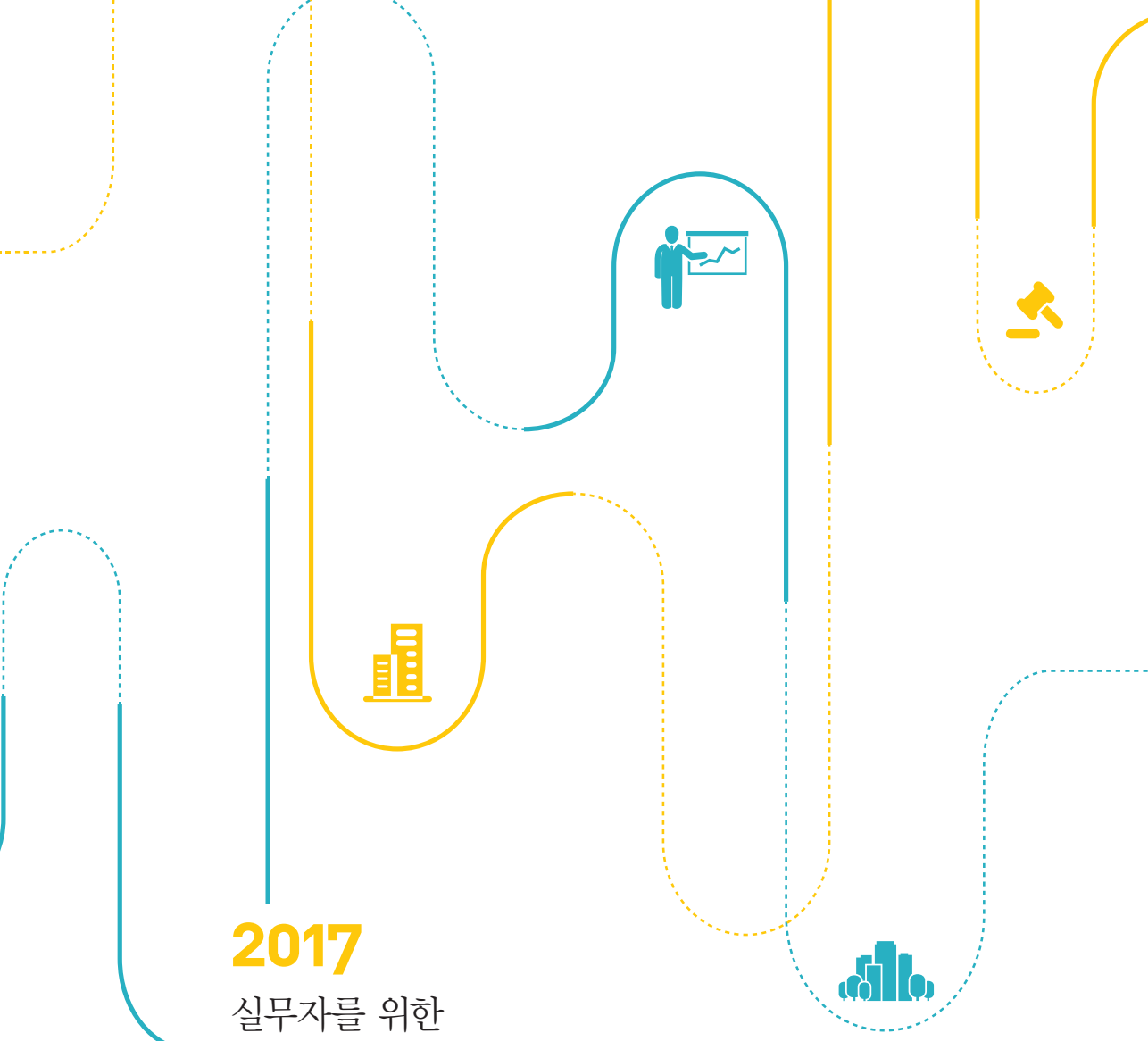

2017

실무자를 위한

비영리·공익 법인

관리·감독 업무 편람

Ministry of Justice·Republic of Korea

법무부

CONTENTS 차례

Part 1 법인제도 개관 – 5

01 법인 일반 – 6
02 법인의 종류 – 9
03 비영리법인과 구분되는 단체 – 18

Part 2 민법상 비영리법인 – 23

01 법인의 설립 – 24
02 법인의 운영과 관리 – 59
03 법인의 해산 및 청산 – 86

Part 3 공익법인 – 101

01 법인의 설립 – 102
02 법인의 운영과 관리 – 109
03 법인의 해산 – 134

Part 4 법인의 등기 – 137

01 법인의 등기 – 138

Part 5 법인의 사업·결산 및 세무 – 145

01 법인의 사업과 결산 – 146
02 법인의 세무 – 151

Part 6 법인관련 실무자료 – 171

01 법무부 법인규칙 업무 서식 – 172
02 법인 관련 주요 서식 – 181
03 법인 정관변경 관련 서식 – 245
04 법인 보고사항 등 관련 서식 – 250
05 법인 점검 및 사업실적 관련 서식 – 261
06 법인 해산·청산 관련 서식 – 278
07 공익법인 관련 서식 – 283

Part 7 주요 판례 – 296

01 법인일반 관련 – 298
02 법인의 설립·해산 관련 – 300
03 법인의 관리·운영 관련 – 308
04 법인의 사업·결산 및 세무관련 – 317

Part 8 주요 민원사례 – 321

01 법인일반 관련 – 322
02 법인의 설립·해산 관련 – 325
03 법인의 관리·운영 관련 – 329

Part 9 주요 기관 질의 사례 – 339

부록 민법, 공익법인법·시행령, 법무부 법인규칙 4단 비교 – 459

Ministry of Justice

실무자를 위한
비영리·공익 법인 관리·감독 업무 편람

Part 1 법인제도 개관

Chapter 1 **법인 일반** _ 6
01. 법인의 의의 _ 6
02. 법인제도의 필요성 _ 7

Chapter 2 **법인의 종류** _ 9
01. 구성요소에 의한 분류 _ 9
02. 영리성에 의한 분류 _ 11
03. 설립근거에 의한 분류 _ 15

Chapter 3 **비영리법인과 구분되는 단체** _ 18
01.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 _ 18
0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비영리민간단체 _ 19
0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광의의 공익법인) _ 20
04. 개별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_ 21
05. 공공법인 _ 21
06.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_ 22

Chapter 1

법인 일반

01 법인의 의의

- 권리(權利)란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생활이익 또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이익을 말한다.
- 이러한 권리의 주체에는 모든 살아 있는 사람 즉 '자연인'과 일정한 사람의 집단 즉 '사단(社團)' 및 일정한 목 재산의 집단 즉 '재단(財團)'이 있는데, 사단과 재단을 자연인과 구별하여 '법인(法人)'이라 한다.
- 즉, 법인(法人)이란 법률에 의해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 또는 재산이다.
- 이와 같이 법인은 법률관계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기관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활동한다.
- 우리 법은 「민법」 (제3장 제31조에서 제97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규칙, 각 행정부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을 통해 법인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

- 민법은 법인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자연인과 유사한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불법행위능력 등을 인정하고 있다.

- 자연인이 생존기간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과는 달리 법인은 법률의 규정과 설립등기에 의하여 성립하고(민법 제31조 및 제33조), 청산등기를 마침으로써 소멸된다(민법 제94조).

02 법인제도의 필요성

법률관계의 단순화

- 법인을 설립하면, 구성원과는 별개로 단체 자체에 법인격이 인정되기 때문에 단체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단순화시킬 수 있다.

참 고

예컨대, 1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가 사무실을 마련하기 위해서 건물을 임대하려고 할 때, 만약 자연인에게만 권리능력이 인정된다면 100명의 회원 전원이 임대계약의 당사자로 나서야 하고 상대방과의 분쟁 시에는 전체회원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건물을 매수할 경우에도 전체회원의 명의로 등기해야 할 것이며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더라도 전체회원의 명의로 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하여 법인 으로 인정하면 자연인과 같이 법인이 단독으로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다.

- 단체가 법인격을 취득하여 법인이 되면, 단체 자체가 자연인과 동일하게 자신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송에서 원·피고가 될 수 있으며 단체명의의

부동산등기나 계좌개설 등이 가능하게 되어 법률관계가 단순해지게 된다.

- 거래상대방의 입장에서도 법인으로 인정된 단체에 대해서는 권리 · 의무의 주체가 명확해지므로 원활하게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다.

법인재산과 구성원 재산의 구별

- 법인의 설립에 의해 단체에 귀속하는 재산과 구성원 각 개인에 귀속하는 재산은 상호 구별된다.

- 만약 단체에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면 단체의 영역과 구성원 개인의 영역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단체의 구성원은 단체의 공동목적을 위해서 부담하게 된 채무에 대해서도 자신의 재산으로 개인적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그러나 단체가 법인격을 취득하여 법인으로 인정되면, 법인과 구성원의 법인격이 서로 구별되므로, 법인의 재산과 구성원 개인의 재산은 엄격히 분리된다.

참 고

예컨대, 100명의 회원이 회비를 납부하여 조성된 법인의 재산과 각 회원의 개인재산은 엄격히 구분된다. 따라서 법인명의의 사업으로 벌어들인 재산은 법인의 고유재산으로 귀속하게 되고, 법인명의를 부담한 채무는 법인의 재산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법인이 벌어들인 재산을 회원이 개인적으로 착복하게 되면 횡령죄 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법인명의로 부담한 채무에 대해서 회원은 원칙적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다.

Chapter 2

법인의 종류

01 구성요소에 의한 분류 : 사단법인, 재단법인

- 법인은 법인을 구성하는 요소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회원(사원)이 중심인지, 아니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인지에 따라 크게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분류된다.

사단법인

-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의 단체(사단)에 권리주체가 되는 자격을 인정한 것으로, 구성원의 증감변동에 관계없이 존속하고, 하나의 단일체 로서 구성원으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하는 단체이다.
-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집단에 법인격을 부여한 것으로 재산을 본체로 하는 재단법인과 다르다
- 사단법인은 사람의 집단이기 때문에 구성요소인 사원이 필요하고, 최고 의사결정도 사원총회의 자주적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 이러한 사단법인은 통상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등기를 마침으로써 성립되지만, 회사와 같은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절차가 없이 법이 정한 설립요건을 갖춰 등기를 마침으로써 성립되기도 한다.

- 사단법인에 가입된 구성원을 사원이라고 한다. 사원은 반드시 자연인일 필요는 없고 단체 자체가 사원으로 될 수도 있다.

참 고

예컨대,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는 시중 은행(주식회사)이 사원이며,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는 시·도 협회나 연맹단체 및 등록팀 등을 사원으로 한다.

재단법인

-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을 중심으로 한 사업체(재단)에 권리주체가 되는 자격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모은 재산이나 출연한 재산을 개인의 권리에 귀속시키지 않고 별개의 실체로 운영하기 위해 재산을 구성요소로 성립된 법인격체라는 점에서 사단법인과 차이가 있다.

- 재단법인은 재산출연자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취지에서 설립목적을 비롯한 정관변경에 특별히 많은 제약을 두고 있다(민법 제46조).

- 다만, 재산이 의사를 표시할 수는 없으므로 (이사가 법인을 대표하여 법률행위를

하지만 인적 단체는 아니다) 사단법인과 같은 사원총회(또는 주주총회)가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재단법인의 설립은 허용되지 않는다(민법 제49조제1항).

|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비교 |

사단법인	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집단**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한 재산**
구성요소인 **사원이 필요**	**사원이 부존재**
최고 의사결정은 사원총회의 **자주적 결정**에 의해 이루어짐	**출연자의 의사**가 존중됨
사원들에 의해서 단체의 설립, 법인의 형태, 조직의 구성 및 정관의 작성과 변경 등에 있어서 **폭넓은 자율성** 인정	출연자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 정관변경에 많은 제약이 가해지는 등 **타율적인 조직**체
비영리법인뿐만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도 허용**	재단법인에는 구성원인 사원이 없으므로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만 인정**

02 영리성에 의한 분류 :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 영리를 목적으로 한 법인을 영리법인이라 한다.
- 단순히 수익사업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인이다.

- 영리법인은 모두 사단법인으로, 상법상의 회사인 합명회사 · 합자회사 · 주식회사 · 유한회사 등이 이에 해당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재단법인의 설립은 허용되지 않는다(민법 제39조).

비영리법인

가. 의의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나. 사업목적의 비영리성

- 민법 제32조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 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향우회, 동창회와 같은 사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도 가능하다.

- 비영리법인에서 말하는 "영리 아닌 사업"의 핵심은 법인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이 구성원에게 분배되는 않는다는 점이다.

- 따라서 구조적으로 이익을 분배할 구성원이 없는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언제나 비영리재단법인만 인정되고, 사단법인의 경우 이익분배 유무에 따라 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나누어지는 바, 민법을 설립근거 법률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목적의 비영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 수익사업 가부

- 비영리법인은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며 법인의 설립목적과 본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활동을 할 수 있다(예: 비영리사단법인인 학술단체가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입장료를 징수하거나 운영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간행된 잡지를 일반인에게 유상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

- 다만 이러한 수익을 구성원들에게 분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그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비영리법인이 된다. 따라서 이 경우 창출된 이익은 법인의 구성원들에게 분배되지 아니하고 법인 고유의 재산으로 적립될 뿐이다.

- 만약 구성원에게 법인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분배하게 되면 영리목적의 법인이 되어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39조).

라. 수익사업에 대한 규율

- 수익사업에 관하여는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세법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즉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 수익사업을 했을 경우 그 사업경영 범위 내에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된다.

|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두8100 판결 |

판시사항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수익사업에 있어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가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사업에 있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그 미제출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가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 그렇지만 이러한 영리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도 그 수익은 법인의 비영리 목적사업에 사용되어야 하고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어떤 단체의 성격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에 대한 판단은 우선 법인설립당시 허가를 맡은 주무관청이 하여야 하는데, 주무관청은 설립허가 신청시에 단체가 제출한 정관에 나타난 단체의 설립목적, 단체의 사업내용, 사원의 자격, 출자방법이나 자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구성원의 이익분배가능성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법인의 영리성을 판단 하여야 한다.

참 고

만약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단체가 추후 실제 활동에 있어서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으로 판명되면 주무관청은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38조 참조).

03 설립근거에 의한 분류 : 상법법인, 민법법인, 공익법인, 특수법인

상법법인

- 상법 제3편 회사편 제169조 이하에 근거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의 5가지가 이에 속한다.
- 모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영리법인)에 해당한다.

민법법인

- 민법 제3장 법인편 제31조 이하에 근거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의미하며,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통상 "비영리법인"이라고 한다.
- 민법법인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하고, 법인의 설립목적과 관련한 중앙행정기관 등(주무관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립허가와 감독이 이루어진다.

※ 각 부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적용을 받게 된다.

공익법인

- 통상 공익법인이라고 하면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총칭하지만, 법률적으로 보면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협의의 공익법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광의의 공익법인이 존재한다.

- 협의의 공익법인은 성격상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면서, 특히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요건을 갖추어 '공익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을 말한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공익법인'을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 일반 비영리법인과 비교하여 협의에 공익법인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혜택이 부여되는 반면, 공익법인법에 따른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 지게 된다.

혜택	① 출연자에 대한 상속세면제(상증법 제16조 제1항), ②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면제(상증법 제48조 제2항), ③ 고유목적준비금의 손금삽입(법인세법 제29조), ④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등
규제	① 사업범위가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범위 내로 제한 ② '이사회' 설치가 의무(제6조) ③ 임원 관련 요건이 강화(제5조) ④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상근 임직원 수를 정함(제5조 제9항) ⑤ 수익사업을 하려면 주무관청의 승인이 필요(제4조 제3항) ⑥ 기본재산 처분에 주무관청의 허가 필요(제11조 제2항) ⑦ 잔여재산 귀속이 제한(제13조) ⑧ 주무관청의 관리감독권이 구체화(제14조 제2항, 제3항) ⑨ 비영리법인의 경우 과태료 제재만이 있으나, 공익법인은 징역·벌금 등의 형사처벌 제재도 존재(제19조)

- 민법과 공익법인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써,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익법인의 설립에 관해서는 특별법 우선적용의 원칙에 따라 공익법인법 제4조 이하의 규정이 민법에 우선해서 적용되고, 해산에 관한 규정 등 공익법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은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공익법인법 제1조 참조).

특수법인

- 특수법인은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변호사법 등 각종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 비영리법인 중에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각종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을 통칭하며,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법무법인 기타 개별법에 의하여 법인격이 부여된 각종 조합 및 연합회 등이 이에 해당된다.

- 또한 강학상으로는 한국은행법, 한국도로공사법, 한국연구재단법 등 특수한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도 특수법인의 개념에 포함된다. 이를 법정법인으로 부르기도 한다.

| 법인의 분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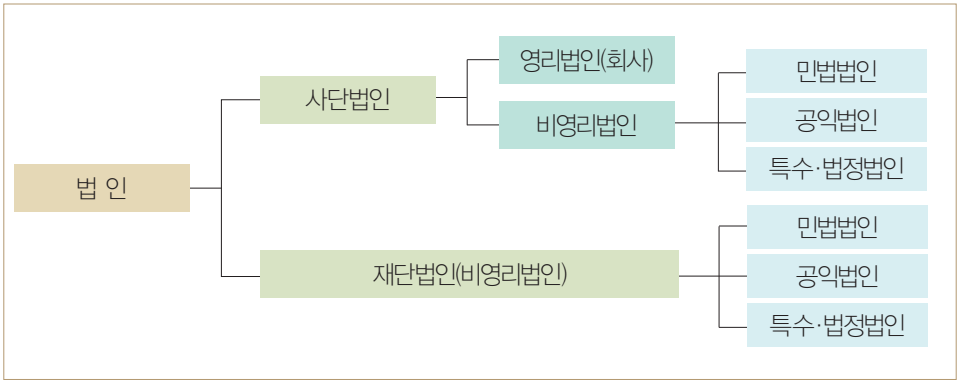

Chapter 3

비영리법인과 구분되는 단체

01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

● 법인세법 제1조는 비영리법인을 내국법인(內國法人)과 외국법인 (外國法人)으로 구분하면서, 비영리내국법인을 아래와 같이 민법에 의한 법인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다만, 법인세법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해서도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고 있는데, 법인세법상으로는 법인격이 없이 사회적 활동을 하는 이른바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법인격 없는 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도 비영리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 이러한 점에서 비영리법인에 관해서는 민법상 개념과 법인세법상의 개념이 서로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0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 정의하고 있다.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 ▶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상기와 같은 요건을 갖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법인(민법상 비영리법인,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 뿐만 아니라 법인이 아닌 단체라도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 법률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하는데(동법 제4조 1항), 이러한 점은 민법에서 법인설립을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0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광의의 공익법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는 '공익법인등'을 영위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 하에 과세를 면제토록 하고 있다.

-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법인은 '적극적으로 공익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공익을 저해하지 않는 정도로 족한 비영리법인과는 차이가 있다.

| 공익법인 등의 범위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 ▶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 ▶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 ▶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04 개별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 이외에도 각종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될 수 있다.
- 이렇게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와 연합회,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이들 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더라도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해당 개별법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그렇지만 개별법에서 규정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05 공공법인

-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지 않고 각각의 지원법 또는 육성법 등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활동내용에 공익성이 강한 정부투자기관, 공단, 기금, 사업단, 감독원, 정부투자기관이나 공사,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 관련한 법적 문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해당 법률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법인 민법이 적용될 수 있다.

06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 법인과 유사한 인적·물적 실체를 갖추고 있으나 주무관청의 법인설립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법인설립허가를 받았더라도 아직 법인설립등기를 완료하지 아니한 단체를 말한다.

- 민법이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행정관청의 지도나 감독 등 법적 규제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 처음부터 허가를 신청하지 않아 법인격을 갖지 못한 경우도 있다.

- 사회적 필요가 존재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발생은 불가피한 바, 특히 종중과 교회는 많은 구성원과 재산을 보유하여 그 재산의 귀속과 처분을 둘러싸고 자주 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재산의 법률관계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고도 민감한 문제이다.

- 부동산등기법은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에 등기능력을 부여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도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에 당사자능력을 부여하고 있다.

- 그러나 민법은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3개 조문만을 규정하고 법인 아닌 재단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의 구체적인 법률관계는 현재 학설·판례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실무자를 위한
비영리·공익 법인 관리·감독 업무 편람

Part 2 민법상 비영리법인

Chapter 1 **법인의 설립** _ 24

01. 법인설립절차 _ 24
02. 법인설립 후 조치사항 _ 52

Chapter 2 **법인의 운영과 관리** _ 59

제1절 법인의 기관구성 및 운영 _ 59

01. 법인의 기관구성 _ 59
02. 법인의 운영 _ 66

제2절 정관의 변경 _ 68

01. 정관변경의 의미 _ 68
02. 정관변경의 요건 _69
03. 정관변경과 관련한 문제 _ 71
04. 정관변경의 실무 _ 72

제3절 기본재산의 처분 _ 74

01. 기본재산 처분의 의미 _ 74
02. 주무관청의 실무 _ 74

제4절 법인사무의 감독 _ 79

01. 민법상 법인 _ 79

Chapter 3 **법인의 해산 및 청산** _ 86

01. 민법상 비영리법인 _ 86

Chapter 1

법인의 설립

01 법인설립절차

개관

- 민법 제31조는 "법인의 성립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법률의 규정에 벗어난 법인의 설립을 인정하지 않으며, 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법률이 인정하는 법정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 법인의 설립절차는 크게 ① 발기인 또는 설립자에 의한 「단체의 설립단계」와 ② 그 설립된 단체에 국가기관의 행정행위에 의한 「법인격부여단계」로 구분된다.

- 이때 설립되는 법인의 종류는 현행 민법상 사단법인 혹은 재단법인 중의 하나여야 한다. 민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비영리" 사업을 추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 「단체의 설립단계」는 설립발기인들에 의한 ① 정관의 작성 및 ② 기관의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기관의 구성은 대개 정관 작성시에 함께 이루어지게 되므로, 특히 ①을 강학상 "설립행위"라고 부른다.

● 재단법인의 경우 법인의 설립을 위해서 설립행위에 재산의 출연이 반드시 필요하다.

참 고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재산이 필요한지와 관련하여,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은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을 설립허가 요건으로 규정(제4조 제1항 제2호)하고 있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아니함. 결국 재단법인 설립에 요구되는 재산 정도는 주무관청에서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임(일부 주무관청은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법인만을 설립 허가하고 있음)

● 그 외 현행민법에는 규정되지 않았지만, 실무적으로는 사단법인의 경우 정관작성과 기관구성을 확인하는 사원총회(즉, 창립총회)의 결의가 요구된다.

● 「법인격부여단계」에서는 ③ 주무관청의 허가와 ④ 법인설립등기가 이루어짐으로써 법인설립이 완성된다. 즉 단체(사단 혹은 재단)가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 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주무관청에서 설립허가 처분을 내리게 되면, 이후 단체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설립이 완성된다(민법 제31조 및 제32조).

● 이하에서 설립절차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무관청

●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사단 또는 재단)가 법인으로 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민법 제32조). 따라서 사단이나 재단이

법인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었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법인으로 성립되지 못한다.

- 주무관청이란 법인의 목적사업을 주관하는 행정관청을 의미한다. 어떤 단체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하고자 할 때 어느 관청에다가 허가신청을 해야 하는가는 법인정관에 기재된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참 고

예컨대 법인의 사업이 법률문화의 진흥을 위한 목적이라면 법무부장관,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한다면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청장, 자선·보건· 위생사업이 목적인 경우는 보건복지부장관, 종교·예술·문화사업 등의 목적이라면 문화관광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된다.

- 구체적으로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의 확인은 '정부조직법'에 적시된 소관사무를 보고 일응 판단할 수 있다.

|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비교 |

주무관청	소관사무
기획재정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재정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국유재산·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
미래창조과학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
교육부	출연자의 의사가 존중됨
외교부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국제정세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무
통일부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
법무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
국방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
안전행정부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민방위제도,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연금,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축산, 식량·농지·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
산업통상자원부	상업·무역·공업·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외국인 투자,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지하자원에 관한 사무
보건복지부	보건위생·방역·의정(醫政)·약정(藥政)·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
환경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
여성가족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
국토교통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하천 및 간척, 육운·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
해양수산부	해양정책, 수산, 어촌개발 및 수산물 유통, 해운·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

- 상기의 정부조직상 주무관청의 업무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확한 설립허가 업무 처리 관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동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무관청	법인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 받은 기관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장 우정사업본부장 (우정사업 관련한 법인에 국한)
교육부장관	교육감
외교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안전행정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문화체육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문화재청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농촌진흥청장	특별시농업기술센터소장, 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자치시농업기술센터소장, 도 농업기술원장 및 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산림청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중소기업청장	지방중소기업청장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고용노동부장관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참 고

※ 법인의 목적이 두 개 이상의 행정관청의 소관사항인 때에는 해당 행정관청 으로부터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중 하나의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충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예컨대 법인이 문화·체육 관련 내용(문화체육부)을 교육·연구(교육부 또는 교육감)하는 사업을 할 때, 법인이 2가지 이상 복수의 사업을 동시에 목적 사업으로 하려고 할 때 어디가 주무관청인지가 문제된다.

- 민법에는 이에 관한 해당규정이 없으며, 현재 이에 관한 명확한 판례도 없는 상태이다. 학계에서는 해당 행정관청이 모두 주무관청이므로 해당 행정관청의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한다는 복수설과 그 중의 어느 한 관청으로부터 허가로 족하다는 단수설이 대립하고 있다(제3판 주석민법 총칙 1권 599면에서는 양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 민법이 법인설립 허가주의를 취하는 이유는 무분별한 법인 난립을 방지하고 법인을 관리·감독하기 위해서인데, 업무 소관 행정관청이 아니면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를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재로서는 학설상 다수설과 같이 각각 설립허가를 받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 하나의 주무관청 허가만으로 충분하다고 해석한다면, A사업을 관장하는 주무관청이 그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B사업에 관한 부분까지 허가 및 관리·감독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 그런데 참고로, 공익법익법이 적용되는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5조 제2항에서 주된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이 설립허가의 주체가 되고, 다른 행정관청과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예를 들어 설립허가 신청을 하는 법인이 A, B 2가지 목적사업을 수행하려고 하는데, B 사업이 극히 부수적인 내용이고 A 사업 주무관청에서 전체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한 정도라면 A 사업 주무관청에서 단독 설립허가도 가능할 것이지만, B 사업이 일정 정도 비중이 있고 B 사업 주무관청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A 사업 주무관청에서 B 사업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설립허가 여부를 정하고, A와 B 사업의 비중이 상당정도 대등한 경우에는 양 주무관청 모두의 설립허가가 필요하다고 해석함이 관련 법령 해석에도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서 실무적인 문제도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 한편 주무관청의 허가 여부는 주무관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며, 따라서 비록 법인성립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大判 1996. 9. 10. 선고 95누18437 판결 등).

|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8437 판결 |

판시사항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성질과 주무관청의 재량의 정도
판결요지	민법은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의 자유 설립을 부정하고 있고, 제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 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며,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법인설립 불허가처분에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다든지 또는 사회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고, 주무관청이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판단 과정에 일응의 합리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허가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구비서류

법 인 별 구 비 서 류		근거법령	비영리법인 (민법)		공익법인 (공익법)		비고
			사단	재단	사단	재단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비영리법인용, 공익법인용 구분)	법인규칙 제3조, 동 별지 제1호 서식	○	○	○	○	공통
2	설립취지서 (임의서식으로 작성)	공익법인령 제4조 제1항 제1호	△	△	○	○	공통
3	설립발기인의 인적사항(성명·주소·약력)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법인규칙 제3조 제1호; 공익법인령 제4조 제1항 제1호	○	○	○	○	공통
4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약력을 적은 서류	법인규칙 제3조 제5호; 공익법인령 제7조 제1항 제2호	○	○	○	○	공통
5	임원 취임승낙서(서명·날인요함)	법인규칙 제3조 제5호; 공익법인령 제7조 제1항 제4호	○	○	○	○	공통
6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사후 발견시 임원취임 취소)	공익법인령 제7조 제1항 제7호	×	×	○	○	공익법인
7	창립총회회의록 (회의록 내용상의 별첨서류 첨부·간인)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규칙 제3조 제6호 공익법인령 제4조 제1항 제8호	○	×	○	×	사단법인
9	정관 (필요적 기재사항 확인)	법인규칙 제3조 제2호; 공익법인령 제4조 제1항 제3호; 민법 제40조, 제43조	○	○	○	○	공통

법 인 별 구 비 서 류		근거법령	비영리법인 (민법)		공익법인 (공익법)		비고
			사단	재단	사단	재단	
10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표	공익법인령 제14조	△	△	○	○	공통
11	재산목록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	법인규칙 제3조 제3호; 공익법인령 제4조 제1항 제4호	○	○	○	○	공통
12	재산출연증서(기부신청서)	법인규칙 제3조 제3호; 공익법인령 제4조 제1항 제4호	△	△	○	○	공통
13	재산증명서(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법인규칙 제3조 제3호; 공익법인령 제6호	△	△	○	○	공통
14	회비징수 예정명세서 또는 기부신청서	공익법인령 제4조 제1항 제4호	△	×	○	×	사단법인
15	사원명부 (성명·주소) ※100명이 넘을 경우 "이상 100명외 ○○명"으로 총수 기재서류	공익법인령 제4조 제1항 제8호	△	×	○	×	사단법인
16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법인규칙 제3조 제4호	○	○	×	×	비영리법인
17	사업개시예정일 및 사업개시이후 2 사업년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공익법인령 제4조 제1항 제7호	×	×	○	○	공익법인
18	사무실 확보증명서 (※건물사용승낙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건물소유권 입증서류 등)	민법 제33조, 제36조	△	△	△	△	공통

○ : 근거법령에 의한 제출서류
△ : 근거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설립허가 검토시 필요한 서류
× : 제출하지 않는 서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사이트(http://www.law.go.kr)에서 '법인'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비롯하여,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을 열람할 수 있으며, 각 규칙의 하단에 첨부된 서류를 활용할 수 있다.

법무부소관 비영리법인 설립절차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함)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인규칙 제3조).

-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정관 1부
-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1부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재산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1부
- 수입·지출 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약력을 적은 서류
- 임원취임승낙서 1부

(취임하는 임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 창립총회회의록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관련서류의 작성·기재시 유의사항

임원취임승낙서

- 임원취임자의 취임 승낙의사 표시와 인적사항을 기재한다.
- 이사 및 감사 등의 직위와 취임기간을 명시하고 날인한다.

창립총회회의록

- 회의록에는 설립취지, 정관의 심의·의결, 임원선출, 재산출연 및 수증에 관한 사항 의결,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 의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 발기인 전원이 기명하고 인감 날인한다.
- 회의록의 각 면과 면 사이에 발기인 전원 인감 간인한다.

재산출연증서

- 출연인의 인적사항, 출연일자 기재 후 인감을 날인하고 출연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 주식, 예금 등의 출연행위에 대하여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재산목록

- 법인이 출연하는 재산 중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회계연도 세계잉여금으로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출연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금액은 감정평가액을 기재
- 기본재산 :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평가가액 등을 기재
- 보통재산 :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금액 등을 기재

- 기본재산이 수익발생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익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수익산출 근거를 명시한다.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이 발행하는 증빙서류(수익확인서, 배당이익 증명서, 이자수익확인서, 납세필증 등)첨부

● 사업 수입·지출예산서

- 기본방향, 주요추진사업, 주요사업별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수지예산서의 내용이 담기도록 작성한다.

● 사무소의 사용 가능성을 증명하는 서류

- 법인규칙에는 적시되어 있지 않으나, 민법상 사무소 소재지의 등기를 위해 사무소의 확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 건물사용승낙서,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소유권 입증서류 등을 제출한다.

설립행위(정관작성 등)

- 사단법인에 있어서 설립행위는 곧 법인의 「정관의 작성」을 일컫는 것이지만, 재단법인에 있어서 설립행위란 법인의 「정관의 작성」과 함께 「재산의 출연」을 의미한다.

(1) 의의

-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란 설립자(발기인)가 장차 성립될 사단법인의 근본규칙인 정관을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 민법은 설립자가 정관을 서면에 작성하여 기명날인 할 것을 요구하여(민법 제40조), 설립행위를 일종의 요식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설립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정관은 효력이 없다.
- 설립자의 수에 대해서는 민법에 언급이 없다. 다만 사단의 성질상 2인 이상은 필요하다고 해석된다. 참고로 2011년 국회 제출되었던 민법 개정안은 사단법인의 구성원을 5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2) 정관의 기재사항

- 정관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필요적 기재사항과 그렇지 않은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성된다.

■ 필요적 기재사항

- 아래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반드시 기재되어야만 하고(민법 제40조), 그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으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아 주무관청으로부터 법인설립의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 목적

-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은 영리 아닌 사업이어야 한다.

● 명칭

- 명칭사용에 특별한 제한은 없고, 「사단법인」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아도 무방하다.

- 다만 실무적으로 기존 법인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개정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서도 명시적으로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을 설립허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 사무소의 소재지

- 사무소가 수개일 때에는 이를 모두 기재하여야 하고 주된 사무소를 정하여야 한다.

- 실무적으로 도로명과 건물번호, 건물명, 호수까지 모두 기재함이 타당하다.

● 자산에 관한 규정

- 민법에는 어느 정도까지 자산에 관한 규정을 표시하여야 하는 지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통상적으로 주무관청 및 일반의 제3자에게 비영리법인의 견실한 재정적 기초를 알리는 데 필요한 정도라고 해석된다.

- 구체적으로 자산의 종류 · 구성 · 관리 · 운용방법 · 각 사원의 출자액 · 출자의무(회비)에 관한 것이 그 기재사항이 된다.

- 개정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서는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을 법인 설립허가 요건으로 규정(제4조 제1항 제2호)하고 있다.

●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 이사의 임면방법에 관한 규정, 즉 이사의 수, 자격, 임기, 선임과 해임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여기에 해당된다.

- 이사 및 감사의 수를 정관에서 확정할 필요는 없고, 'O명 이상의 이사', 'O명 이하의 감사' 식으로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 민법에는 이사선임방법에 관한 제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이사는 반드시 사원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하지 않아도 되고, 사원이 아닌 자를 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도 무방하다.

●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 사원의 자격, 입사, 퇴사, 제명 등에 관한 사항을 의미한다.

※ 절대로 퇴사를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퇴사의 조건으로 부당한 위약금을 정하는 것과 같은 정관규정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규정으로 무효일 수 있다.

●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이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특히 이를 정하고 있는 때에만 기재하면 된다.

■ 임의적 기재사항

- 정관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말한다. 임의적 기재사항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 임의적 기재사항이라도 일단 정관에 기재되면 필요적 기재사항과 마찬가지의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이를 변경하려면 정관변경의 절차(즉 주무관청의 허가와 정관변경등기)가 필요하다.

나. 재단법인설립의 경우

-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즉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란 사단법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관의 작성행위가 필요하지만, 그 외에도 법인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재산의 출연행위가 요구된다.

- 재단법인의 정관기재 필요적 기재사항은 위의 사단법인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에서 2가지가 제외된다. 즉 재단법인에는 사단법인과 달리 사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정관의 내용이 되지 못하며,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도 민법은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들 기재사항을 제외하고는 사단법인의 정관작성과 동일하다. 따라서 재단법인에서의 정관작성은 설립자가 이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요식행위이다.

- 재단법인의 설립은 생전처분으로 할 수 있고 유언으로도 할 수 있다.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이 그리고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게 된다(민법 제47조).

기관의 구성

가. 개설

- 법인이 의사를 결정하고, 그 의사에 의거하여 외부에 대하여 행동하며, 내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직이 필요한데, 이 조직을 이루는 것이 법인의 「기관」이다. 여기에는 의사결정기관, 의사집행기관, 감독기관 등이 존재한다.

- 기관은 법률상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요기관과 둘 수도 있는 임의기관으로 나뉜다. 대표기관이자 집행기관인 「이사」는 모든 법인이 두어야 하는 필요기관이지만, 이사의 감독기관인 「감사」는 민법상 법인에는 임의기관이다(다만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에는 필요기관이다). 법인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에게는 필요기관이지만, 재단법인에는 성질상 존재하지 아니한다.

- 여기서는 법인설립을 위한 기관구성에 관해서만 기술하고, 기관의 운영에 관해서는 「법인의 임원 및 운영」부분을 참고하기 바란다.

나. 이사

-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대표기관), 대내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업무집행기관), 상설적인 필요기관이다.

-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에는 반드시 이사를 두어야 한다(민법 제57조).

- 이사의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정관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다.

- 이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자연인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통설이다. 그러나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의 형을 받은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형법 제43조·제44조).

- 이사의 임면방법은 정관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 이사의 성명·주소는 등기사항이며(민법 제49조 제2항),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이사의 선임·해임·퇴임을 가지고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54조 제1항).

다. 이사회

- 이사가 수인 있는 경우 이사들로 구성된 회의체인 이사회를 둘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민법은 이사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이사회는 필요기관이 아니라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는 임의기관이다.

라. 사원총회

- 사단법인에는 사단법인을 구성하는 사원의 전원으로써 구성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사원총회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즉 '필요기관'이다). 사원이 없는 재단법인에는 사원총회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 사단법인은 정관의 변경·법인의 해산 등을 비롯한 사단법인에 관한 모든 근본적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면서 필요기관이므로, 정관의 규정에 의해서도 이를 폐지하지 못한다.

마. 감사

-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민법 제66조). 즉 현행 민법상 감사는 필요기관이 아닌 임의기관이다.

- 이사와는 달리, 감사의 성명 · 주소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주무관청의 허가서 교부

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업무

- 법인설립허가를 하는 기준에 대하여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은 제4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비영리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 법인허가 신청자가 실시하고자 하는 주된 목적사업이 비영리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목적사업은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이고, 지속적인 사업의 유지 · 증진 또한 가능하여야 한다.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 임원에 결격사유는 없는지, 이사 등이 관련분야의 충분한 경력을 갖추고 있는지, 감사가 법인업무와 회계에 충분한 지식을 가진 자인지의 여부 등 인적 기초의 검토가 필요하다.

- 출연재산의 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져 있고, 부동산의 경우에 법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여 여부 재산권 확보가 가능한지 여부 등, 물적 기초의 검토 또한 필요하다.

⑶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 설립허가 신청법인의 명칭은 유사 법인의 명칭과 혼동이 되기 쉬우므로 기존 법인의 명칭과 다르게 정해야 한다.

●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허가조건의 예

- 법인설립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실시할 것
- 목적사업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중단하지 말 것
  – 법인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할 것 등

나. 설립허가시 검토사항

⑴ 재량에 의한 판단사항

● 법인설립의 필요성

- 법인의 설립 목적과 목적사업의 비영리성, 법인의 목적사업이 공익을 해하지는 않는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설립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다.

- 법인의 명칭, 목적사업 등이 법무부 관련 법인의 범위와 소관 업무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다.

● 법인의 독자성과 전문성

- 법인의 명칭이 기존법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법인설립을 불허한다.
- 법인의 목적과 주된 활동이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것을 지양한다.
- 법인의 명칭과 목적, 사무소 소재지, 사업내용(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이 체계적으로 합치되어야 한다.

※ 재단법인의 경우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 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민법 제44조).

●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

- 법인의 목적사업이 막연하고 추상적이어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과거활동실적과 인적 구성 · 물적 설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현가능성을 판단한다.

●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 사단법인의 경우 필수 구성요소인 회원의 수와 자격, 연회비 액수의 적정성, 회비 징수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인 운영의 실효성이 확보되었는지를 검토한다.
- 재단법인인 경우 출연재산의 규모, 출연재산이 법인 설립등기 즉시 법인으로 이전 가능한지 여부와 재산출연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출연재산의 활용 가능여부를 검토한다.

- 출연재산으로부터 과실금(재단법인의 경우), 회비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사단법인의 경우)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다.

- 출연재산의 기준으로 어떤 정도가 적정한지는 주무관청 및 목적사업별로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재정의 적정성 판단시 고려할 사항

출연재산으로부터의 과실금 또는 회비와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 총규모와 대비하여 판단한다. 기본재산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부동산(대지, 건물, 임야 등) 또는 재산감소가 초래되지 않는 동산(현금, 임차보증금)으로 구성된다. 기본재산 중 부동산은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상의 감정평가금액 중 부동산등기부상 담보권 설정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임차보증금은 부동산 등기부상 선순위 담보권 설정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기본재산의 연간 수익발생 시기 및 수익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2) 기속적 검토사항

-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의 누락여부를 검토하고, 보완불능시 설립을 불허한다.

- 구비서류의 누락여부 검토하고, 누락시 보완을 요청한다.
  - 설립발기인의 날인, 임원취임예정자의 취임승낙서의 날인과 인감대조 등
  - 각종 증명서의 유효기간 경과 여부 등

다. 주무관청의 법인설립허가

■ 처리기간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법인규칙 제4조 제2항)

※ 주무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처리방법

●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은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 허가하는 경우에는 법인규칙 제2호서식에 따른 법인설립허가증을 발급한다.

■ 설립허가조건

● 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참 고

허가조건의 예

- 법인설립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실시할 것
- 목적사업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중단하지 말 것
- 법인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할 것 등

권고사항

- 매년 가시적인 활동실적이 있을 것
- 주무관청 시정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지 않을 것
- 목적사업을 위한 부대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운영하거나 그 수익금을 목적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

● 허가증 발급 시 대장에 등재

- 신청서 구비서류 및 법인관련서류는 법인이 존속하는 동안 별도대장으로 관리한다.

■ 설립허가후 변경사항의 처리

● 설립허가 후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허가 관청은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허가증을 재발급 하거나 발급된 허가증(앞면 또는 뒷면)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통보한다.

- 법인의 명칭 변경 (정관변경허가 신청 필요)
- 사업내용 변경 (정관변경허가 신청 필요)
- 허가조건 변경
- 소재지 변경 (정관변경허가 신청 필요)
- 대표자 변경

허가 이후의 후속절차

가. 법인

● 허가서를 전달받은 법인은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설립등기 : 관할등기소에 등기

● 사단이든 재단이든 법인성립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은 때로부터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49조 제1항).

- 이때 등기기간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기산한다(민법 제53조).
- 「주된 사무소」란 사무소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법인활동의 중심을 이루는 사무소를 말하지만, 설립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형식적으로 정관과 등기부에 주된 사무소로 기재된 사무소를 의미한다.
- 등기를 해태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민법 제97조).
- 등기사항(민법 제39조 제2항)

① 목적

- 법인이 영위 또는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제3자가 알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 사업의 종류도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② 명칭

- 법인의 명칭은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는 명칭을 제외하고는(은행법 제14조, 보험법 제8조 제2항 등)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 다만, 법인명칭의 등기시에 법인의 종류(즉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를 부기하여야 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4조).

③ 사무소

- 법인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사무소가 수개인 때에는 그 중 1곳을 주된 사무소로, 나머지를 분사무소로 등기한다.

- 정관에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할 때에는 최소행정구역까지만 기재하여도 무방하지만, 등기상에는 소재지의 구체적인 지번까지 등기하여야 한다.

④ 설립허가의 연월일

- 주무관청으로부터 교부받은「설립허가서」에 기재된 일자를 등기한다.

⑤ 존립시기나 해산사유

- 법인이 존속하기로 하는 기간을 미리 정하여 놓거나, 법정해산사유 이외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법인이 해산하기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⑥ 자산의 총액

- 자산의 총액이란 정관상의 기본재산은 물론 기타 법인이 보유하는 일체의 적극재산의 총액에서 채무 등의 소극재산을 공제한 순재산액을 의미한다.

-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시에 자산총액이 전혀 없어도 상관이 없지만,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자산총액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사단법인의 경우에도 자산총액이 0원으로 기재할 수는 있지만, 자산총액을 미정 혹은 공란으로 하여 등기할 수는 없다.

⑦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 가령 사단법인의 정관에 발기인이나 사원들의 출자의무에 관한 규정이

있거나, 재단법인의 정관에 설립자가 정기적으로 출연하기로 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사항은 등기하여야 한다.

⑧ 이사의 성명 · 주소

- 법인의 이사의 성명과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 이사의 등기시에 주민등록번호도 등기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62조).

⑨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정관이나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다(민법 제59조 제1항).
- 그러한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등기하여야 하며,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대표권이 제한되어 있음을 이유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60조).

(2)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관할세무서에 신고

(3) 재산이전: 출연재산 법인명의로 이전

(4) 법인설립등기 완료사실 및 법인에게로 재산이전 완료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

나. 법인 설립허가사실 통보(주무관청 → 세무서)

- 설립허가 후부터 주무관청은 다음의 사항을 지도 · 감독하여야 한다.

① 재산이전 및 등기 보고

② 설립허가 취소 등 제재사항

③ 임원 결원방지

④ 사전허가(승인) 및 보고사항 적기 수행

(i) 기본재산 처분 허가

(ii) 기본재산편입예외 기부금 사용승인(공익법인)

(iii) 예산 및 결산 보고

(iv) 수익사업 : 정관변경 허가 및 사업별 승인(공익법인)

(v) 상근임직원 정수 승인(공익법인) 등

- 비영리법인도 상증법상의 공익법인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세무서에 통보함이 타당하다(상증법 제48조 제7항).

02 법인설립 후 조치사항

법인설립등기

- 주무관청으로부터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49조). 실무적

으로는 이때 대표자 인감등록을 하게 된다.

- 신청자는 주무관청의 허가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3주간 내에 등기한다.
- 법인설립의 등기는 법인을 대표할 사람이 신청하고, 등기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 법인의 정관 ·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주무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
  - 재산목록
- 설립등기할 사항(민법 제49조 제2항)은 다음과 같다.
  - 목적
  - 명칭
  - 사무소
  - 설립허가년월일
  -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자산의 총액
  -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 이사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민법 제49조에는 등기사항으로 이사의 성명, 주소만을 적시하고 있으나, 비송사건절차법 제62조는 이사의 주민등록번호도 등기하도록 요구함)
  -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 소요되는 등기비용에는 등록세, 교육세, 기타부대비용(공증료,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기타 실비상당액) 등이 있다.

참 고

등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후술(제2장 법인의 설립과 해산 등, 제4절 법인의 등기 참고)

설립등기 등의 보고

- 법인은 법인설립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법인규칙 제5조 제2항).

참 고

개정 전 법인규칙 제6조는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개정 법인규칙은 주무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등기사실을 확인하게 하고, 신청인에게는 보고의무만을 부여하였다.

재산이전 등 이행결과보고

- 공익법인(재단법인에 한정)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출연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3개월 내에 주무관청에 이행결과 보고를 하여야 한다(공익법인법 시행령 제8조).

- 이행결과 보고시, 재산이전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를 제출하되,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부동산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 (예시 : 예금잔고증명, 주식소유증명서, 기타 권리증명 증빙서류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 이행결과 보고시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 실무적으로 출연하기로 한 보통재산이 설립등기 비용 등으로 차액이 발생한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기본재산으로 출연된 재산 중 유동성이 심한 예금 등은 법인재산에서 손실 또는 유출되는 경우가 없도록 수시로 재산변동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가. 법인설립신고

-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 법인설립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 사업 목적
  - 설립일

나. 사업자등록신청

- 법인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 사업자는 상기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보게 된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2항).

장부 및 서류의 비치

가. 재산목록의 작성(민법 제55조 제1항)

- 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년 3월내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한다.

  ※ 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은 성립한 때 및 그 연도 말에 이를 작성)

나. 사원명부의 비치(민법 제55조 제2항)

- 사단법인은 사원명부를 비치하고 회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 기타 장부 및 서류의 비치

- 법인은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번호	서류 및 장부명	보존기간	근거
1	재산목록	10년 이상	해석상
2	장부와 중요증빙서류	10년	상법 제33조,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3	전표	5년~10년	법인세법 제112조, 상증법 제51조, 상증령 제44조, 소득세법 제160조
4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서류	3년	근로기준법 제41조·제42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제22조
5	사원(회원)명부(사단법인)	영구	해석상
6	회의록	10년 이상	해석상
7	설립허가서(정관포함), 정관변경허가서(정관포함)	영구	해석상
8	임원취임(해임) 승인 문서	영구	해석상
9	기타 허가·승인·보고 문서	(10년)	소관부처 규칙에 따름 해당규칙 없으면 중요증비서류에 준함

- 재산목록 및 회의록의 보존기간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규정은 없으나, 장부와 중요증빙서류의 보존기간이 10년인 점을 감안하여 최소 10년은 보존할 필요가 있다.

- 상법 제33조는 전표의 보존기간을 5년으로 따로 정하고 있으나, 상증법 제51조는 전표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장부 및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빙서류를 모두

10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는 점, 상증령 제44조가 일정한 경우에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장부로 인정할 수도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10년간 보존할 필요가 있다.

- 사원(회원)명부의 보존기간에 대한 직접 근거규정은 없으나, 민법이 사원(회원)의 변경사항을 사원(회원)명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사원(회원)은 사단법인의 본질이므로 법인이 존재하는 동안 보존되어야 한다.

- 정관과 설립허가는 법인이 인격을 부여받은 근거이므로, 설립허가서 (정관포함) 및 정관변경허가서(정관포함)는 법인이 존재하는 동안 보존되어야 한다.

- 임원취임(해임) 승인 문서는 법인의 역사를 나타내고, 책임의 귀속을 판단할 자료이므로 법인이 존재하는 동안 보존되어야 한다.

- 개별법 또는 다른 관청이 위에서 정하지 않은 장부 · 서류의 비치의무를 정하거나 위의 기준이상의 보존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Chapter 2

법인의 운영과 관리

제1절 법인의 기관구성 및 운영

01 법인의 기관구성

이사

가. 의의

-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대표기관), 대내적으로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업무집행기관) 상설적인 필요기관이다.
-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에는 이사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민법 제57조). 이사의 수에는 제한이 없고 정관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다.
- 이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자연인에 한정되며,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의 형을 받은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형법 제43조, 제44조).

나. 이사의 임명과 해임

- 이사의 임명과 해임에 관한 규정은 정관에서 정한다. 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 이사의 선임행위에 관해서는 유임 내지 중임금지의 규정이 없으므로, 임기만료후에 이사의 개임(改任)이 없었다면 묵시적으로 다시 선임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 대법원 1970. 9. 17. 선고 70다1256 판결 |

판결요지	법인 대표자의 유임 내지 중임을 금지하는 규약이 없는 이상, 임기만료 후에 대표자 개임이 없었다면 그 대표자를 묵시적으로 다시 대표자로 선임하였다고 해석할 것이다.

- 이사의 해임과 퇴임도 정관에 의하여야 하지만, 정관에 규정이 없거나 규정이 있더라도 불충분한 경우에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따라서 이사는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물러난 후에도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65336 판결 |

판시사항	민법상 법인의 이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사임한 경우,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민법상 법인의 이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사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 이사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후임 이사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남아 있는 다른 이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때에는, 구 이사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만약 동일인이 이사에 재선되어 중임이 된 경우에 비록 그의 성명·주소에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일단 이사자격을 상실하고 새로운 자격을 취득한 것이므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52조 참조).

다. 이사의 직무권한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 법인과 이사의 관계는 특수한 위임관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충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할 법적 의무가 있다(민법 제61조 참조).

- 이사가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이사가 수인인 경우는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민법 제65조).

(2) 법인의 대표권

■ 각자 대표의 원칙

-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민법 제59조 제1항).
- 대표하는 사무는 법인의 모든 사무로 제한이 없다.
- 각자 대표하므로 이사가 수인 있어도 각 이사는 단독으로 대표할 수 있는 단독대표가 원칙이다.

■ 대표권의 제한

- 다음의 경우에는 이사의 대표권이 제한된다.

[정관에 의한 제한]

-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고 정관에 기재하지 않는 대표권의 제한은 무효이다(민법 제41조)
- 정관에 기재한 경우에도 이를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60조).

[총회의 의결에 의한 제한]

- 이사가 사단법인을 대표하는 데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단법인의 이사의 대표권은 회원총회의 의결로써 제한할 수도 있다(민법 제59조제1항 단서)

[이익상반의 경우]

-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어(민법

제64조 전단), 임시이사 선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민법 제64조 후단).

- 특별대리인의 권한은 해당사항에 한하여 법인을 대표할 수 있을 뿐이나, 법인의 대표기관임은 이사와 동일하다.

참 고

이사가 여러 명이 있고 그 가운데의 일부의 이사와 법인의 이익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는 민법에 규정이 없으나, 이때에는 다른 이사가 법인을 대표하고 다른 이사가 없는 경우에만 특별 대리인이 법인을 대표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다.

[복임권의 제한]

- 이사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대표권을 행사하여야 하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는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의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민법 제62조). 그러나 포괄적인 복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3) 법인의 업무집행권

- 이사는 법인의 모든 내부적 사무를 집행한다(민법 제58조 제1항).
-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 이사가 집행하여야 할 주요한 사무는 다음과 같다.
  - 재산목록의 작성(민법 제55조 제1항)
  - 사원명부의 작성(민법 제55조 제2항)

- 사원총회의 소집(민법 제69조, 제70조)
- 사원총회의사록의 작성(민법 제76조)
- 파산신청(민법 제79조)
- 청산인이 되는 것(민법 제83조)
- 각종의 법인등기

라. 기타 집행기관

(1) 이사회

- 이사회는 법인의 업무집행을 결정하기 위하여 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이사의 의결기관이다. 민법은 이사가 수인 있는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회를 법인의 당연한 기관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 즉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는 필요기관이 아니다.

-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총회가 최고의사결정기관이지만, 재단법인에는 사원총회가 없으므로 이사회를 두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최고의사결정기관의 역할을 하게 된다.

- 이사회에 관하여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러한 규정이 없으면 사원총회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 한다(통설).

(2) 임시이사

-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민법 제63조). 정식이사가 선임되면 임시이사의 권한은 당연히 소멸된다.

(3) 직무대행자

- 이사의 선임행위에 흠이 있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가처분으로 선임하는 임시기관이다(민법 제52조의2).
-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으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통상사무가 아닌 행위도 할 수 있다(제60조의2).

(4) 특별대리인

-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이사에 갈음하여 법인을 대표하는 임시기관이다(민법 제64조, 제63조).

감사

-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의결로 감사를 둘 수 있음(민법 제66조). 즉 민법상 비영리법인에서 감사는 필요기관이 아니다.
- 감사는 법인을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감사의 성명·주소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민법 제67조).
  -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사하는 일
  -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부정 또는 불비한 것을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 요구하는 일

- 감사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 의무에 위반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민법 제390조).

02 법인의 운영

사원총회

가. 사원총회의 위상

- 사원총회는 재단법인에는 없고 사단법인에만 존재하는 기관으로 최고의 필수 의사결정기관이다.

- 총회는 사단법인의 필수기관으로 정관에 의하여 이를 폐지할 수 없다.

-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회원은 누구나 평등한 지위에서 사단법인의 운영에 관한 최고의사 결정권을 가진다.

나. 총회의 종류와 소집

(1) 통상총회(정기총회)

- 통상총회는 해마다 한 번 이상 일정한 시기에 소집한다(민법 제69조).

- 소집 시기는 정관 또는 회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지만 만일 그 시기에 관하여 정함이 없는 경우 이사가 정한다.

(2) 임시총회

-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 개최된다(민법 제70조).
  -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 총회원의 1/5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총회원의 1/5이라는 정수는 정관에서 증감할 수 있음)
  -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3) 소집절차

- 총회의 소집은 1주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을 통지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민법 제71조).

|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2705 판결 |

판시사항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화에 의한 총회소집통지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 결의의 효력
판결요지	사단법인의 신임회장을 조속히 선임하여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업무의 공백을 메워야 할 형편에 있는 정관소정의 기한 내에 전화로 안건을 명시하여 총회소집통보를 하였으며 또한 구성원들 모두가 총회결의 등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면 총회 소집통지를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화로 하였다는 경미한 하자만으로는 총회의 결의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4) 사원총회의 권한

- 사원총회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단법인의 모든 사무에 관하여 결의할 권한을 가진다(민법 제68조).

- 특히 정관의 변경(민법 제42조)과 임의해산(민법 제77조 제2항)은 사원총회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며, 정관에 의해서도 박탈할 수 없다.

(5) 사원총회의 결의

- 총회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회소집시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민법 제72조).
- 각 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평등한 결의권을 가진다(민법 제73조 제1항).
-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민법 제74조).
-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원은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73조 제2항).

제2절 정관의 변경

01 정관변경의 의미

- 정관변경은 법인의 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정관에 규정된 기존사항을 변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항의 신설이나 기존사항의 폐지, 자구수정이나 보완케 그치는 형식적인 변경도 모두 포함된다.
- 사단법인에서는 원칙적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으나, 재단법인은 정관을 변경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02 정관변경의 요건

사단법인의 경우

-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 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변경을 위한 결의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민법 제42조 제1항).

- 정관의 변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민법 제42조 제2항).

- 정관의 변경사항이 등기사항인 경우에는 그 변경을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54조 제1항).

재단법인의 경우

- 재단법인은 원칙적으로 정관을 변경하지 못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관변경이 인정된다.

① 재단법인의 정관이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민법 제45조 제1항).

②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법인의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민법 제45조 제2항).

③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민법 제46조).

| 관련판결: 대법원 1996. 5. 16. 선고 95누4810 전원합의체 판결 |

판시사항	[1] 민법 제45조, 제46조 소정의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의 법적 성질 [2]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정관변경 인가처분의 취소·무효 확인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법 제45조와 제46조에서 말하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허가"는 법률상의 표현이 허가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성질에 있어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법적 성격은 인가라고 보아야 한다. [2] 인가는 기본행위인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이 되는 정관변경 결의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 하여도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으므로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가 적법 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 ①과 ②의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만 정관변경의 효력이 생기며, 정관의 변경사항이 등기사항인 경우에는 그 변경을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54조 제1항).

03 정관변경과 관련한 문제

- 사단법인의 경우 사원총회가 아닌 다른 기관(예, 이사회)에서 정관 변경결의를 한 경우의 유효여부
  - 정관변경은 사원총회의 전권사항이므로, 정관에서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고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도, 그 규정은 무효이다.
- 사단법인의 정관에서 그 정관을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경우에 정관변경 가능여부
  - 이 경우에도 모든 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변경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 사단법인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을 다른 것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의 여부
  - 목적의 변경도 보통의 정관변경절차에 따라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다만 비영리법인이 그의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목적도 비영리성을 가져야 한다.
- 정관목적을 추가함에 따라 다른 주무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지의 여부
  - 추가된 정관목적이 종전의 정관목적과 비교해서 종된 것이면 종전의 주무관청으로부터 정관변경허가를 받으면 될 것이지만, 종전의 정관목적과 비교하여 대등한 정도의 목적이라면 다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된다.

04 정관변경의 실무

주무관청의 허가

-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있다(민법 제42조 제2항, 제45조 제3항, 제46조).

- 법인의 정관변경을 위하여 정관변경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법인규칙 제6조)
  -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1부[별지 제4호서식]
  -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 개정될 정관(신·구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사단법인) 또는 이사회(재단법인)의 회의록 1부
  -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실무상 검토사항

가. 적법성 및 타당성

- 변경의 사유가 타당한지 여부

- 민법, 법무부규칙, 정관 등 관련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검토

-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소집통지일시 및 소집일시, 장소,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을 확인
- 의결정족수(재단법인의 경우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 사단법인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를 충족하였는지 여부
- 사업이 추가되는 경우 법인이 수행능력이 있는지 여부
- 재단법인의 경우 설립자의 설립목적에 반하지 않는지 여부 등을 검토

나. 경과규정이 필요한지 여부 검토

- 예를 들어 임원의 임기가 변경되는 경우(예:현행 임기 4년을 3년으로 변경)에 경과 규정이 없을 경우 현재 임원의 임기는 개정된 규정의 임기를 적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경과규정을 두어 정관개정 당시의 임원에게는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 정관변경에 따른 재원확보 여부

- 정관의 변경으로 사업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사회 회의록에 반드시 재원조달 계획(재산기부 승낙사실 등) 및 수입과 지출예산 등에 관한 심의·의결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변경된 사업계획서, 수입·지출 예산서 및 재산증빙서류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라. 구비서류의 누락 여부 검토

-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회의록에 이사의 서명날인 여부 등을 확인한다.

마. 변경허가 및 변경 후 조치사항

- 주무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은 법인은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변경 등과 같은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하고 등기완료한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도록 한다(법인규칙 제5조 제2항).

제3절 기본재산의 처분

01 기본재산 처분의 의미

-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된다.
- 법인의 존립기초가 되는 재산을 기본재산이라고 하고, 그러한 재산을 처분 하는 것을 기본재산 처분이라고 한다. 민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다.
- 기본재산은 법인의 존립기초가 되므로 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법인기관(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적법한 결의와 정관변경 및 이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와 변경등기가 있어야 한다.

02 주무관청의 실무

기본재산 처분 등에 따른 정관변경 대상

-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대체)의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부담 및 권리의 포기 시에는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 기본재산 처분 자체가 주무관청의 허가대상은 아니나 기본재산이 정관의 별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기본재산 변동은 정관의 개정사항이 되어 정관 변경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기본재산의 처분을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 기본재산의 처분이 정관의 변경을 가져오게 되므로, 마찬가지로 기본재산의 증가도 정관의 변경을 가져오게 되어, 기본재산의 증가시에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 대법원 1978. 7. 25. 선고 78다783 판결 |

판시사항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증가와 주무관청의 인가의 요부
판결요지	기본재산을 감소시키는 경우는 물론, 이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도 반드시 그 정관의 기재사항에 변경을 초래한다 할 것이므로, 이 두 경우에는 모두 정관의 변경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변경에는 주무부처의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주무부처의 허가가 없으면 무효임

구비서류

- 기본재산의 처분과 취득은 정관변경을 초래하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위해 제출하는 서류는 정관변경절차에 준한다(법인규칙 제6조 참고).

[공통서류]

-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1부[별지 제4호서식]
-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 개정될 정관(신·구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사단법인) 또는 이사회(재단법인)의 회의록 1부
-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그 외]

- 재산처분시 : 처분재산명세서(처분의 사유, 처분재산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 1부
- 재산취득시 : 취득재산명세서(취득의 사유, 취득재산목록, 취득의 방법 등을 기재, 취득한 재산의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 등을 첨부) 1부

검토사항

가. 처분의 불가피성과 타당성 검토

-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의 내용을 면밀히 심사하여 처분의 불가피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법인의 재산이 손실 또는 유출되는 경우가 없는지 확인한다.
- 원칙적으로 기본재산을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불허하지만 재산이 감소 되더라도 법인운영에 큰 지장이 없고 법인 목적사업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에는 허용할 수 있다.
- 인건비 등 경상비용 지출과 재산가치가 자연 감소하는 재산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허가는 지양한다.

나.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검토

- 이사회 소집 통지일시 및 소집일시, 장소,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회의 목적과 부의안건 등 확인한다.

- 이사회 회의록에 처분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고 참석이사 전원의 기명 (서명) 또는 날인 등 결의의 성립 등에 흠이 없는지 확인한다.

다. 처분의 구체성 확인

- 처분재산목록과 최근에 발행된 등기부등본 등 관련 증빙을 대조하여 구체적인 내용 확인한다.

라. 제3자의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 자격여부

- 법인의 채권자 등, 제3자는 법인을 상대로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에 대한 이행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9202 판결 |

판시사항	재단법인의 채권자가 재단법인을 상대로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이라는 실체에 대하여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므로 그 출연된 재산 즉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바로 법인의 실체인 동시에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서 이를 처분한다는 것은 재단법인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이를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이고, 재단법인이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는 기본재산의 처분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단법인의 의사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인 재단법인에 다른 재산이 없어 기본재산을 처분하지 않고는 채무의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재단법인으로부터 기본재산을 양수한 자도 아니고 금전채권자들에 불과한 자에게는 강제이행청구권의 실질적인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사유만으로 기본재산의 처분을 희망하지도 않는 재단법인을 상대로 주무관청에 대하여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

허가내용

- 주무관청은 기본재산의 매각에 관하여 정지조건부허가 또는 대체재산의 선취득을 부관으로 하여 허가할 수 있다.

| 서울고법 1968. 10. 31. 선고 68나1001 제5민사부 판결 |

판시사항	재단법인의 감독관청인 보건사회부장관이 재단 기본재산의 매각에 관하여 정지조건부허가를 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피고의 감독관청인 보건사회부장관이 대체부동산에 대한 피고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명하는 정지조건처분허가를 한 경우에 그 조건이 성취되지 못한 이상 위 허가처분은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며 기다려서 그 재산매각에 관한 허가가 없음에 귀착한다.

| 서울고법 1971. 3. 12. 선고 70나2704 제5민사부 판결 |

판시사항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함에 있어 주무관청으로부터 대체 재산의 선취득을 부관으로 한 처분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재단법인이 대체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합의해제한 것이 위 기본재산 매매계약의 이행불능 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주무관청 으로부터 대체재산의 선취득을 부관으로 한 그 처분허가를 받고 이에 따라 소외인 소유의 부동산을 대체재산으로 매수하였다가 그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함 으로써 위 기본재산 처분허가의 부관을 성취되지 못하게 하였다면 이로서 위 기본재산 매매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게 되어 그에 따른 재단법인의 채무는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할 것이다.

제4절 법인사무의 감독

01 민법상 법인

법인사무의 검사와 감독

- 법인의 사무는 설립허가를 한 주무관청이 검사·감독하고(민법 제37조), 해산과 청산은 법원이 검사·감독을 담당한다(민법 제95조).
- 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법인에 관계 서류·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비영리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법인규칙 제8조 제1항)
- 이 경우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 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법인규칙 제8조 제2항).

설립허가의 취소

가. 설립허가의 취소요건

- 민법은 다음 3가지를 법인설립허가의 취소사유로 들고 있다(제38조).
  -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경우
  -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한 경우

-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판례는 설립허가 취소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 대법원 1968. 5. 28. 선고 67누55 판결 |

판시사항	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비영리법인 설립후에 있어서의 허가취소는 본조에 해당되는 경우에 국한되는 것으로서 그 목적달성이 불능하게 되었다는 것으로는 본법 제77조 소정 당연해산사유에 해당될지 몰라도 그 사유만으로 설립허가를 취소할 사유에 해당된다 할 수 없다.

●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요건은 위의 3가지에 한정된다. 이하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경우

- 법인의 목적이란 법인정관에 정하여진 목적을 뜻하므로, 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한다는 것은 법인정관에 기재된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민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인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므로 만약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설립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 다만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여 그 본질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영리사업을 하는 것은 법인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 예컨대 암예방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참가비를 징수하거나 관련서적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가능하다.
- 특정한 비영리목적의 법인이 다른 비영리목적의 사업을 하는 것을 목적 외의 사업이라 하여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예컨대 자선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학술사업을 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설립허가취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설립허가취소의 근거가 민법의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기본권제한에 관한 행정법적 규정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예컨대 실질은 영리사업을 하면서도 회사법이나 조세법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는 경우 등에 국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만약 그러한 정관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다른 비영리사업이 지속된다면 주무관청은 법인사무의 검사·감독권(민법 제37조)의 일환으로 법인의 정관변경을 명할 수 있을 것이다.

⑵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한 경우

- 주무관청은 일정한 조건의 성취를 전제로 하여 법인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그러한 조건을 전제로 법인이 설립되었음에도 법인이 그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면 주무관청은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예컨대 일정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자선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설립이 허가된 경우에 그 조건으로 정한 시설이 갖추어지지 못하였다면 법인설립조건을 위반한 것이 되고 이때 주무관청은 그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다만 그 조건이 법인의 설립허가조건인지 혹은 주무관청의 단순한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인지를 실제로 판별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77. 8. 23. 선고 76누145 판결 |

판시사항	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
판결요지	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는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존재가 공익을 해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한편 감독관청에 제출할 서류를 기한 보다 지연하여 제출한 사실만으로 설립허가조건을 위배하였다 하여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행위는 재량권의 범위를 심히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

⑶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무엇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인지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문제된다.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바, 대법원은 “민법 제38조에서 말하는 비영리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라 함은 법인의 기관이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사원총회가 그러한 결의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大判 1982. 10. 26. 81누363). 그러나 법인의 기관이 한 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개인의 행위로써 한 것일 때에는 이를 이유로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大判 1966. 6. 21. 66누21)

- 공익을 해하는 지의 여부는 주무관청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고 법인의 기관이 한 행위 혹은 사원총회의 결의내용이 구체적으로 형법 또는 행정법상 규정에 위반하거나 전체 법질서에 반하는 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누363 판결 |

판시사항	가. 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 나. 비영리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의 의미
판결요지	가. 비영리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있어서의 그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의 취소는 민법 제3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나. 원심이 민법 제38조에서 말하는 비영리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라 함은 법인의 기관이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사원총회가 그러한 결의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전제한 후 원고 법인 설립후 그 회장선거 및 운영을 둘러싸고 일부 회원 사이에 불미한 사실이 있었으나 그것이 원고법인의 기관의 행위이었거나 사원총회의 결의 내용이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달리 원고법인에 설립허가 취소사유 및 해산명령 사유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설립허가취소 및 해산 명령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적법히 수긍된다.

| 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누21 판결 |

판시사항	비영리법인에 있어, 성질상 이사장 개인의 행위를 이유로 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한 위법이 있는 예

판결요지	본조는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를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인설립당시에는 그 목적사업도 공익을 해하는 것이 아니었으나 그 후 사정변동에 의하여 그것이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되었을 경우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나. 취소절차와 효력

- 민법은 설립허가를 해준 주무관청이 설립허가의 취소권한을 갖는다는 것 외에, 그 취소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에 의거하여 법인에 대한 검사·감독권을 행사한 다음 설립허가를 취소하든지 또는 검사·감독권을 행사하지 않고 곧바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다만 어느 경우에나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할 것이 요구된다(법인규칙 제9조).

다. 구제절차

- 주무관청에 의한 설립허가의 취소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에 불복이 있는 법인은 행정심판법에 기하여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다시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설립허가취소처분으로 인해 법인은 청산법인으로 되어 청산목적의 범위 내에서 존속하게 되지만, 만약 설립허가의 취소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면 취소처분의 효과는 소급해서 상실되므로 취소처분 이후에 청산목적을 넘어 행해졌던 법인의 행위도 모두 유효로 인정된다.

과태료의 처분

- 법인의 이사 · 감사 또는 청산인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그의 직무를 충실하게 다하지 않는 경우에 주무관청은 이들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의 처분을 할 수 있다(민법 제97조).
  - 각종 등기를 해태한 때
  - 재산목록작성 · 사원명부의 비치를 하지 않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
  - 법인의 사무에 관한 주무관청의 검사 · 감독 또는 법인의 해산 · 청산에 관한 법원의 검사 · 감독을 방해한 때
  -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 청산인이 채권신고기간 내에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한 때
  - 이사 또는 청산인(청산법인의 경우)이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 청산인이 채권신고에 관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 과태료 부과는 과태료를 부과 받을 법인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247조). 과태료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하는바(동법 제248조 제1항), 법원은 재판 전에 당사자인 법인측의 진술을 듣고 검사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동법 제248조 제2항), 과태료재판 절차의 비용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고를 받는 법인이 부담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국고에서 부담한다(동법 제248조 제4항). 과태료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하며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다(동법 제248조 제1항).

Chapter 3

법인의 해산 및 청산

01 민법상 비영리법인

법인해산사유

가. 법인공통해산사유

● 민법 제77조 제1항의 법인의 해산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존립기간의 만료	– 존립기간은 사단법인에서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재단법인에서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또는 존립기간은 법인의 등기사항이다(민법 제49조 제2항).
②	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 목적을 달성했는지 또는 달성이 불능한지는 사회관념에 따라서 결정한다. 목적의 달성불능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목적을 완료할 수 없게 되었음이 확정적인 것을 의미하므로, 설사 일시적으로 그 목적 달성이 불능일지라도 그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보일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③	기타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 발생	– 해산사유는 사단법인에서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재단법인에서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또한 해산사유는 법인의 등기사항이다(민법 제49조 제2항). – 법인이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수 없는 상태, 즉 채무초과가 된 상태를 의미한다. – 법인의 파산원인은 자연인과 달리 지급불능에 이를 필요가 없이 단순한 채무초과로써 충분하다.
④	법인의 파산	–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민법 제79조). 이사가 파산의 신청을 게을리 하면 과태료의 처분을 받게 된다 (민법 제97조 6호).
⑤	설립허가의 취소	– 민법은 다음 3가지를 법인설립허가의 취소사유로 들고 있다(제38조).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경우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한 경우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위의 각 경우에 해당하면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외의 사유로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다. 대법원도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는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판시하였다(大判 1977. 8. 23. 76누145). 따라서 이를테면 법인의 목적달성이 불능하게 된 경우에는 법인의 해산사유에 해당될 수 있어도 주무관청이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니다.

나. 사단법인에 특유한 해산사유

● 민법은 그 외 사단법인에 특유한 해산사유로 다음 2가지를 명시하고 있다(제77조 제2항).

①	사원이 없게 된 경우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이 모두 사망하거나 퇴사 기타의 사유로 한 사람도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사원이 한 명이라도 남아 있게 되면 그 남은 사원이 설립목적을 달성시킬 수도 있으며, 또한 사원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산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사원이 한 사람도 없게 되어 사단법인이 해산된 경우라도 즉시 해당법인이 그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통상적인 해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청산절차에 거쳐 법인이 소멸한다.
②	사원총회의 해산결의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 해산을 「임의해산」이라고 한다. 이는 총회의 전권사항이므로 총회이외의 다른 기관이 해산결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규정은 효력이 없다. •해산결의의 정족수는 정관이 달리 규정한 바가 없으면,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 •해산결의를 함에 있어서 조건부나 기한부로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통설의 태도이다.

다. 취소절차와 효력

● 민법은 설립허가를 해준 주무관청이 설립허가의 취소권한을 갖는다는 것 외에, 그 취소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에 의거하여 법인에 대한 검사·감독권을 행사한 다음 설립허가를 취소하든지 또는 검사·감독권을 행사하지 않고 곧바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다만 어느 경우에나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할 것이 요구된다.

I 청문절차 I

설립허가 취소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처분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청문주재자 (행정절차법 제28조)

- 청문은 행정청의 소속직원 또는 당해 청문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있고 동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가 주재하되, 행정청은 청문주재자의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청문주재는 독립하여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그 직무수행상의 이유로 신분상의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2 청문절차의 개시·처분의 사전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

- 행정청은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실시 10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당해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면서, 그 청문의 주재자, 일시 및 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3 청문의 진행 (행정절차법 제31조 내지 33조)

- 청문주재자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 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다.
- 청문주재자가 청문을 시작할 때에는 먼저 예정된 처분의 내용, 그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근거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 당사자 등은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다.

  ※당사자 등이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본다.

4 청문의 종결 (행정절차법 제35조)

- 청문주재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 등의 의견진술·증거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다.
- 청문주재자는 당사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들에게 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청문을 마칠 수 있다.
- 법인의 대표자는 허가취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 주무관청의 청문절차에 성실히 응해야하고 법인해산에 따른 청산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 법인의 대표자는 허가취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 주무관청의 청문절차에 성실히 응해야하고 법인해산에 따른 청산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라. 구제절차

- 주무관청에 의한 설립허가의 취소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됨. 따라서 이에 불복이 있는 법인은 행정심판법에 기하여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다시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설립허가취소처분으로 인해 법인은 청산법인으로 되어 청산목적의 범위 내에서 존속하게 되지만, 만약 설립허가의 취소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면 취소처분의 효과는 소급해서 상실되므로, 취소처분 이후에 청산목적을 넘어 행하여진 법인의 행위도 모두 유효로 인정된다.

해산절차

가. 해산등기

-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관할등기소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해산등기를 하기 전에는 제3자에게 해산사실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54조 제1항).

- 해산등기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 이상의 사항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민법 제85조 제1항).

- 해산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직책에 있는 이사, 청산인 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민법 제97조 1호).

나. 해산신고

-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청산인은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등기의 기재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설립허가의 취소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처럼 해산사실이 주무관청에 명백히 된 경우에도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 주무관청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에는 과태료의 처벌을 받게 된다(민법 제97조 제4호).

- 비영리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 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해산 연월일, 해산

사유, 청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 내용을 적은 별지 제5호 서식의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법인규칙 제10조).

-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 법인해산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해산에 따른 효과

● 법인은 해산사유의 발생에 의하여 해산등기의 경료여부와 관계없이 해산하게 되고 그에 따라 청산절차가 개시된다. 다만, 파산의 경우에는 파산절차에 들어간다.

●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즉 해산한 법인은 청산업무수행을 위한 청산법인으로 전환된다.

청산

가. 청산의 의의

- 청산이란 해산한 법인이 남아 있는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의 절차를 말한다.

- 청산에는 두 가지 절차가 존재한다.

① 파산으로 해산하는 경우 : 이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파산절차에 따라 청산된다.

② 그 밖의 원인에 의한 해산하는 경우 : 이 경우에는 민법이 규정하는 청산절차에 의한다.

- 민법상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모두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른바 강행규정이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3473 판결).

- 해산한 법인은 청산법인으로 전환되고, 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민법 제81조).

나. 청산법인의 기관

(1) 청산인

- 법인이 해산하면 이사에 갈음하여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집행기관이 된다.

- 단, 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에는 파산재단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과 관련되지 아니한 그 밖의 업무에 대해서는 청산인이 집행기관이 된다.

● 청산인이 되는 자는 다음과 같다.

① 원칙: 이사(민법 제82조)

- 이사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되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에도 그 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84조에 의거하여 법원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됨을 이유로 하여 그 청산인을 해임시키고 새로운 청산인을 선임하는 것이 타당하다.

②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 자(민법 제82조)

-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로써 이사 이외의 자가 청산인이 된다는 뜻을 정한 경우에는, 그 자만이 청산인이 되고 종래의 이사는 그 지위를 상실한다.

③ 법원에 의해 선임된 자(민법 제83조)

- 다음의 경우에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 해산당시 이사가 사망 · 사임 등 이유로 존재하지 아니한데, 정관이나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가 이외의 청산인이 될 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 이사 기타의 자가 청산인이 된 경우라도 그가 사망 · 사임 · 해임 등 이유로 청산인의 정원에 모자라 법인에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 청산인의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다(비송사건절차법 제36조, 제121조).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법원에서 해임된 청산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

●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민법 제84조).

(2) 그 밖의 기관

● 법인이 해산하면 이사에 갈음하여 청산인이 법인의 기관으로 들어오는 것을 제외하고, 그 밖의 기관은 해산전 법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청산법인의 기관으로서 마찬가지의 권한을 가진다.

● 즉 사원총회는 그대로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감사는 계속하여 청산인의 직무를 감독한다.

다. 청산사무

(1) 해산등기와 해산신고

●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다음 사항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민법 제85조 제1항).

-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 또한 청산인은 그 취임후 3주간 내에 같은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민법 제86조 제1항).

- 청산중에 해산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기면,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85조 제2항 및 제52조)

- 청산인이 위의 등기를 게을리 하거나, 주무관청에 사실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게 된다(민법 제97조 1호, 4호)

참 고

파산에 의한 청산의 경우에는 등기는 법원이 직권으로 등기소에 촉탁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조), 또한 법원이 파산사실을 주무관청에 통지하므로(동 법률 제314조), 청산인은 해산등기의 신청이나 해산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2) 현존사무의 종결

(3)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4) 잔여재산의 인도

- 채권추심 및 채무변제 절차를 밟은 후에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로 잔여재산이 귀속된다(민법 제80조).

① 정관에서 지정한 자

②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단,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 위의 어느 방법으로도 처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그 처분 사유, 처분하려는 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처분 방법을 적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규칙 제11조).
  -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해산 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총회의 회의록 1부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 등으로 민법 제80조에 따른 재산처분에 대한 총회의 결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5) 파산신청(민법 제93조)

- 청산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이 공고에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방법이 준용된다.
- 청산인이 이 파산신청을 게을리 하거나 공고해태 또는 부정공고를 하면 과태료의 처분을 받게 된다(민법 제97조 6호, 7호).
-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

(6)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 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함(민법 제94조). 이때 청산인은 제7호 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법인규칙 제12조).

  ※ 청산인은 특히 (2), (3), (4)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음(민법 제87조 제2항).

-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2036 판결).

| 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2036 판결 |

판시사항	가. 법인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 나. 청산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와 청산법인의 존속
판결요지	1. 민법 제80조, 제81조, 제87조와 같은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모두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위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만일 그 청산법인이나 그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한 때는 무효라 아니할수 없다. 2.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 할수 없는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해산·청산의 검사와 감독

-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감독하며(민법 제95조), 법인의 주된 사무소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33조 제2항).

- 청산인이 법원의 검사·감독을 방해한 때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게 된다(민법 제97조 3호).

Ministry of Justice

실무자를 위한
비영리·공익 법인 관리·감독 업무 편람

Part 3 공익법인

Chapter 1 **법인의 설립** _ 102
01. 법인설립절차 _ 102
02. 설립요건 _ 104

Chapter 2 **법인의 운영과 관리** _ 109
01. 기관 구성 _ 109
02. 법인 사무의 감사 _ 118
03. 정관변경 _ 122
04. 재산 _ 123
05. 수익사업의 승인신청 _ 133

Chapter 3 **법인의 해산** _ 134

Chapter 1

법인의 설립

01 법인설립절차

개설

가. 공익법인법의 목적 및 적용법률

- 공익법인법은 "법인의 설립 · 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공익법인법 제1조). 따라서 공익법인법은 '민법'에 따라 설립되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익성'을 가진 법인에 대해 조세감면 등의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여(동법 제15조) 공익성을 유지하고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따라서 공익법인법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은 민법의 적용을 받으면서도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특별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법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익법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공익법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동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관청이 정하되, 따로 정한

사항이 없는 때에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공익법인 이외의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공익법인법 시행령 제28조).

나. 공익법인법의 적용범위

- 공익법인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 ·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 적용되고, 동 법률에 적용되는 법인을 '공익법인'이라고 한다(공익법인법 제2조).

- 공익법인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공익법인은 다음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공익법인법 시행령 제2조).

  - 학자금 · 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 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

  ※ 금전에 갈음한 물건 · 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 · 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포함

  - 연구비 · 연구조성비 · 장려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문 · 과학기술의 연구 · 조사 · 개발 · 보급 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

  ※ 금전에 갈음한 물건 ·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

  -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 · 조사 · 개발 ·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이들 사업을 지원하는 도서관 · 박물관 · 과학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사업

  - 불행 · 재해 기타 사정으로 자활할 수 없는 자를 돕기 위한 모든 자선사업

-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의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행하는 사업

※ 공익법인에는 이상의 사업과 그 이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법인이 포함됨

02 설립요건

정관의 작성

- 공익법인의 정관에 기재되어야 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공익법인법 제3조).
  - 목적
  - 명칭
  - 사무소의 소재지
  -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 · 상태 및 평가액
  -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 이사 및 감사의 정수(定數) · 임기 및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 기타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공익법인법 시행령 제3조).
  - 사업에 관한 사항 : 사업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함
  -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사원 및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 기타 공익법인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

재산의 출연

- 공익법인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재원이 필요하다. 공익법인법 제4조 제1항은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 · 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출연된 재산 또는 재원을 기본재산 이라고 한다.

- 공익재단법인의 경우 출연된 재산에서 창출되는 과실로 그리고 공익사단법인의 경우에는 회비나 기부금등의 재원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허가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출연재산에 의한 사업목적달성' 요건은 '사업의 목적'과 함께 중요한 공익재단법인의 설립요건이다.

주무관청의 허가

가. 구비서류

-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공익법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 설립발기인의 성명 · 주소 ·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정관 및 최근의 사업활동 등을 기재함)

- 설립취지서 1부
- 정관 1부
- 재단법인인 경우에는 출연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한 재산목록 및 기부신청서 1부

※ 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함

-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회비징수예정명세서 또는 기부신청서 1부
-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1부
- 사업개시예정일 및 사업개시이후 2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창립총회회의록 및 사원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사원명부 각 1부

※ 사원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사원의 총수를 기재한 서류로 대체

나. 주무관청의 허가

- 위의 서류를 제출받은 주무관청은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해야 한다(공익법인법 제4조 제1항).

- 설립허가를 함에 있어서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공익법인법 시행령 제5조).
  -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회비 · 기부금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목적사업이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 · 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공익법인의 사업이 2이상의 주무관청의 소관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공익법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이 경우 설립허가를 하는 주무관청은 다른 주무 관청과 협의하여 허가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공익법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다. 설립허가 조건

-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공익법인법 제4조 제2항,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사단법인의 경우에 회비에 의하여 경비에 충당할 비율과 회비 징수 방법 기타 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수혜자의 출생지 · 출신학교 · 직업 · 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당해 법인과의 특수관계 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 할 수 없다는 뜻

참 고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정관상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재산을 추가출연하고자 하는 경우의 정관변경허가를 포함함)를 함에 있어서 상기 조건을 반드시 붙이되, 주무관청이 수혜자의 범위를 특히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한정할 범위에 관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설립이 허가되는 공익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의미)과 합의하여야 함(공익법인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 목적사업의 무상성 기타 목적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목적사업의 원활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라. 설립등기 및 보고

- 주무관청으로부터 법인설립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3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49조 제1항).
- 공익법인은 법인설립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기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공익법인법 시행령 제9조).
- 이 경우 주무관청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9조).

Chapter 2

법인의 운영과 관리

01 기관 구성

개설

가. 엄격한 요건의 준수(공익법인법 제5조 참고)

- 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어야 하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 이사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임원은 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나. '이사회'와 '감사'가 필수기관

참 고

공익법인의 임원구성에 있어서 특별히 준수해야 할 사항에 관해서는 제3장 법인의 관리와 운영, 제1절 법인의 기관구성 및 운영, 공익법인 설명부분 참고

임원자격에 대한 제한

가.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자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공익법인법 제5조 제6항).
  - 미성년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제한

- 출연자 등 당해 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특수관계자")가 그 사업운영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사실상 건전한 공익사업을 보장하기 어렵게 되므로 특수관계자는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사도 이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공익법 제5조 제5항 및 제8항, 공익법인령 제12조).

| 특수관계자의 범위 |

출연자	출연자가 자연인	출연자
	출연자가 민법 제32조의 법인	
	출연자가 기타의 법인	
	※이하에서 「출연자」는 위의 모든 자를 포함함	
	6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자 포함)	
	친생자(親生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親養子)로 입양된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비속	
사용인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자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자	
생계의존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출연자 또는 이사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기타	당해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사	

다. 임원취임승인 신청

- 공익법인이 임원취임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임원취임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공익법인법 시행령 제7조).
  - 임원의 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 이력서 1부 (연임되는 임원에 대한 취임승인 신청시 불요)
  - 임원으로 취임하려는 사람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주무관청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연임되는 임원에 대한 취임승인 신청시 불요)
  - 취임승낙서 1부
  - 민간인 신원진술서 4부

※ 주무관청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 연임되는 임원에 대한 취임승인 신청시 불요

  - 당해 임원의 특수관계부존재각서

※ 연임되는 임원에 대한 취임승인 신청시 불요

라. 이사취임의 승인취소

- 주무 관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의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공익법인법 제14조 제2항).

- 공익법인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해당 공익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를 발생시킨 경우
-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한 경우

이사회

가. 이사회의 구성

- 공익법인에는 이사회를 두어야 한다. 즉 필수기관이다(공익법인법 제6조).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나. 이사회의 기능

- 공익법인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공익법인법 제7조 제1항).
  - 공익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공익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이사장이나 이사가 공익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공익법인법 제7조 제2항).

다. 이사회의 소집

- 이사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될 수 있다(공익법인법 제8조).
  -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감사가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기 위해 소집을 요구할 때

  ※ 재적이사의 과반수 또는 감사의 이사회 소집요구시 이사장은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한다.

  ※ 이사 전원이 모여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익법인에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공익법인법 제8조 제4항).
  -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된 때
  - 소집권자가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

  ※ 이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이사가 이사회를 주재한다.

참 고

이러한 경우에 이사회의 소집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이사회소집승인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5조).

-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사유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
-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을 증명하는 서류
- 이사회를 소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손해의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라. 이사회의 의결방법

-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의결된다(공익법인법 제9조).
-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며, 이사회의 의사(議事)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서면결의 불가 :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다.
-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감사

가. 감사의 구성

- 감사는 이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감사 중 1명은 공익법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주무관청이 추천할 수 있다(공익법인법 제5조).

관련조문 :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주무관청의 감사추천) ① 주무관청은 법 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감사 1인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설립허가시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추천을 행함에 있어서는 공익법인에게 후보를 선정하여 추천을 의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추천의뢰된 자 중에 적격자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추천 의뢰를 요구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으로부터 감사 1인을 추천한다는 뜻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월내에 추천의뢰가 없는 경우 또는 주무관청의 추천에 의하여 임명된 감사가 임기만료 기타의 사유로 결원이 된 때에도 제2항과 같다.

④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종전에 그 법인의 감사중 1인을 주무관청이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새로이 법 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당해 공익법인의 감사중 이사회에서 지명한 자 1인은 주무관청에서 추천한 감사에 대한 취임승인이 있은 날의 전일에 퇴직된 것으로 본다.

나. 감사의 직무

- 감사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공익법인법 제10조).
  -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 위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감사는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 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감사는 이사가 공익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공익법인법 또는 공익법인법 시행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공익법인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留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상근임직원

-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상근임직원의 수를 정하고 상근임직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한다(공익법인법 제5조 제9항).

- 공익법인이 상근직원의 정수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승인신청서」에 「기구도표」와 부문별 또는 「개인별 관장업무를 명시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4조).

02 법인 사무의 감사

개설

가. 주무관청의 감사 근거

- 주무관청은 감독상 필요하면 공익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업무재산관리 및 회계를 감사하여 그 적정을 기하고,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공익법인법 제17조 제1항).

-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그 밖에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상기의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공익법인법 제17조 제2항).

나. 감사의 방법

- 주무관청이 감사를 행함에 있어서는 공익법인에게 관계서류 · 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공익법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 이 때 법인사무를 감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공익법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 주무관청은 직전 회계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1]의

1) 부동산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함.

합계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게 할 수 있다(공익법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 이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감사인은 감사를 종료한 후 지체 없이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공익법인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

- 주무관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 감사와 별도로 회계감사를 받게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회계감사로 상기의 감사를 갈음할 수 있다(공익법인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

이사취임의 승인취소

- 주무관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의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공익법인법 제14조 제2항).

  - 공익법인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해당 공익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를 발생시킨 경우
  -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한 경우

수익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

- 주무 관청은 수익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에 다음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공익법인에 대하여 그 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공익법인법 제14조 제3항).
  - 수익을 목적사업 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
  -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공익법인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

설립허가의 취소

- 그 외 공익법인법은 다음과 같은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일부의 목적사업에 해당 사유가 있을 때도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공익법인법 제16조 제1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 이상의 사유에 따른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취소는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감독청이 시정을 명령한 후 1년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된다(공익법인법 제16조 제2항).

벌칙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익법인법 제19조 제1항)

- 주무관청의 승인 없이 수익사업을 하거나 승인내용을 변경하여 수익사업을 한 경우
-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용도변경, 담보 제공한 경우
-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임에도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장기차입 한 경우
-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지도 않고, 익년도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지도 않는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익법인법 제19조 제2항)

- 수익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 및 예산을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결산을 첨부서류와 함께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 보고한 경우

- 주무관청의 감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 감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경우

● 위와 같은 사항을 위반하면, 그러한 사항을 위반한 이사나 감사뿐만 아니라, 그 공익법인에도 상기의 벌금형을 부과함.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와 주무관청이 추천한 감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공익법인법 제19조 제3항).

03 정관변경

● 공익법인에 있어서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다(공익법인법 제3조 제1항 제8호).

● 공익법인이 민법 제42조제2항(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동법 제45조 제3항(재단법인의 정관변경), 동법 제46조(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0조).

- 정관변경이유서 1부
- 정관개정안 1부
-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04 재산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 공익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된다(공익법인법 제11조 제1항).

기본재산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보통재산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단,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 • 보통재산 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

-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보통재산이 과다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게 할 수 있다(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 보통재산의 유형 |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일체의 이익금

- 예금 또는 채권 등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 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한 수입
- 주식의 배당금

- 승인받은 수익사업의 수입 중 경비 및 제세공과금 일체를 차감하고 목적사업비로 전입된 이익금

▌전년도 예산 중 사용잔액이 당해연도로 이월된 전기이월금

▌일체의 환급금이나 회수금

- 전년도 납입 법인세 중 환급금
- 지출된 사업비 중 사용포기된 회수금

▌기타 기본재산이 아닌 물품의 매각처리대금과 같은 잡수입금

● 공익법인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공익법인법 제11조 제5항,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20조).

기본재산의 관리

●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하며,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공익법인법 제11조 제2항).

● 공익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함(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공익법인법 시행령 제24조).

※ 기본재산의 변동에 따른 각종 허가시, 주무관청은 기본재산의 보존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점검한다. 예를 들어, 현금(예금)의 경우에 잔액증명서와 통장원본을 제출토록 하여 무단인출 여부를 확인한다.

기본재산의 변동에 따른 허가

가. 통칙

-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 · 증여 · 임대 ·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면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공익법인법 제11조 제3항 제1호, 제2호).

-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기본재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매도 · 교환 또는 용도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대한 신고로 허가를 갈음할 수 있다(공익법인법 제11조 제4항 제1호).

- 이러한 허가사항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공익법인법 제19조).

나. 기본재산의 처분

(1) 기본재산 처분허가

-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본재산처분의 유형으로는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등이 있다.

-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의 처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7조).
  -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 (첨부) 기본재산처분사유서
  - (첨부) 처분재산명세서

- (첨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확인서 (교환의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에 관한 것이어야 함)
- (첨부)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 (첨부)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교환 또는 매도의 경우에 한함)

● 기본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기본재산처분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 이외에 임대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공익법인법 제4조 제3항,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1조 참조).

(2) 기본재산 처분신고

● 공익법인 중에서 상증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기본재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매도·교환 또는 용도변경 및 담보제공 등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공익법인법 제11조 제4항 제1호).

● 성실공익법인이 기본재산처분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한 날부터 3주일 이내에 그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내에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3항).

- 기본재산처분신고서
- (첨부) 기본재산처분사유서

- (첨부) 기본재산명세서 및 매도 등을 한 재산의 명세서(기본재산평가액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각각 포함)
- (첨부)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 (첨부)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 기본재산처분신고서를 제출받은 주무관청은 지체 없이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익법인에게 보정(補正)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성실공익법인은 보정을 요구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이를 보정하여야 한다.

기본재산의 담보제공 등

●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공익법인법 제11조 제3항 제1호, 제2호). 다만 성실공익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기본재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담보제공하는 경우에 주무관청의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공익법인법 제11조 제4항 제1호).

●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장기차입의 범위는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한다(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 공익법인이 당해연도의 예산으로 상환할 단기차입을 행한 경우에는 예산수지를

명확히 하여 당해연도내에 반드시 상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의 담보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공익법인법 제17조 제3항).

※ 공익법인법에는 '담보'의 허가신청시 필요한 서류만 규정하고 있으나, '장기차입'에 관해서도 담보에 준해서 서류를 갖추어야 할 것임

담보허가신청	장기차입허가신청
• 기본재산 담보 허가신청서 • 기본재산 담보 사유서(첨부) • 담보 내역서(첨부) – 담보에 제공할 재산목록 – 피담보채권액 – 담보권자 •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서(첨부) •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첨부)	• 장기차입 허가신청서 • 장기차입 사유서(첨부) • 장기차입 내역서(첨부) – 장기차입 재산목록 – 장기차입금 – 장기차입처 •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서(첨부) •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첨부)
※ 해석상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총회의사록	

기본재산의 용도변경 등

- 기본재산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며, 허가신청시 관련서류도 처분에 준해서 제출하여야 한다(공익법인법 제11조 제3항,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 기본재산 용도변경 등 허가신청서

- 용도변경 등 사유서
- 용도변경 등 내역서
- 이사회 회의록 및 총회 회의록
- 기타 용도변경 등에 필요한 부속서류

기본재산의 보통재산으로의 편입

기본재산의 보통재산으로의 편입 사유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1항)

- 기본재산의 운용수익이 감소한 경우
- 기부금 등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이 감소한 경우
- 회비수입이 감소한 경우
-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익이 감소한 경우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보통재산이 고갈된 경우

가. 기본재산의 보통재산으로의 편입허가

-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며, 그 허가신청서에 관련서류도 제출하여야 한다(공익법인법 제11조 제3항 제3호,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2항).
  - 기본재산의 보통재산으로의 편입 허가신청서
  - (첨부) 기본재산명세서 및 편입재산명세서
  - (첨부) 기본재산의 평가액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기본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확인서를 포함한다)

- (첨부) 보통재산 편입 이후 2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첨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 (첨부)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나. 기본재산의 보통재산으로의 편입신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이 기본재산에 관하여 공익법인법 제3항제3호에 해당하여 기본재산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이 경우 직전 편입이 있은 날부터 최소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에는 주무 관청에 대한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공익법인법 제11조 제4항).
- 성실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관련서류도 제출하여야 하며, 편입을 한 날로부터 3주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공익법인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4항, 제5항).
  - 기본재산의 보통재산으로의 편입신고서
  - (첨부) 기본재산명세서 및 편입재산명세서(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2항에 따른 평가액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각각 포함한다)

- (첨부) 보통재산편입 이후 2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첨부)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 (첨부)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 (첨부) 직전 편입이 있은 날부터 최소 3년이 경과하였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다만, 최초 편입인 경우는 제외한다)
- (첨부)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 기본재산의 보통재산으로의 편입신고서를 제출받은 주무관청은 지체 없이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익법인에게 보정(補正)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성실공익법인은 보정을 요구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이를 보정하여야 한다.

기본재산의 증가

● 기본재산의 처분으로 기본재산이 감소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본재산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정관에 기재된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의 변경이 있게 되므로 정관변경에 준해서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한다.

- 기본재산 증자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 정관변경사유서
- 정관(신 · 구 대비표 포함)
- 증자재산 목록 및 증빙서류

- 명의 이전된 증빙서(☞ 예금잔액증명서, 등기부등본, 주식소유증명서, 매매계약서 사본 등)
- 이사회 회의록 및 총회 회의록
- 기부증서 사본(기부에 의한 증자시)
- 인감증명서(부동산, 주식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사용

-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금은 원칙적으로 기본재산에 편입되어야 한다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 본문).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기본재산에 편입되지 아니하고 공익법인이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동조 단서).

[신청서류]

- 기본재산편입예외 기부금사용승인 신청 공문
- 사유서
- 기부증서 사본
- 기부금 사용계획서
- 재산의 권리증명서
- 이사회 회의록 및 총회 회의록

05 수익사업의 승인신청

-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공익법인법 제4조 제3항). 이에 따라 공익법인이 수익사업경영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1조).
  - 수익사업승인신청서
  - 사업계획서 1부 (첨부)
  - 추정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1부 (첨부)
  - 사업에 종사할 임원명부 1부 (첨부)
  - 행정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첨부)
- 공익법인이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에 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Chapter 3

법인의 해산

해산사유

- 공익법인법에서는 공익법인의 해산과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익법인의 해산과 청산절차에 관해서는 일반법인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해산사유가 공익법인에도 적용된다.

- 그 외 공익법인법은 다음과 같은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일부의 목적사업에 해당 사유가 있을 때도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공익법인법 제16조 제1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 이상의 사유에 따른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취소는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감독청이 시정을 명령한 후 1년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된다.

잔여재산의 귀속

● 다만 공익공익법은 청산절차과정에서 발생한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해서는 민법과 달리 공익적 견지에서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귀속주체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공익법인법 제13조). 따라서 공익법인은 그 정관에 당해 공익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잔여재산이 귀속될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하여야 한다(공익법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귀속절차	공익법인의 청산인은 해산후 청산종결의 신고(민법 제94조)와 함께 잔여재산이 귀속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잔여재산의 목록을 제출하고, 지체없이 권리 이전절차를 취한 후 재산을 인도하여야 한다(공익법인법 시행령 제25조 제21항).
귀속결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주무관청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당해 법인의 주무관청이 교육부장관인 경우에는 교육감)이 관리하되,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게 증여하거나 무상대부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공익법인법 제13조 제2항, 공익 법인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Ministry of Justice

실무자를 위한
비영리·공익 법인 관리·감독 업무 편람

Part 4 법인의 등기

Chapter 1 **법인의 등기** _ 138
01. 법인등기의 의미 _ 138
02. 법인등기의 양태 _ 139
03. 등기강제의 수단 _ 143

Chapter 1

법인의 등기

01 법인등기의 의미

법인등기의 필요성

- 법인은 사법상 법률관계에 있어 권리의무의 주체이지만, 자연인과 달리 외부적으로는 형체가 없기 때문에 법인과 거래하는 제3자로서는 법인의 존재, 조직, 재산상태 등 거래상 필요한 사항을 쉽게 아는 방법이 없다면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힐 수 있다. 따라서 사회거래의 안전을 꾀하기 위하여 그의 조직이나 내용을 등기하여 일반인에게 공시하는 것이 필요한 바, 현행 민법에서는 법인이 해야 할 등기를 강제하고, 이를 해태 할 경우 강제의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법인등기의 관할

- 법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이러한 관할원칙은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해서도 준용된다.

법인등기의 효력

- 법인의 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이고 그 밖의 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다. 즉 설립에 있어서는 설립등기 없이는 법인이 성립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지만, 그 밖의 법인등기(예, 사무소이전등기, 변경등기 등) 등기 없이도 효력은 발생하지만, 등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제3자에 대하여 법인의 변경사항 등을 주장하지 못한다.

등기사항의 보고

- 법인은 설립등기, 분사무소설치의 등기, 사무소이전의 등기, 변경등기 등을 한 때에는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공익법인법 시행령 제9조 및 법인규칙 제5조 제2항).

02 법인등기의 양태

설립등기

- 법인은 설립허가를 받은 때에는 3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다음의 사항을 설립등기 하여야 한다(민법 제49조).
  - 목 적
  - 명 칭
  - 사무소

- 설립허가의 연월일
-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자산의 총액
-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 이사의 성명 · 주소
-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할 때에는 그 제한

변경등기

- 설립등기사항 중에 변경이 있으면 3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52조). 만일 행정청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면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3주 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53조).

- 법인 사무소의 신설 · 이전, 그 밖의 등기사항의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사무소의 신설 · 이전 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되,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은 그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 제1항).

- 이 변경등기는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54조 제1항).

분사무소 설치등기

-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할 때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는 3주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 내에 설립등기사항을 등기하여야 하며, 다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민법 제50조 제1항).

- 그러나 주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3주 내에 그 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민법 제50조 제2항).

- 법인의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다른 모든 사무소 소재의 등기사항에 대한 변경이 되므로 위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52조 참조).

사무소 이전등기

- 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 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 소재지에서는 이 기간 내에 설립등기사항을 등기한다(민법 제51조 제1항).

- 같은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 사무소를 이전할 때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족하다(민법 제51조 제2항).

- 사무소 이전은 다른 모든 사무소의 등기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이 되므로 이 점에 관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52조 참조).

해산등기

- 파산을 제외한 법인해산사유가 발생하면 청산인은 그 취임 후 3주 내에 다음의 사항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민법 제85조).
  - 해산사유
  - 해산 연월일
  -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사항
- 법인의 해산등기 신청서에는 해산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이사가 청산인으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
- 해산등기의 등기사항에 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도 3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청산종결등기

- 법인의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 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민법 제94조).

요약

- 법인등기에 관한 이상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등기유형	등기내용	등기기간	결과보고	근거법령
설립등기	민법 제49조에 정한 "법인의 등기사항"	허가서 도착 후 3주간 내	등기완료 후 7일 이내	민법 제33조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9조
분사무소 설치등기	분사무소 설치 내용	〃	〃	민법 제50조 민법 제52조
사무소 이전등기	사무소 이전 내용	〃	〃	민법 제51조 민법 제52조
변경등기	설립등기의 등기사항에서 변경된 내용	〃	〃	민법 제52조
해산등기	해산사유, 해산일자 청산인 주소, 성명과 대표권의 제한 내용	청산인 취임 후 3주간 내	〃	민법 제85조
청산종결의 등기	청산종결의 내용	청산종료 후 3주간 내	〃	민법 제94조

03 등기강제의 수단

- 등기의무가 있는 이사, 청산인 등이 등기를 해태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는다(민법 제97조 제1호).

- 등기하지 아니하면 법인은 설립되지 못하고, 설립되었더라도 변경사항을 가지고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실체법상의 불이익을 받는다.

Ministry of Justice

실무자를 위한
비영리·공익 법인 관리·감독 업무 편람

Part 5 법인의 사업·결산 및 세무

Chapter 1 **법인의 사업과 결산** _ 146

01.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결산 보고 _ 146
02. 공익법인의 회계 _ 149

Chapter 2 **법인의 세무** _ 151

0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_ 151
02.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_ 159

Chapter 1

법인의 사업과 결산

01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결산 보고

민법상 법인

가. 공익법인법의 목적 및 적용법률

-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법인규칙 제7조).
  -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 · 지출 예산서 1부
  -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 · 지출결산서 1부
  -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공익법인

-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해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공익법인법 제12조 제2항).

가. 사업계획 및 예산의 제출

- 공익법인은 다음 년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 사업계획 총괄표
  -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 이사회 회의록 및 총회 회의록

예산편성시 유의사항

- 공익법인의 예산은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 편성하되 추정의 근거가 명료하게 산출된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등 예산재무제표에 입각하여 편성한다.
- 예산은 제세공과금과 이월결손금 등 공제한 금액의 70/100 이상을 직접 목적사업비에 편성한다(상증령 제38조 제5항).
- 인건비 및 관리비 등을 포함하는 사무비는 직접목적사업비 계정과 명백히 구분하여 편성한다.
- 명목예산은 편성이 금지된다.
- 현금자산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목적사업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29조).

나. 사업실적 및 결산

- 공익법인이 제출하는 사업실적 및 결산은 해당 사업의 회계연도[1]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이 경우 결산보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음)
  - 사업실적 총괄표
  - 사업실적(관련 증빙서 사본 첨부) 및 수지결산서
  -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 성실공익법인은 위의 서류 외에도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공익 법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내역 (해당 회계연도의 사용내역을 말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 자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 사용내역(해당 회계 연도의 사용내역을 말함)
  - 기본재산의 목록

1) 공익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공익법인법 제12조 제1항).

02 공익법인의 회계

회계의 원칙

가. 공익법인법의 목적 및 적용법률

- 공익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공익법인법 제12조 제1항).
- 공익법인은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다음 해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공익법인법 제12조 제2항).
- 공익법인의 회계는 공익법인법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공익법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 공익법인의 회계조직은 재무제표규칙을 준용한다(공익법인법 시행렬 제22조 제2항).

회계의 구분

- 공익법인의 회계는 법인의 목적사업 경영에 따른 회계(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경영에 따른 회계(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공익법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 회계장부와 통장은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통장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 수익사업회계

-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
- 회계연도 중에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을 거두어들이는 수치를 예측하고 이것의 적정한 운영경비(제세공과금 및 경상경비)를 제외한 수익금을 고유목적사업에 기부(전출)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회계

● 목적사업회계

- 기타의 수익과 비용
- 수익사업회계로부터 기부(전입)된 가용재원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할 수 있는 규모와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상경비를 설정하는 회계

※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의 배분계산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함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 비영리 법인의 경우

민법상 법인의 회계에 관해서는 민법에 관련규정이 없으므로 정관상 규정에 따라 구분한다.

- 또한 민법에는 예산 및 결산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법인규칙 제7조에 따라,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예·결산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Chapter 2

법인의 세무

0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대상법인

가. 설정대상법인

-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이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준비금손금산입의 대상에 해당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자치관리기구
  -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 그러나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 면세, 준비금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또는 세액감면(세액공제 제외)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만을 적용받는 것으로 수정신고한 경우를 제외한다(법인세법 제29조 제6항).

구 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법인격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가능
법인으로 보는 단체	지정기부금단체, 법령에 의한 기금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가능
	기타 단체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②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동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③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④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 운동단체

⑤ 종교의 보급,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소속 단체 포함)

⑥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⑦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다음의 요건 중 1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할 것
4.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아니할 것
5. 제7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 제8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났을 것
6.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⑧ 위의 ① 내지 ⑦의 지정기부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단체 등

나. 설정제외법인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지정기부금단체, 기금 및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외의 단체와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에 해당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조합법인과 청산중인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또한 「법인세법」 제62조에 의하여 과세표준 신고특례를 적용받아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분리과세 신고방법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

가. 비영리법인의 손금한도

비영리법인	손금한도
일반비영리법인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복지사업으로서 회원·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기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50% (단, 공익법인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학교, 사회복지법인, 국립대·서울대병원,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문화예술단체(조특령 제70조 제1항), 조직위원회(조특법 제73조 제1항),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지정기부금에 대한 지출액의 80%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 전액
협동조합중앙회(조특법 제74조 제2항)	수익사업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60%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비영리법인의 주식양도 소득(조특법 제74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70조 제4항)	소득 전액

비영리법인	손금한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조특법 제74조 제1항이 적용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수입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80%

나. 손금산입한도초과처리액의 처리

-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설정가능한도를 초과하여 계상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이를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다. 다만, 동 금액을 환입하여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한도초과액이 발행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수익회계 결산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으로 익금계상하고 세무조정에서 익금불산입 처리하여야 한다(2007.5.15. 국심 2005중161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가. 고유목적사업의 정의

-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 등의 용도로 지출하여야 하며, 이때 '고유목적사업'이란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나. 고유목적사업의 지출 또는 사용으로 보는 경우

-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①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② 건강보험 · 연금관리 · 공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법령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③ 의료법인이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④ 농업협동중앙회가 회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금액

  ⑤ 농업협동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신용협동조합중앙희 · 새마을금고연합회 · 산림조합중앙회 등이 관련 법률에 의한 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한 금액

  ⑥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5조 제1항 제1호, 동항 제2호 라목 · 마목(관련 토지의 취득 · 비축을 포함) 및 동항 제3호의 업무에 지출하는 금액

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승계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그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법인세법 제29조 제3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환입 및 이자상당액

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환입

-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 이내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한 금액은 먼저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사용한 것으로 봄.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잔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본다(법인세법 제29조 제2항).

-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잔액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 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법인세법 제29조 제3항).
  - 해산한 경우(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이니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는 경우에 해산 등기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
  -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경우
  -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승인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경우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5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으로 한정)

- 한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 금 사용가능기간인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준비금을 환입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환입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본다.

나. 이자상당액의 납부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 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5년 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함)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7항).

참 고

이자상당액 = 당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그 잔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일수) × 가산율(2003년 1월 1일이후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분의 경우 3/10,000, 2002년 12월 31일이전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분의 경우 4/10,000)

중복적용의 배제

- 비영리 내국법인 등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 면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또는 세액감면(세액공제는 제외)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고유 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 등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세액감면규정 등을 동시에 적용받은 후 이를 수정하기 위하여 고유목적 사업준비금만을 적용받는 것으로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정신고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8항).

명세서의 제출의무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자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 비금조정명세서를 비치 · 보관하여야 하며, 동 명세서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9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27호).

02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비율의 제한

-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종교 · 자선 · 학술 ·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세 · 증여세 등이 부과되지 않는 출연재산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으나,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익법인 등에 대한 주식출연비율을 제한한다.

- 즉, ①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연받거나, ② 출연받은 재산(당해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으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내 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5%(성실공익법인등은 1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된다(상증법 제16조, 동법 제48조).

초과부분 계산의 대상이 되는 주식의 범위

- 공익법인 등에 내국법인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주식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 액의 5%(성실공익법인 등은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상증법 제16조 제2항, 동법 제48조 제1항, 제2항 제2호, 동시행령 제37조 제7항).
  - 출연 또는 취득하는 주식 등
  - 출연 또는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 출연 또는 취득 당시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주식출연비율 제한의 예외

-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 원조달을 위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까지 제한되는 애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등 의 5%(성실공익법인 등은 10%)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과세하지 아니한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 등(국가 · 지방자치 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에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등 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상증법 제49조 제1항, 동시행령 제13조 제7항, 제37조 제6항)

- 산학협력단이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을 출자하여 같은 법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또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할 것

② 산학협력단이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이 기술지주회사인 경우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인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

③ 기술지주회사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 자회사 외의 주식등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출연재산의 사용의무 위반시 증여세 추징

①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내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단, 직적 공익 목적사업 등에 시용하는 데에 장기간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

② 출연받은 재산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경우

③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미달(운용소득의 70%)하게 시용한 경우(단, 운용소득 중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상증법 제78조 제9항).

참 고

운영소득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출연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 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 중 매각한 재산의 금액 – 법인세 등 – 이월결손금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

④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1년 이내: 매각대금의 30%, 2년 이내: 매각대금의 60%, 3년 이내: 90%)하게 사용한 경우(단, 매각대금 중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상증법 제78조 제9항).

⑤ 그 밖의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① 출연자 및 그 친족, ②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 ① 및 ②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용 · 수익하게 한 경우

⑥ 출연재산 및 직적 공익목적사업의 운용에 있어 잔여재산을 국가 등에게 귀속시 키지 아니하거나 공익목적사업이 일부의 특정인에게만 혜택을 주는 동시행령 제38조 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

내부거래 금지대상자

① 출연자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한 출연자 및 그 출연자와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② 출연자가 위 ①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③ 출연자의 사용인

④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의 임원

⑤ 출연자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⑥ 상증령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출연자 등의 이사취임 금지

-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상증령 제38조 제1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5인 이하인 경우 5인으로 본다)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이사가 아닌 임·직원(의사, 학교의 교직원,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제외)으로 되는 경우 지출된 경비 전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계열회사 주식보유 초과 금지

-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상증령 제38조 제12항)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 동일종목 주식(의결권이 있는 주식) 5%(성실공익법인 등은 10%) 이상의 보유금지의무에 추가로 당해 공익법인의 총재산가액 중 계열사 주식 등 가액이 30%(상증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 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 등은 50%)를 초과하여 보유한 경우 매 사업연도말 현재 그 초과분에 대한 시가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 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동시행령 제42조 제2항에서

정하는 공익법인 등과 성실공익법인 등은 계열회사 주식보유 초과 금지 공익법인등에서 제외).

성실공익법인 등의 범위

- 성실공익법인 등이란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인을 말한다(상증령 제13조 제3항 내지 제5항, 동시행령 제38조 제5항 및 제6항).

① 해당 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상증령 제38조 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공익법인

②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봄)의 1/5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③ 상증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않은 공익법인

④ 상증법 제48조 제10항의 전단에 따른 광고 · 홍보를 하지 아니한 공익 법인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을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은 해당 공익법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별로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수입과 지출,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상증령 제12조 제1호, 동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9항).

가. 전용계좌 사용의무 거래의 범위

- 공익법인 등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급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상증법 제50조의2).

①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② 기부금, 출연금 또는 회비를 받는 경우. 다만, 현금을 직접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③ 인건비,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④ 기부금, 장학금, 연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 다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함.

⑤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자산의 처분대금, 그 밖의 운용소득을 고유목적사업회계에 전입(현금 등 자금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하는 경우

나. 전용계좌 사용 · 개설 · 신고의무 위반시 관련 가산세

- 세무서장 등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해당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상증법 제78조 제10항).

①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로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전용 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5/1,000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전용계좌의 개설 ·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의 금액 중 큰 금액

㉮ 개설 · 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접 공익목적 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의 총액의 5/1,000에 상당하는 금액

㉯ 전용계좌 사용의무 거래금액의 합계액의 5/1,000에 상당하는 금액

보고의무

-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사업은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상증령 제41조 제1항 및 상증규칙 제25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공익법인 등이 상증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보고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 또는 불분명한 분의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의 1/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여야 한다(상증법 제78조 제3항).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 자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 부금 모집 및 지출명세, 해당 공익법인의 대표자 · 이사 · 출연자 등 기본사항, 주식보유 현황 등과 같은 결산서류 등을 해당 공익법인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상증법 제50조의3, 동시행령 제43조의3).

결산서류 등의 공시대상 공익법인의 범위

- 자산규모 또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을 제외한 공익법인 등은 결산서류 등을 매년 공시하여야 한다(상증령 제43조의3 제1항, 제2항, 동시행령 제12조 제1호).

① 결산서류 등의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함)의 합계액이 10억원 미 만인 공익법인 등(다만,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은 제외)

②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

공시대상 결산서류 등과 그 공시방법

- 공익법인 등은 다음의 결산서류 등을 해당 공익법인 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3항, 제4항 및 시행규칙 제25조 제6항).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등 포함)
-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 해당 공익법인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 주식보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세청장의 공시요구 및 오류사항 시정요구

- 국세청장은 공익법인 등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지 아니 하거나 그 공시내용에 오 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 등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그 공익법인 등의 주무부장관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상증령 제43조의3 제5항).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불이행 가산세

- 세무서장 등은 공익법인 등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의 공시 또는 시정요구를 지정된 기한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시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공익 법인 등의 자산총액의 5/1,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상증법 제78조 제11항).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위반의 가산세

- 공익법인 등은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 내용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는 해당 공익법인 등의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함. 이 경우 그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에는 마이크로필름,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상증법 제51조).

- 출연 받은 재산의 보유 및 운용 상태와 수익사업의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복식부기 형식의 장부이어야 하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증빙서류에는 수혜자에 대한 지급명세가 포함되어야 함(상증령 제44조).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 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 7/10,00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 또는 증여세로 징수함(상증법 제78조 제5항). 다만, 공익법인 등의 특성, 출연 받은 재산의 규모, 공익목적사업 운용 실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Ministry of Justice

실무자를 위한
비영리·공익 법인 관리·감독 업무 편람

Part 6 법인관련 실무자료

Chapter 1 법무부 법인규칙 업무 서식 _ 172
Chapter 2 법인 관련 주요 서식 _ 181
Chapter 3 법인 정관변경 관련 서식 _ 245
Chapter 4 법인 보고사항 등 관련 서식 _ 250
Chapter 5 법인 점검 및 사업실적 관련 서식 _ 261
Chapter 6 법인 해산·청산 관련 서식 _ 278
Chapter 7 공익법인 관련 서식 _ 283

Chapter 1

법무부 법인규칙 업무 서식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법인규칙 별지1호]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법인규칙 별지2호]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 [법인규칙 별지3호]
-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법인규칙 별지4호]
-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 [법인규칙 별지5호]
-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법인규칙 별지6호]
- 청산종결 신고서 [법인규칙 별지7호]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 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민법」 제32조 및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및 정관) 1부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증명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재산목록에 있는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법무부장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별지 제2호서식]

(앞쪽)

제 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1. 법인 명칭 :

2. 소 재 지 :

3. 대 표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4. 사업 내용 :

5. 허가 조건 :

「민법」 제32조 및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법무부장관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준수사항

1. 「민법」 및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법무부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합니다)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6.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등기를 한 후 법무부 소관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사항

변경일	내 용	확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별지 제3호서식]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

허가 번호	법인 명칭	사무소		대표자				허가 연월일	기능 및 목적	주관부서 (전화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변경 사항
		소재지	전화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별지 제4호서식]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 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설립허가일		설립허가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민법」 제42조 제2항·제45조 제3항·제46조 및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수수료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구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 결과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 법무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별지 제5호서식]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청산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청산 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해산 연월일		
해산사유		

「민법」 제86조제1항 및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신고인 처리기관: 법무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서식]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청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 표 자 (이사·청산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처분재산	종류 및 수량	
	금액	
	처분 방법	
처분 사유		

「민법」 제80조제2항 및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해산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 ▶ 결 재 ▶ 결과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 법무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별지 제7호서식]

청산종결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청산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청산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청산 연월일		
청산 취지		

「민법」 제94조 및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종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청산인)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신고인(청산인) 제출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Chapter 2

법인 관련 주요 서식

01 업무 서식

- 서식 1-1) 발기인 인적사항
- 서식 1-2-1) 사단법인 정관(예문)
- 서식 1-2-2) 사단법인 정관 예시 (사단법인 한국OO법학회)
- 서식 1-3-1) 재단법인 정관(예문)
- 서식 1-3-2) 재단법인 정관 예시 (재단법인 OOOO)
- 서식 1-4) 재산목록
- 서식 1-5) 사업계획서
- 서식 1-6) 임원취임 예정자 인적사항
- 서식 1-6-1) 임원취임승락서
- 서식 1-7)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 서식 1-8) 사단법인 창립(발기인) 총회 회의록

서식 1-1) 발기인 인적사항

발기인 인적사항

연번	성 명(한 자)	생년월일	(우편번호) 주 소	연 락 처
	주요약력(약력은 가급적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3~4개 정도를 적고 전·현직 여부를 표시)			
1	홍길동(洪吉童)	1234. 56. 78.	(123-456)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12 123-45번	02)1234-5678
	• (전) • (현) • (현)			
2				
3				
4				
5				
6				

작성자 : 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재단법인 ○○○○ 출연자 ○○○ (날인 또는 서명)

서식 1-2-1) 사단법인 정관 예문

사단법인 정관 (예문)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사례1]

①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에 둔다.

※분사무소(지부)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앞으로 설치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사례2]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법인을 설립하고 나서 앞으로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한 후에는(사례3)또는(사례4)와 같이 소재지를 명기한 정관변경을 하여야 한다.

[사례3]

①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에 둔다.

② 본회의 분사무소(지부)는 다음 지역에 둔다.

1. 서울지부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2. 부산지부 : 부산광역시 ○○구 ○○동 ○○번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를 정확하게 명기할 필요가 있는 법인의 경우에 해당한다.

[사례4]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한다.

※(사례3),(사례4)는 법인을 설립할 당시 이미 분사무소(지부)까지 설치한 법인과 기존 법인 중에서 분사무소(지부)가 설치된 법인의 경우에 해당한다.

제3조(목적)

본회는 _____

_____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2.

3.

4.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사례1]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사례2]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사례3]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사례4]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회원 ○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사례1]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사례2]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준회원 · 특별회원 · 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사례3]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단체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이사장"으로 할 수 있으며, 이사장으로 할 경우 관련조문에 "회장"을 "이사장"으로 표기

2. 이사 ○인(회장을 포함한다)

※이사는 5인 이상으로 정한다.

3. 감사 ○인

※감사는 2인 이하로 정한다.

제11조(임원의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상임이사)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상임이사를 두지 않는 경우에는 이 규정은 필요없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회장의 직무대행)

[사례1]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례2]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사례]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9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 일시 ·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구분 및 소집)

[사례1]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례2]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

[사례1]

제27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사례2]

제27조(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0조(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1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 · 증여 · 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2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3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 ·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5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38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39조(법인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0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서식 1-2-2) 사단법인 정관 예시

사단법인 OO학회 정관

2004. 7. 17. 제정

2005. 6. 18. 개정

2007. 11. 30. 개정

2011. 4. 16.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本 法人은 사단법인 OO학회라 한다.

제2조(주소지)

本 法人은 서울특별시에 그 주소지를 둔다.

제3조(목적)

본 법인은 OO의 硏究를 통하여 OOOO의 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법인은 前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研究發表會 및 學術講演會의 開催
2. 研究誌를 비롯한 圖書의 刊行
3. 外國學界와의 交流
4. 학술상 및 우수논문상 수여
5. 목적사업 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
6. 기타 본 법인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사업 등

제2장 회원

제5조(회원)

① 정회원은 본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入會申請을 하여 理事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1. OO法의 研究에 關心이 있는 國內外의 大學敎授
2. OO法의 研究에 關心이 있는 國內外의 判事, 檢事 및 辯護士
3. OOO分野의 博士學位 所持者

② 본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準會員, 명예회원, 단체회원으로 할 수 있다.

1. 준회원은 OO法을 專攻한 碩士學位 所持 이상의 大學院生 또는 이에 준하는 研究者로서 正會員이 推薦하여 理事會의 承認을 얻은 者로 한다.
2. 名譽會員은 本 법인의 目的에 贊同하여 本 법인의 發展에 寄與한 者로서 任員이 推薦하여 理事會의 承認을 얻은 者로 한다.

3. 團體會員은 본 법인의 目的에 贊同하는 法務法人, 硏究機關, 圖書館, 법인 기타 이에 준하는 關聯機關으로서 正會員이 推薦하여 理事會의 承認을 얻고 會費를 納付한 機關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 의무)

① 회원은 본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본 법인의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은 정관, 시행세칙 및 총회 결정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며 총회 에서 정한 입회금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2005. 6. 18. 개정)

제7조(회원의 자격상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은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탈퇴신고
2. 회원의 사망
3. 회원의 제명

제8조(제명)

① 회원이 본 법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때 또는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② 제명에 관한 총회의 의결은 회원 3/4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제명을 당하였을 때에는 기존에 납입한 일체의 회비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3장 자산 및 회계

제9조(자산의 구성)

본 법인의 자산은 다음 각호에 기재한 것으로 구성한다.

1. 회원의 입회금
2. 회원의 연회비
3. 자산으로 생기는 과실
4. 사업에 따른 수입
5. 학술지원금
6. 기타 수입

제10조(자산의 종류)

① 본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2종류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에 기재한 것으로 하되 이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일부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1.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지정하여 출연된 재산
2.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결의한 재산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의 원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11조(경비지출)

본 법인의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지출한다.

제12조(회원의 출자방법)

회원의 회비 등 출자방법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각 회 원의 직업, 직위 등에 따라 이를 차등부과할 수 있다.

제13조(자산의 관리)

본 법인의 자산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이사회에서 정한 관리방법에 따라 회장이 관리한다.

제14조(잉여금의 처분)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전 부 또는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시킨다.

제15조(세입 · 세출 예산)

본 법인의 세입 · 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개시 1개월전까지 사업계 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은 새 회계연도 후 각 첫 회의에서 이를 받을 수 있다. (2005. 6. 18. 개정)

제16조(특별회계)

① 본 법인은 수익사업을 행하거나 또는 기타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는 前條의 세입 · 세출예산에 계정하여야 한다.

제17조(수익 등의 사용)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로부터 생긴 수익 또는 잉여금은 이를 모두 기본재산이나 보통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제18조(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에 시작하여 12월말 까지로 한다.

제19조(회계감사)

감사는 연 1회 이상 회계감사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는 변상할 수 있다.

제4장 임원

제21조(임원의 인원수 및 자격)

① 본 법인의 임원은 법률상 그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人
2. 이사 3인 이상 100인 이내. 이사 중에서 2인 이상의 부회장을 둘 수 있다. (2007. 11. 30. 개정)
3. 감사 2인 이상

② 이사의 數가 제1항 제2호의 상한에 달하지 않을 때에는 잔여 인원수만큼 準이사를 둘 수 있다. 準이사는 내부적으로 이사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 (2005. 6. 18. 개정)

제22조(임원의 선임)

① 會長은 수석부회장이 승계한다. (2007. 11. 30. 개정)

② 수석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007. 11. 30. 신설)

③ 副會長은 理事會에서 選出한다.

④ 理事 및 準理事는 會長이 推薦하여 總會의 認准을 받는다.

⑤ 監事는 總會에서 選出한다.

제23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법인의 업무를 통괄하고 본 법인을 대표한다.

②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수석부회장은 차기 회장의 직을 승계하고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장 유고시에 수석부회장이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07. 11. 30. 개정)

③ 감사는 本 법인의 業務 및 會計에 관한 監査를 한다.

제24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이 궐위된 때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5조(顧問과 名譽理事)

① 本 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若干名의 고문과 명예이사를 둘 수 있다.

② 顧問 및 名譽理事는 理事會의 推薦에 의하여 會長이 推戴한다.

제5장 총회

제26조(총회)

①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27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1회 12월 중에,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각각 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는 본 법인에 등록된 회원의 전자우편주소로 발송할 수 있다.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28조(총회의사 및 의결의 정족수)

총회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정회원의 30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2005. 6. 18. 개정)

1. 본 법인에 그 전자우편주소가 등록된 회원. 단 임원은 예외로 한다.
2. 당해 연도의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

제29조(서면에 의한 표결 및 표결의 위임)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서면으로 표결할 수 있고, 다른 회원에게 표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30조(총회에 부의할 사항)

총회는 다음에 기재하는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과 인준에 관한 사항 (2005. 6. 18. 개정)
3. 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법인의 해산

5. 재산의 처분 · 매도 · 증여 · 기채 · 담보제공 · 임대 · 취득의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7. 기타 주요사항으로서 이사회가 총회에 부의하기로 의결한 사항

제6장 이사회

제31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 準이사로 구성한다.

② 회장,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로서 이사회의 의장, 부의장이 된다.

제32조(이사회의 권한)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會長과 副會長의 選出
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4.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회부할 의안에 관한 사항
5. 총회가 위임한 사항
6. 기타 회장이 회부한 본 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 이사회는 제1항 제1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상임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3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년 1회 이상 개최한다.

③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2/5 이상 또는 감사 2人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2005. 6. 18. 개정)

④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005. 6. 18. 개정)

제34조(이사회 의사 및 의결의 정족수)

이사회는 이사 10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05. 6. 18. 개정)

제35조(상임이사회)

① 본 법인의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이사 중 약간 명으로 상임이사회를 둔다.

② 상임이사는 회장이 이사 중에서 임면한다.

③ 상임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05. 6. 18. 개정)

제36조(常設委員會)

① 第4條의 事業을 遂行하기 위하여 必要한 경우에 常設委員會를 둘 수 있다.

② 常設委員會의 設置는 常任理事會의 의결을 거쳐 總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2005. 6. 18. 개정)

제7장 보 칙

제37조(정관의 변경)

본 정관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8조(해산, 잔여재산의 처분)

① 본 법인은 민법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다.

② 총회원 3/4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법인을 해산할 수 있다.

③ 본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제39조(시행세칙의 제정)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40조(기부금 모금액 공개)

본 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8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설립당시의 회원 및 임원 등)

① 본 법인의 설립 당시의 OOOOO 정회원은 본 법인의 정회원으로 본다.

② 본 법인의 설립당시 이사 및 감사는 본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설립당시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본 정관의 규정에 의한다.

③ 본 법인 설립당시 OOOOO의 이사 등 임원으로서 본 법인 설립당시의 이사 및 감사가 아닌 자는 본 법인의 準이사로 본다.

서식 1–3–1) 재단법인 정관 (예문) 예시

사단법인 OOOOO학회

재단법인 정관 (예문)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사례1]

①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구 ○○동 ○○로에 둔다.
※분사무소(지부)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앞으로 설치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사례2]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법인을 설립하고 나서 앞으로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한 후에는(사례3)또는(사례4)와 같이 소재지를 명기한 정관변경을 하여야 한다.해당한다.

[사례3]

①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구 ○○동 ○○로에 둔다.
② 본회의 분사무소(지부)는 다음 지역에 둔다.
1. 서울지부 : 서울특별시 ○○구 ○○동 ○○로
2. 부산지부 : 부산광역시 ○○구 ○○동 ○○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를 정확하게 명기할 필요가 있는 법인의 경우에 해당한다.

[사례4]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한다.

※(사례3),(사례4)는 법인을 설립할 당시 이미 분사무소(지부)까지 설치한 법인과 기존 법인 중에서 분사무소(지부)가 설치된 법인의 경우에 해당한다.

제3조(목적)

본회는 _____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2.
3.
4.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임 원

제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인(이사장을 포함한다)

※이사는 5인 이상으로 정한다.

3. 감사 ○인

※감사는 2인 이하로 정한다.

제6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8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9조(상임이사)

①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상임이사를 두지 않는 경우에는 이 규정은 필요없음.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2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사례1]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례2]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장 이 사 회

제1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14조(소집)

[사례1]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사례2]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1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6조

[사례1]

제16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사례2]

제16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1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자금의 차입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9조(이사회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4장 재산과 회계

제20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1조(기본재산의 처분)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 · 증여 · 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2조(수입금)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입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3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4조(예산편성)

법인의 세입 ·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25조(결산)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6조(세계잉여금)

매 연도의 회계잉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27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사무부서

제28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사무국)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6장 보 칙

제30조(법인해산)

①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 단체 또는 법인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31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성 명	주 소	서 명

서식 1–3–2) 재단법인 정관예시 (재단법인 OOOO)

정 관

재단법인 OOOO

일시	원본대조필
2011.3.7.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OOOO"(영문표기,이하 "OOOOOO재단" 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재단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두며, 국내 · 국외의 필요한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재단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① 재단은 OOOOO 방안을 모색한다.

② 재단은 OOOO 방안을 모색한다.

③ 재단은 OOOO 모색한다.

제4조(사업)

① 재단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준법의식 기타 사회적 자본을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와 법령의 연구 및 제안
2.
3.
4.
5.
6.
7.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업과 관련된 연구자, 연구기관, 교육기관등에 대한 연구비 지원

9. 기타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은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서 출판사업

2. 홍보제작물의 판매사업

3.

제5조(무상이익의 원칙)

재단은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원칙적 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다.

제6조(수혜평등의 원칙)

재단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연령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장 재산 및 회계

제7조(재산의 구분)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재단 설립 당시 출연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1"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8조(재산의 관리)

① 재단의 기본재산을 매도 · 증여 · 교환 · 임대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재원)

재단은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에서 발생한 과실과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 후원금, 찬조금, 기부금, 기타의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

제10조(장기차입금)

재단이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나 1년 이상의 장기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1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조(업무보고)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에 다음 회계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경정에 관한 사항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③ 재단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년도 후원금 모금액 및 사업실적을 차년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13조(세계잉여금)

재단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상환 또는 다음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 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14조(임원의 보수)

재단은 상근하는 임원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임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상근하지 아니하는 임원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재단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이사장을 포함한다) 5인 이상 15인 이하
3. 감사 2인

제16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임기만료 1월전에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하고, 그 임기는 이사로서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 이사가 이사 정원의 하한선에 미달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재단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제18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제20조(임원 선임 제한)

① 이사의 선임에 있어서 공익법인의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 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이사와의 관계가 공익법인의설립 · 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지 않아야 한다.

제21조(상임이사)

① 재단은 목적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③ 상임이사의 업무 분담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22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의 장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3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상임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이사장 및 상임이사가 동시에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된 때에는 이사장 직무 대행자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임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고문)

① 재단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 약간 명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4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의 구성)

재단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며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6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 일시 ·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은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재단의 제반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재단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4. 임원선출 및 사업부서의 책임자 임명 · 해임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 결산에 관한 사항
6. 재단이 설립한 시설장의 임명 및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분사무소 또는 지부의 설치 · 운영 폐지등에 관한 사항
9. 기타 법령이나 재단의 정관 또는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8조(이사회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9조(이사회의 개의와 정족수)

이사회는 이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이사회의 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 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사무국

제31조(사무국)

① 재단의 집행업무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 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수익사업

제32조(수익사업)

① 재단은 제3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 부서의 사업종류별로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③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

제33조(수익사업의 기금 관리)

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재단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7장 보 칙

제34조(정관변경)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해산)

재단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게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6조(청산인)

재단의 해산 시 이사장은 당연직 청산인이 된다.

제37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재단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게 제출한다.

제38조(잔여재산의 처리)

재단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39조(운영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0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재단 설립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2000년 0월 00일

서식 1–4) 재산목록

재산목록

재 산 구 분		수 량	소재지	평가액(원)	취득원인	비 고
기본재산	현 금	계좌				예치금
	주 식	주				
	채 권					기업(회사)채 포함
	【동산 소계】					
	건 물	㎡				
	전(田)	㎡				
	답(畓)	㎡				
	대(垈)	㎡				
	임야(林野)	㎡				
	기 타					
	【부동산 소계】					
	기 타					
	【합 계】					
보통재산	현 금					
	【합 계】					
【총 계】						

작성자: 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재단법인 ○○○○ 출연자 ○○○ (날인 또는 서명)

서식 1–5)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Ⅰ. 주요사업 목표

1.
2.
3.

Ⅱ. 세부사업 내용

1. (제1사업명)

가. 목 적:

나. 사업내용:

⑴ 시행시기:
⑵ 장 소:
⑶ 사업내용:

다. 시행방법:

라. 소요예산: 금○○○원

⑴ 인건비:
⑵ 운영비:
⑶ 기 타:

라. 기타사항:

마. 향후계획:

2. (제2사업명)

3. (제3사업명)

작성자: 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재단법인 ○○○○ 출연자 ○○○ (날인 또는 서명)

서식 1-6) 임원취임 예정자 인적사항

임원취임 예정자 인적사항

연번	직 위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우편번호) 주 소	연 락 처
	주요약력				임기
1	이사장	홍길동 (洪吉東)	123456-1234567	(123~456) 서울 중구 계동 123번지	
	• (전) • (현) • (현)				
2					4년
3					
4					
5					
6					
작성자: 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재단법인 ○○○○ 출연자 ○○○ (날인 또는 서명)					

첨부 임원취임승락서 1부. 끝.

서식 1-6-1) 임원취임승락서

임원취임승락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본인은 이번에 새로 설립하는 사단(재단)법인 ○○○○의 이사(감사)에 취임하는 것을 승낙합니다.

20 년 월 일

이사(감사) 취임예정자 ○○○ (날인 또는 서명)

사단(재단)법인 ○○○○ 설립자 대표 ○○○ 귀하

서식 1-7)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본인은 법인임원간에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후 해당됨이 발견될 때에는 임원취임 승인취소 등 여하한 행정조치에도 아무런 이의가 없음으로 이에 각서 합니다.

년 월 일

사단법인 ○○○○

회장(이사)	홍 길 동 (인)
이사	갑 을 병 (인)
이사	(인)
이사	(인)
이사	(인)
이사	(인)
이사	(인)
이사	(인)
이사	(인)

법무부장관 귀하

서식 1-8) 사단법인 창립(발기인) 총회 회의록 예시

사단법인 ○○○○ 창립(발기인) 총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0 년 ○○월 ○○일 (15 : 00~17 : 00)

2. 회의장소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실

3. 회의안건 :

① 의장선출
② 설립취지 채택
③ 정관심의
④ 출연내용
⑤ 이사장 선임
⑥ 임원선임 및 임기결정
⑦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⑧ 사무소 설치
⑨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 책정
⑩ …

4. 회원총수 : ○○명 ("회원 명부" 참조)

5. 출석회원(발기인 포함) : ○○명

6. 결석회원(발기인 포함) : ○○명

7. 회의내용

임시 사회자 ○○○은 본 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성원보고한 후 "임시의장 선출" 안건을 상정하다.

[제1의안 상정] : 임시의장 선출

사회자: – "임시의장 선출(안)"을 상정하겠습니다.

–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를 임시의장으로 선출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회자: – 다른 분 추천 있습니까? (더 이상의 추천이 없다)

사회자: – ○○○께서 추천한 ○○○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찬성하시면 박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장일치로 전원 박수)

사회자: – 임시의장에 ○○○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후의 의사진행은 임시의장 ○○○에게 인계하고 사회자는 물러나다)

[제2의안 상정] 설립취지 채택

의 장: (간단하게 임시의장 취임 인사를 하다)

– 우리 법인의 "설립취지 채택" 안건을 상정합니다.

– ○○○ 발기인께서 설립취지(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작성되어 배포된 설립취지문안을 낭독하다)

의 장: – ○○○께서 낭독하신 설립취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 이미 준비된 설립취지문에 찬성하며 원안 의결할 것을 제안 합니다.

(회원전원):(○○○의 제안에 찬성하며 모두 박수치다)

의 장: – 본 설립취지(안)에 이의 없으신 것으로 알고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3의안 상정] 정관심의의 건

의 장: – 이어서 "정관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 발기인에게 준비된 정관(안) 낭독을 요청하다)

○○○: (정관 초안을 낭독하다)

○○○: – 정관의 내용이 무리없이 잘 구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본 정관이 어떠한 과정으로 작성되었는지 의장님께서 부연설명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 장: – 본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만든 정관예문(준칙)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본 정관에 추가 또는 삭제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 본 정관에 특별히 추가 또는 삭제할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원 박수)

의 장: – 그러면 본 정관도 초안에 이의 없으신 것으로 보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4의안 상정] 출연내용 채택의 건

의 장: – 다음은 "출연재산 채택(안)"을 상정합니다.

– 우리 법인의 출발을 위하여 ○○○께서 현금 0000원을 출연하시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께서 현금 000원을 출연하시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본 출연이 채택될 경우 ○○○의 출연금 0000원은 기본재산으로, ○○○의 출연금 000원은 설립 당해연도의 설립 제비용 등의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통재산으로 구분 채택하고자 합니다.

– 출연내용에 대하여 의견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 – 의장께서 설명하신 출연내용과 의견에 대하여 적극 찬성하며 출연하신 분의 뜻을 따라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 – ○○○의 제안에 찬성합니다 (회원 모두 박수)

의 장: – 출연재산을 원안대로 모두 채택합니다.

– 출연재산 채택 의결내용

- ▷000님 출연금: 현금 0000원 → 기본재산
- ▷000님 출연금: 현금 0000원 → 보통재산

[제5의안 상정] 이사장 선임의 건

의　장: – 우리 법인을 이끌어 나갈 "이사장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 회원님들께서 덕망있고 훌륭하신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사장에는 현재 임시의장으로 사회를 보시는 ○○○께서 맡아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전원 박수)

의　장: – 부족한 저를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더 많으신 줄 아니 다른 분을 더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 ○○○의 제안에 회원 모두 찬성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의장님을 이사장에 추천합니다 (전원 박수)

의　장: – 그러면 여러분의 뜻에 따라 당분간 우리 법인의 이사장 직을 맡아보겠습니다.

– 이사장 선임 건에 본인 000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6의안] 임원선임 및 임기결정의 건

의　장: – 이어서 "임원선임 및 임기결정"에 관한 안건을 상정합니다.

– 우선 임원의 수는 정관심의에서 기 결정되었듯이 00명으로 되어 있으니, 이에 대한 임원 후보자들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임원의 임기 문제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들의 추천과 논의 끝에 다음과 같이 뜻이 모아지다)

▷ 이사(00명) : 0000, 0000, 0000, 0000, 이상 00명 → 임기 4년
0000, 0000, 0000, 0000, 이상 00명 → 임기 2년

▷ 감사(2명) : 0000 → 임기 2년, 0000 → 임기 1년

의 장 : – 임원의 선출 및 임기의 내용이 결정된 것 같습니다.
– 본 내용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회중에서 이의 없음을 말하고 박수치다)

의 장 : – 임원의 선출 및 임기를 여러분의 결정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원박수 – 의사봉 3타)

의 장 : – 이어서 우리 법인설립 최초의 회원을 채택하고 회원의 회비 징수액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현재의 회원은 회원명부와 같이 총 00명이며 회비는 년 000원으로 하고자 하는 바,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이의가 없이 찬성하신다면 박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 중) : (전원 찬성하며 박수)

의 장 : – 설립최초의 회원 및 회비징수액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회원수 : 총 00명
▷ 회비징수액 : 년 000원

[제7의안 상정]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의 건

의 장 : – 향후 "3개년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께서 본 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ㅇㅇ: (유인물을 통하여 "3개년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사항을 설명하다)

ㅇㅇㅇ: – 상정(안)에 찬성합니다. 원안의결을 제안합니다 (전원 동의 – 박수)

의 장: – 전원 찬성으로 향후 3개년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8의안 상정] 사무소 설치의 건

의 장: – 다음은 본 법인의 "사무소 설치(안)"을 상정합니다.

– (사무소는 ㅇㅇㅇ가 ㅇㅇㅇㅇㅇ소재 건물을 법인 사무실로 무상 사용할 것을 허락하였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다)

ㅇㅇㅇ: 사무실을 무상으로 내어 주신 ㅇㅇㅇ께 감사 드리며 원안의결을 제안합니다.(전원 박수)

의 장: – 우리 법인의 사무소를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ㅇ"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9의안] 법인조직 및 상근 임직원 정수 책정

의 장: – 마지막으로 "법인의 조직 및 상근임직원의 정수 책정(안)"을 상정합니다.

– 유인물을 보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전원 이의없음을 표시하다)

의 장: – 이 안건도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폐　회

의　장 : – 마지막으로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참석회원 중「ooo, ooo, 홍길동, ooo」의 o명을 지정하여 서명·날인토록 하겠습니다. 이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전원 이의없음을 표시하다). 지정받은 서명위원들께선 폐회후 남아서 작성된 회의록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oo년 o월 o일

덧붙임 1. 설립취지문 1부.
2. 정관 1부.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4. 법인 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표 1부.
(※덧붙인 문서는 서명위원들이 본 회의록과 함께 간인하여야 함)

회원 대표　ooo (인)
회원　ooo (인)
회원　ooo (인)
회원　ooo (인)
회원　ooo (인)

Chapter 3

법인 정관변경 관련 서식

- 서식 2-1) 정관변경허가 신청서
- 서식 2-2) 정관변경사유서
- 서식 2-3) 정관변경 신 · 구 대비표(예시)
- 서식 2-4) 법인변경 사항 보고

서식 2-1)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별지 제4호서식]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 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설립허가일		설립허가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민법」 제42조 제2항·제45조 제3항·제46조 및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구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 결과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 법무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2-2) 정관변경사유서

정관변경사유서

1. 사단(재단)법인 ○○에서 사단(재단)법인 ◎◎으로 명칭 변경.

2. ○○에서 ◎◎으로 사단(재단)법인의 목적 변경.

3. ○○에서 ◎◎으로 사단(재단)법인의 출자방법 변경.

4. ○○에서 ◎◎으로 사단(재단)법인의 자산총액 변경.

위와 같은 사유로 20○○년 ○월 ○○일 (사원총회, 이사회)의 결의로 정관을 변경하고, 20○○년 ○월 ○○일 법무부의 허가를 받아 정관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서식 2-3) 정관변경 신·구 대비표(예시)

정관변경 신·구 대비표(예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사무소 소재지) 본회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각 시·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사무소 소재지) 본회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각 도에 시·도 복지회를, 각 시·군·구에 시·군·구 지부를 둘 수 있다.
제10조(임원) (생략) 1. (생략) 2. (생략) 3. 이사 9명(회장, 부회장 포함) 4. (생략)	제10조(임원)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이사 5~15명(회장, 부회장 포함) 4. (현행과 같음)
제15조(고문의 위촉) 1. 본회에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2. (생략) 3. (생략) 4. 〈신설〉 5. 〈신설〉	제15조(고문 및 운영위원의 위촉) 1. 본회에 약간명의 고문 및 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운영위원은 본회의 발전에 필요한 재정지원과 회장이 요청한 회무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5. 고문 및 운영위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사무부서) 1. 본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기타 필요한 직원 약간인을 둔다. 3. 사무국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운영규정을 정한다.	제16조(사무부서) 1. 본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2. 사무처에는 사무총장과 기타 필요한 직원 약간인을 둔다. 3. 사무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운영규정을 정한다.

서식 2–4) 법인변경 사항 보고

법인변경 사항 보고

신청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법 인	명 칭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성 명			
	주 소			
	설립허가 일 자		설 립 허 가 번 호	제 호

변 경 사 항 1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임원 변경 현황	성 명		
	주민번호		
	직 위		
	임 기		
	변경사유		

Chapter 4

법인 보고사항 등 관련 서식

- 서식 3-1) 사업계획 총괄표 (예시)
  - 사업계획 총괄표 작성요령
- 서식 3-2) 예산총괄표
- 서식 3-3) 세입(세출)예산서
- 서식 3-4) 추정대차대조표
  - 추정대차대조표 작성요령
- 서식 3-5) 추정손익계산서
  - 추정손익계산서 작성요령
- 서식 3-6) 세부사업계획

서식 3-1) 사업계획 총괄표 (예시)

○○년도 사업계획 총괄표

1. 법인명 : 법인 ○○○○ (설립일 : . .)

2. 일반현황

이사장		사무소 소재지			전 화	
					팩 스	
임원 정수	이사 : 명 감사 : 명	임원 현원	이사 : 명 감사 : 명	상 근 임직원수	임 원	명
					직 원	명
기본재산			보통재산			

3.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구 분		예 산 액	구 분		예 산 액
① 출연금			① 경상비 (법인운영)	인건비	
				운영비	
	소 계			소 계	
			② 퇴직적립금		
② 목적사업 수입금			③ 법 인 세		
③ 과실소득			④ 목적 사업비		
④ 기타수입					
				소 계	
	소 계		⑤ 기본재산 편입액		
⑤ 전기 이월액	목적사업 지급준비금		⑥ 목적사업 지급준비금		
	이월잉여금		⑦예비비		
	기 타				
	소 계				
⑥ 법인세 환급액				소 계	
합 계			합 계		

사업계획 총괄표 작성요령

일반현황

- 임원정수 : 정관상 임원의 정수 기재
- 임원현원 : 현재 임기중에 있는 임원수 기재

예산현황

[수 입]

① 출연금

② 목적사업 수입금 : 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 전액 기재

③ 과실소득 : 법인 소유 기본재산 운영으로 발생될 과실금액 기재

④ 기타수입 : 법인이 취득할 수입 중 위①~③을 제외한 금액을 항목별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

⑤ 전기이월액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금액 기재

– 이월 잉여금 : 전년도 이월액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제외한 금액 기재

– 기타 : 이월잉여금을 세부항목으로 구분할 경우 순수 이월잉여금 외에 별도 항목으로 구분 기재

⑥ 법인세환급액 : 전년도 법인세환급액 기재

[지 출]

① 경상비

– 인건비 : 상근 임직원에게 지급할 인건비 기재

– 운영비 : 경상비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 기재

② 퇴직적립금 : 상근 임직원에 대한 퇴직적립(예정)액 기재

③ 법인세 : 출연재산 운영소득을 근거로 지출될 법인세액 기재

④ 목적사업비 :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사업별로 기재하되, 직접목적사업비가 아닌 부대경비는 제외

⑤ 기본재산 편입액 : 전년도 이월금 중 당해연도의 기본재산 편입 예정액 기재

⑥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금액 기재

⑦ 예비비 : ①~⑥ 항의 지출항목을 제외한 잉여금 기재

서식 3-2) 예산총괄표

예산총괄표

법인명 :

(단위 : 천원)

세 입					세 출				
과 목	ⓐ 예산액	ⓑ 전년도 예산액	비 교 증(△)감 (ⓐ-ⓑ)	구성 비율 (ⓐ/ⓒ)	과 목	ⓐ 예산액	ⓑ 전년도 예산액	비 교 증(△)감 (ⓐ-ⓑ)	구성 비율 (ⓐ/ⓒ)
계	ⓒ				계	ⓒ			

서식 3-3) 세입(세출)예산서

세입(세출)예산서

법인명 :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관	항	목				

☞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는 예산액을 추가경정예산액으로, 전년도 예산액을 기정예산액으로 수정하여 작성한다.

서식 3–4) 추정대차대조표

추정대차대조표

법인명 :

(단위 : 천원)

자 산			부채 및 자본		
계정과목	금 액		계정과목	금 액	
	금년도	전년도		금년도	전년도

추정대차대조표 작성요령

- 기업회계 기준에 의거 작성
- 반드시 전기(직전년도)와 당기(당해년도)로 대비하여 작성
- 사업회계별로 구분하여 작성

서식 3–5) 추정손익계산서

추정손익계산서

법인명 :

(단위 : 천원)

자 산			부채 및 자본		
계정과목	금 액		계정과목	금 액	
	금년도	전년도		금년도	전년도

추정손익계산서 작성요령

- 기업회계 기준에 의거 작성
- 반드시 전기(직전년도)와 당기(당해년도)로 대비하여 작성
- 사업회계별로 구분하여 작성
- 추정손익계산서에는 전년도 이월액(당기순이익, 당기결손금 등)이 당해연도 수입금에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서식 3-6) 세부사업계획

세부사업계획

법인명 :

(단위 : 천원)

일시(기간)	장소	참여(수혜인원)	사업예산(원)	사업내용

Chapter 5

법인 점검 및 사업실적 관련 서식

- 서식 4-가) 사단 법인 점검표
- 서식 4-1) 사업실적 총괄표
  - 사업실적 총괄표 작성요령
- 서식 4-2) 결산총괄표
- 서식 4-3) 세입(세출)결산서
- 서식 4-4) 대차대조표
  - 대차대조표 작성요령
- 서식 4-5) 손익계산서
  - 손익계산서 작성요령
- 서식 4-6) 재산현황
- 서식 4-7) 보통재산현황
- 서식 4-8) 기본재산 증감보고서
- 서식 4-9) 세부사업실적

서식 4-가) 사단법인 점검표

사단법인 점검표

법 인	명 칭			
	소 재 지			
	전 화 번 호			
	대표자 성명		대 표 자 주민등록 번호	
	주 소			
	설립허가 일자		설립허가 번호	제 호

법인사무 1

검토항목	검 토 사 항	적합여부	추진실태
Ⅰ. 민법 제97조	1. 등기 및 등기사항 보고 해태 여부		
	2. 재산목록 미비치 및 부정기재 여부		
	3. 신고사항 미신고 및 부정 신고 여부		
	4. 파산신청 해태 등		
Ⅱ. 목적사업의 이행	1. 정관 목적사업 실시 여부		
	2.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지 여부		
	3. 정관목적사업이외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 여부		
Ⅲ. 수익사업의 적정성	1. 과도한 입장료, 참가비 등 부과 여부		
	2. 법인 사업수행에 따른 과실을 개인에게 분배하고 있는 지 여부		
Ⅳ. 학점은행제	1. 허위·과대 광고 행위 여부		
	2. 부실 운영으로 다른기관으로부터 불이익 처분을 받았는 지 여부		
	3. 기타 공익을 침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는 지 여부		

법인사무 2

검토항목	검 토 사 항	적합여부	추진실태
Ⅴ. 임원 등	1. 임원·감사의 자격 충족 여부 및 선임의 적법성 여부		
	2. 이사회의 적법한 운영 여부		
Ⅵ. 사업계획의 이행 등	1. 설립허가시 및 매년도 제출한 사업계획의 이행 여부		
	2. 분사무소 등기 및 보고 여부		
	3. 허위 분원 운영, 분원 등기 및 신고 해태 여부 등		
Ⅶ. 정관변경 등	1. 이사의 임면, 이사의 권한 제한 등 정관 변경 사항의 임의 변경 여부		
	2. 허가조건 준수 여부 등		

재산변동 등 회계감사

검토항목	검 토 사 항	적합여부	추진실태
Ⅰ. 기본재산 확보 여부	1. 기본재산 확보 여부		
Ⅱ. 기본재산 처분 여부	1. 정관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산 처분 여부		
	2. 등가 이하의 다른 재산과의 교환 여부		
	3. 자의적인 담보 설정행위 여부		
	4. 법인 목적과 무관한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연대채무 등 부담행위 여부		
	5. 기본재산의 성질을 변경한 보존·이용·개량행위 여부 등		
Ⅲ. 법인재산의 분배	1. 대표자 등 임원에 대한 과도한 임금 지급 및 업무추진비 등의 지급 여부		
	2. 법인 차량, 휴대전화, 사무실 등의 임의 사용 여부		
Ⅳ. 기 타			

이상의 사항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단법인명 : ○○○○

대표자(대리인) ○ ○ ○ (인)

● 건의사항

● 제도개선 건의

점검자 소속 ○○○○

직 급 ○○○

성 명 ○ ○ ○ (인)

서식 4-1) 사업실적 총괄표

○○년도 사업실적 총괄표

1. 법인명 : 법인 ○○○○ (설립일 : . .)

2. 일반현황

이 사 장		사 무 소 소 재 지			전 화	
					팩 스	
임원정수	이사 : 명 감사 : 명		이사 : 명 감사 : 명	상 근 임직원수	임 원	명
					직 원	명
기본재산				보통재산		

3. 예산현황

수 입			지 출			
구 분		예 산 액	구 분			예 산 액
① 출연금			① 경상비 (법인운영)	인건비		
				운영비		
	소 계			소 계		
			② 퇴직적립금			
② 목적사업 수입금			③ 법 인 세			
③ 과실소득			④ 목적 사업비			
④ 기타수입						
				소 계		
	소 계		⑤ 기본재산 편입액			
⑤ 전기 이월액	목적사업 지급준비금		⑥ 차기 이월액	목적 사업 지급 준비금	전기 (전년도)	
					당기 (당해년도)	
	이월잉여금			이월잉여금		
	기 타			기타		
	소 계			소 계		
⑥ 법인세 환급액						
합 계			합 계			

사업실적 총괄표 작성요령

1. 사업실적 총괄표 작성

일반현황

- 임원정수 : 정관상 임원수 기재
- 임원현원 : 현재 임기중에 있는 임원수 기재
- 상근임직원 : 상근 임직원수 기재

결산현황

[수 입]

① 출연금

② 목적사업 수입금 : 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 전액 기재

③ 과실소득 : 법인 소유 기본재산 운영으로 발생된 과실금액 기재

④ 기타수입 : 법인이 취득할 수입 중 위①~③을 제외한 금액을 항목별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

⑤ 전기이월액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각 연도별로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미사용액을 연도별로 구분 기재

(예) '00년도 : 223,230원, '01년도 : 241,000원, '02년도 : 324,230원

– 이월 잉여금 : 전년도 이월액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제외한 금액 기재

– 기타 : 이월잉여금을 세부항목으로 구분할 경우 순수 이월잉여금 외에 별도 항목으로 구분 기재

⑥ 법인세환급액 : 전년도 법인세환급액 기재

– 기타 : 이월잉여금을 세부항목으로 구분할 경우 순수 이월잉여금 외에 별도 항목으로 구분 기재

⑥ 법인세환급액 : 전년도 법인세환급액 기재

[지 출]

① 경상비

– 인건비 : 상근 임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기재

– 운영비 : 경상비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 기재

② 퇴직적립금 : 상근 임직원에 대한 퇴직적립금액 기재

③ 법인세 : 출연재산 운영소득을 근거로 지출된 법인세액 기재

④ 목적사업비 :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비 집행액을 사업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목적사업비가 아닌 부대경비는 제외

⑤ 기본재산 편입액 : 전년도 이월금 중 당해연도의 기본재산에 편입한 금액과 기타 사유(증여, 기부, 보통재산 등)로 기본재산에 편입한 금액 기재

⑥ 차기이월금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전기"란에는 직전년도까지의 지급준비금 총액 중 미사용 합계를 기재하고, "당기"란에는 당해연도에 설정한 금액 기재

– 이월잉여금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제외한 이월잉여금 기재

– 기타 : 이월잉여금을 세부항목으로 구분할 경우 순수 이월잉여금 외에 별도 항목으로 구분 기재

2. 사업비 지급명세서 작성

(단위 : 원)

사 업 명	사업내역	집 행 액	산출기초	비 고
①출연금			000,000원×0회 000,000원×0명×회	
	: :		000,000원×0회	
기타사업	: :			
합 계				

서식 4-2) 결산총괄표

결산총괄표

법인명 :

(단위 : 천원)

세 입					세 출				
과 목	ⓐ 예산액	ⓑ 전년도 예산액	비 교 증(△)감 (ⓐ-ⓑ)	구성 비율 (ⓐ/ⓒ)	과 목	ⓐ 예산액	ⓑ 전년도 예산액	비 교 증(△)감 (ⓐ-ⓑ)	구성 비율 (ⓐ/ⓒ)
계	ⓒ				계	ⓒ			

서식 4–3) 세입(세출)결산서

세입(세출)결산서

법인명 :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관	항	목				

서식 4-4) 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

법인명 :

(단위 : 천원)

자 산			부채 및 자본		
계정과목	금 액		계정과목	금 액	
	금년도	전년도		금년도	전년도

대차대조표 작성요령

- 기업회계 기준에 의거 작성
- 반드시 전기(직전년도)와 당기(당해년도)로 대비하여 작성
- 사업회계별로 구분하여 작성

서식 4–5)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법인명 :

(단위 : 천원)

자 산			부채 및 자본		
계정과목	금 액		계정과목	금 액	
	금년도	전년도		금년도	전년도

손익계산서 작성요령

- 기업회계 기준에 의거 작성
- 반드시 전기(직전년도)와 당기(당해년도)로 대비하여 작성
- 사업회계별로 구분하여 작성
- 손익계산서에는 전년도 이월액(당기순이익, 당기결손금 등)이 당해연도 수입금에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서식 4-6) 재산현황

재산현황

법인명 :

(단위 : 천원)

재 산 구 분		수 량	소재지	평가액(원)	취득원인	비 고
기본재산	현 금	계좌				예치금
	주 식	주				
	채 권					기업(회사)채 포함
	【동산 소계】					
	건 물	㎡				
	전(田)	㎡				
	답(畓)	㎡				
	대(垈)	㎡				
	임야(林野)	㎡				
	기 타					
	【부동산 소계】					
	기 타					
	【합 계】					
보통재산	현 금					
	【합 계】					
【총 계】						

● 기본재산이 현금일 경우는 잔액증명서, 부동산일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제출

서식 4-7) 보통재산현황

보통재산현황

법인명 :

(20○○. 12. 31현재)

1. 총괄

재 산 구 분	수 량	소재지	평가액(원)	취득원인	비 고
예 금					
주 식					
채 권					
부 동 산					
기 타					
총 계					

2. 분류별 세부내역

재 산 명	종 류	수 량	평가액(원)	비 고
총 계				

- 보통재산 현황에는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을 기재
- 분류별 세부내역에는 총괄에서 분류된 재산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 분류별 세부내역의 비고에는 발생 또는 보유사유와 집행계획을 간략히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첨부

서식 4-8) 기본재산 증감보고서

기본재산 증감보고서

법인명 :

재산명	재산변동 내역		변 경 사 유	변경 일자	비 고
	변동 전	변동 후			

서식 4–9) 세부사업실적

세부사업실적

법인명 :

(단위 : 천원)

일시(기간)	장소	참여(수혜인원)	사업예산(원)	사업내용

Chapter 6

법인 해산·청산 관련 서식

- 서식 6-1) 비영리법인 해산신고서
- 서식 6-2) 법인청산인 선정신고서
- 서식 6-3)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
- 서식 6-4) 청산종결신고서

서식 6-1)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별지 제5호서식]

비영리법인 해산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청산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청산 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해산 연월일			
해산사유			

「민법」 제86조제1항 및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확 인 ▶ 결 재

신고인 처리기관: 법무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6-2) 법인청산인 선정신고서

법인청산인 선정신고서

처리기간 : 10일

신청인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이사·청산인)		생년월일	
	청산인주소		전화번호	
청산인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취임일

위 청산인(들)은 20○○년 ○월 ○일 사원총회(이사회)에서 청산인으로 선정되었고, 20○○년 ○월 ○일 청산인회의 결의로 ○○○이 대표 청산인으로 선정되었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해산당시의 정관 1부 2. 총회회의록 사본(사단법인의 경우) 1부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없음

서식 6-3)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서식]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청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 표 자 (이사·청산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처분재산	종류 및 수량	
	금액	
	처분 방법	
처분 사유		

「민법」 제80조제2항 및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해산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총회의 회의록 1부(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 등으로 「민법」 제80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재산처분에 대한 총회의 결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 ▶ 결 재 ▶ 결과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 법무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6-4)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별지 제7호서식]

청산종결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청산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청산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청산 연월일					
청산 취지					

「민법」 제94조 및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종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청산인)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신고인(청산인) 제출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Chapter 7

공익법인 관련 서식

- 서식 7-1)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편입 허가신청서
- 서식 7-2)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편입 허가 신청내역서
- 서식 7-3) 사업계획서
- 서식 7-4) 세부사업계획
- 서식 7-5) 수지계획서
- 서식 7-6)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편입 사유서
- 서식 7-7) 이사회 회의록
- 서식 7-8) 편입 기관 경과 소명서
- 서식 7-9) 임원취임 예정자 인적사항
- 서식 7-10) 임원취임승락서
- 서식 7-11)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서식 7-1)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편입 허가신청서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편입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이사·청산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편입 예정 재산	종류			
	금액			
편입 사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제3호,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단(재단)법인 ○○○ 이사장 ○○○ (인)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수수료
없음

※ 구비서류

1. 기본재산명세서 및 편입재산명세서 1부
2. 기본재산의 평가액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기본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확인서를 포함한다) 1부
3. 보통재산편입 이후 2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4.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각 1부
5.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1부

서식 7-2)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편입 허가 신청내역서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편입 허가 신청내역서

▣ 법인명 : 사단(재단)법인 ○○○

(단위 : 원)

재산 명세서

기본재산 구분			편입전 기본재산 ('00년0월0일 현재의 기본재산) 【(수량)금액】	편입예정재산	편입 후 기본재산 예정액 【(수량)금액】
구분	종목	종별 또는 소재지			
기본재산	현 금	예금	200,000,000	100,000,000	100,000,000
	채 권				
	【동산 소계】		200,000,000	100,000,000	100,000,000
	임야(林野)		3,000㎡(9,687,350)		3,000㎡(9,687,350)
	기 타				
	【부동산 소계】		3,000㎡(9,687,350)		3,000㎡(9,687,350)
【총 계】			**209,687,350**	**100,000,000**	**109,687,350**

서식 7-3) 보통재산편입 이후 2 사업연도분의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Ⅰ. 주요사업 목표

1.
2.
3.

Ⅱ. 세부사업 내용

1. (제1사업명)

가. 목 적:

나. 사업내용:

⑴ 시행시기:
⑵ 장 소:
⑶ 사업내용:

다. 시행방법:

라. 소요예산: 금○○○원

⑴ 인건비:
⑵ 운영비:
⑶ 기 타:

라. 기타사항:

마. 향후계획:

2. (제2사업명)

3. (제3사업명)

작성자: 사단(재단)법인 ○○○○ 이사장 ○○○ (날인 또는 서명)

서식 7–4) 세부사업계획

세부사업계획

법인명 : 사단(재단)법인 ○○○

(단위 : 천원)

일시(기간)	장소	참여(수혜인원)	사업예산(원)	사업내용

서식 7-5) 보통재산편입 이후 2 사업연도분의 수지계획서

수지계획서

1. 법인명 : 사단(재단)법인 ○○○

회계연도 : 2○○○년도

(단위 : 천원)

<table>
<tr><th colspan="3">수 입</th><th colspan="3">지 출</th></tr>
<tr><th colspan="2">구 분</th><th>금 액</th><th colspan="2">구 분</th><th>금 액</th></tr>
<tr><td rowspan="3">①회비</td><td>회비</td><td></td><td rowspan="3">①경상비</td><td></td><td></td></tr>
<tr><td>임원특별회비</td><td></td><td></td><td></td></tr>
<tr><td>소계</td><td></td><td></td><td></td></tr>
<tr><td rowspan="3">②출연금</td><td>기본재산</td><td></td><td colspan="2">②법인세</td><td></td></tr>
<tr><td>보통재산</td><td></td><td rowspan="5">③목적
사업비</td><td></td><td></td></tr>
<tr><td>소계</td><td></td><td></td><td></td></tr>
<tr><td rowspan="2">③과실소득</td><td rowspan="2"></td><td rowspan="2"></td><td></td><td></td></tr>
<tr><td></td><td></td></tr>
<tr><td rowspan="4">④수익사업</td><td></td><td></td><td>소계</td><td></td></tr>
<tr><td></td><td></td><td colspan="2" rowspan="3">④기본재산 편입액</td><td rowspan="3"></td></tr>
<tr><td></td><td></td></tr>
<tr><td>소계</td><td></td></tr>
<tr><td rowspan="2">⑤전기
이월액</td><td>이월금</td><td></td><td colspan="2" rowspan="3">⑤차기이월액</td><td></td></tr>
<tr><td>소계</td><td></td><td></td></tr>
<tr><td colspan="2">⑥법인세 환급액</td><td></td><td></td></tr>
<tr><td colspan="2">합계</td><td></td><td colspan="2">합계</td><td></td></tr>
</table>

작성자 : 사단(재단)법인 ○○○○ 이사장 ○○○ (날인 또는 서명)

서식 7-6)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편입 사유서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편입 사유서

본 법인의 기본재산 현금 1억원으로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있어 이자소득으로 장학사업을 수행(2015년 6,000천원, 2016년 3,000천원 목적사업 수행)하였으나, 기본재산의 운용수익이 감소하여 목적사업 수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보통재산으로 편입하여 장학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2○○○ 년 ○○ 월 ○○ 일

사단(재단)법인 ○○○ 이사장 ○○○ (인)

법무부장관 귀하

※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편입 사유를 반드시 기재(소명자료 첨부)

※ 목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서식 7-7) 이사회 회의록(예시)

재단법인 ○○○○ 이사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0 년 ○○월 ○○일 (15 : 00~17 : 00)

2. 회의장소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실

3. 회의안건 :

– 제1호 의안 :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편입 계획(안)

4. 출석임원 : 이사○명, 감사 ○명

5. 결석임원 : 이사○명, 감사 ○명(결석임원의 성명을 모두 기재)

6. 회의내용

사무국장 ○○○은 본 이사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성원보고한 후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편입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1의안 상정] :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편입 계획(안)

이사장 : 2016년도 제○회 이사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의안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편입 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사무국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 우리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현금 1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재산의 현금 1억원으로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있어 이자소득으로 장학사업을 수행(2015년 6,000천원, 2016년 3,000천원 목적사업 수행)

하였으나, 기본재산의 운용수익이 감소하여 목적사업 수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보통재산으로 편입하여 장학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사: 최근 금리의 하락으로 목적사업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는 것에 이의 있으시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기본재산의 보통재산편입에 대해 더 의견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이사전원 : 없습니다.

이사장 : 그럼,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편입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이사전원 : 찬성합니다.

이사장 : 제1안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편입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사무국장은 빠른 시일내에 편입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7. 폐 회

– 이상으로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년 ○월 ○일

이사장 ○○○ (인)
출석이사 ○○○ (인)
출석이사 ○○○ (인)
출석이사 ○○○ (인)
출석이사 ○○○ (인)
감사 ○○○ (인)
감사 ○○○ (인

※ 회의록은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편입사유, 편입재산 등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하며 진행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 이사회는 이사장 및 출석이사, 감사전원이 기명날인하며 각 장마다 간인한다.
※ 감사는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서식 7-8) 편입 기간 경과 소명서

편입 기간 경과 소명서

직전 편입 일시	
직전 편입 액수	
직전 편입 사유	

※ 구비서류 : 직전 편입허가서 및 편입신고서 1부

2○○ 년 ○○ 월 ○○ 일

사단(재단)법인 ○○○ 이사장 ○○○ (인)

법무부장관 귀하

서식 7-9) 임원취임 예정자 인적사항

임원취임 예정자 인적사항

연번	직 위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우편번호) 주 소	연 락 처
	주요약력				임기
1	이사장	홍길동 (洪吉東)	123456-1234567	(123~456) 서울 중구 계동 123번지	
	• (전) • (현) • (현)				
2					4년
	•				
3					
	•				
4					
	•				
5					
	•				

작성자 : 사단(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첨부 임원취임승락서 1부. 끝.

서식 7-10) 임원취임승락서

임원취임승락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본인은 이번에 새로 설립하는 사단(재단)법인 ○○○○의 이사(감사)에 취임하는 것을 승낙합니다.

20 년 월 일

이사(감사) 취임예정자 ○○○ (날인 또는 서명)

사단(재단)법인 ○○○○ 설립자 대표 ○○○ 귀하

서식 7-11)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상기 본인은 법인 임원 간에 공익법인법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각 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후 해당됨이 발견될 때에는 임원취임승인 취소 등 여하한 행정적 조치에도 아무런 이의가 없음으로 이에 각서 합니다.

년 월 일

사단법인 ○○○○

회장(이사)	홍 길 동 (인)
이사	갑 을 병 (인)
이사	(인)
이사	(인)
이사	(인)
이사	(인)
이사	(인)
감사	(인)
감사	(인)

법무부장관 귀하

Ministry of Justice

실무자를 위한
비영리·공익 법인 관리·감독 업무 편람

Part 7 주요 판례

Chapter 1 법인일반 관련 _ 298
Chapter 2 법인의 설립·해산 관련 _300
Chapter 3 법인의 관리·운영 관련 _ 308
Chapter 4 법인의 사업·결산 및 세무관련 _ 317

Chapter 1

법인일반 관련

사단법인 AA항 부두관리협회의 비영리법인성

대법원 1988. 9. 27. 선고 86누827 판결

판결요지

사단법인 AA항부두관리협회가 부산항만내의 관유시설 및 국유물의 보관, 관리 및 경비, 부두내 질서유지와 청소 및 부산항부두발전과 근대화를 위한 시책의 건의등 본래 국가 또는 공공단체게 행할 행정적인 업무에 속하는 일을 감독관청의 감독아래 대행케 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이라면 이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이른바 행정보완적 기능을 가진 공익법인이다.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소정의 "공익법인"에는 종교법인도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1978. 6. 13. 선고 77도4002 판결

판결요지

종교법인인 재단법인 태극도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말하는 "공익법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사단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의 동일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37021 판결

판결요지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의 단체에 법인격이 인정된 것을 말하고, 사단법인에 있어 사원 자격의 득실변경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기재사항이므로(민법 제40조 제6호), 어느 사단법인과 다른 사단법인이 동일한 것인지 여부는 그 구성원인 사원이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됨이 원칙이다. 다만, 사원 자격의 득실변경에 관한 정관의 기재사항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변경된 경우에는 구성원이 다르더라도 그 변경 전후의 사단법인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Chapter 2

법인의 설립·해산 관련

사단법인의 정관의 법적 성질 및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는 다른 해석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표명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이 구속력을 갖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12437 판결

판결요지

사단법인의 정관은 이를 작성한 사원뿐만 아니라 그 후에 가입한 사원이나 사단법인의 기관 등도 구속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는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규범적인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지, 작성자의 주관이나 해석 당시의 사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어느 시점의 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들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8다481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재단법인의 설립함에 있어서 출연재산은 그 법인이 설립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된다는 민법 제48조의 규정은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를 상대적 으로 결정하는 기준에 불과하여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도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는 법인의 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출연행위는 법률행위이므로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에는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것일 경우 등기를 필요로 한다.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 출연한 재산(부동산)이 재단법인에로 귀속하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요한 지의 여부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8054 판결

판결요지

민법 제48조는 재단법인 성립에 있어서 재산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출연재산의 귀속에 관한 규정이고, 이 규정은 그 기능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결정함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것에 불과하여, 출연재산은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출연행위에 터잡아 법인이 성립되면 그로써 출연재산은 민법의 위 조항에 의하여 법인 성립시에 법인에게 귀속되어 법인의 재산이 되는 것이고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있어서도 위 양당사자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요건(법인의 성립)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출연행위가 법률행위이므로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에는 부동산의 권리에 관해서는 법인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한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실시한 강제경매의 효력

대법원 1965. 5. 18. 선고 65다114 판결

판결요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처분은 정관변경행위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고 재단의 채권자가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경락이 된 경우도 동일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재단법인의 출연자가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경우, 재단법인의 성립 여부나 출연된 재산이 기본 재산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9045 판결

판결요지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출연행위에 터잡아 법인이 성립되면 그로써 출연재산은 민법 제48조에 의하여 법인 성립시에 법인에게 귀속되어 법인의 재산이 되는 것이고,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있어서도 위 양당사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법인의 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재단법인의 출연자가 착오를 원인으로 취소를 한 경우에는 출연자는 재단법인의 성립여부나 출연된 재산의 기본재산인 여부와 관계없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 범위 내의 행위'의 의미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판결요지

법인의 권리능력 혹은 행위능력은 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한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성질과 주무관청의 재량의 정도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8437 판결

판결요지

민법은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의 자유 설립을 부정하고 있고, 제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 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며,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법인설립 불허가처분에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다든지 또는 사회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고, 주무관청이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판단 과정에 일응의 합리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허가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등기하지 아니한 법인 대표권제한의 효력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4564 판결

판결요지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노회와 설립자의 승인을 얻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은 규정은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러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표이사가 회사의 권리능력 범위 내에서 대표권한을 초과하여 행한 행위의 제3자에 대한 효력 및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한 행위의 효력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판결요지

대표이사의 대표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회사의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 속한 행위이기만 하면 대표권의 제한을 알지 못하는 제3자가 그 행위를 회사의 대표행위라고 믿은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고,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며, 이는 민법상 법인의 대표자가 대표권한을 남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표권의 제한이 미등기인 때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6다카2484 판결

판결요지

사단법인의 대표자가 채무를 인수함에 있어 사원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따로 거치도록 되어 있다면 이와 같은 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는 법인 대표권에 대한 제한으로서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권리자를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정하도록 한 정관 규정도 유효한지 여부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3473 판결

판결요지

민법 제80조 제1항과 제2항의 각 규정 내용을 대비하여 보면,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권리자를 직접 지정하지 아니하고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를 정하도록 하는 등 간접적으로 그 귀속권리자의 지정방법을 정해 놓은 정관 규정도 유효하다.

민법상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잔여재산처분행위의 효력

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두5279 판결

판결요지

민법 제80조 제1항, 제81조 및 제87조 등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모두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강행규정이므로, 해산한 법인이 잔여재산의 귀속자에 관한 정관규정에 반하여 잔여재산을 달리 처분할 경우 그 처분행위는 청산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학교법인의 이사 겸 학교장이 학교법인의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자기 사업자금으로 금전을 차용한 행위가 학교법인의 사무집행 행위인지 여부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534 판결

판결요지

학교법인의 설립자로서 이사 겸 학교장인 자가 자기 개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학교법인의 명의로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을 위하여 학교법인의 이사회결의까지 있었다면 그 차용금의 사용목적이 무엇이던간에 위 학교장의 차용행위는 학교법인의 사무집행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청산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와 청산법인의 존속 여부

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2036 판결

판결요지

민법 제80조·제81조·제87조 등 법인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청산법인이나 그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한때는 무효라 할 것이다. 청산 종결등기가 경료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회원들에게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용역을 제공하면서 수수료를 받은 것이 비영리법인의 수익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4435 판결

판결요지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민법 제32조 및 저작권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의 신탁관리를 목적으로 당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단 법인으로서 소속 회원인 음악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권의 신탁관리를 의뢰받아 저작물의 이용자들에게 이를 사용하게 한 후 그들로부터 사용료를 수령하여 관리수수료와 원천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저작권자들에게 건네주는 절차를 통하여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위 법인의 관리업무는 주무부서의 지도와 감독하에 이루어지고 수수료의 비율 또한 저작권법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장관의 승인으로 결정되며 위 법인의 정관 및 저작권신탁계약 약관의 관련 조항에 의하면 위와 같이 징수한 관리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사용한 후 발생하는 잔액 즉, 수지차액금은 이를 전액 회원들에게 안분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이를 추가로 분배하도록 하는 이른바 실비정산방식의 회계처리를 채택하여 운영하여 왔는바 비영리사단법인인 위 협회가 영위한 신탁관리업무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대리·중개 또는 알선업 등의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업무수행에 관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그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Chapter 3

법인의 관리·운영 관련

임기만료된 이사의 업무수행권이 인정되는 범위

대법원 1988. 3. 22. 선고 85누884 판결

판결요지

민법상의 법인에 있어 이사의 전원 또는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 인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된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 이사는 신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그의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할 것이나 위와 같이 임기만료된 이사의 업무수행권은 어디까지나 법인은 그 기관을 구성하는 이사에 의하여서만 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사에 결원이 있음으로써 법인의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사태를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사 중의 일부에 임기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다른 이사들로써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태여 임기만료된 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케 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임기만료로서 당연히 퇴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소집절차의 하자와 비영리법인 이사회 결의의 효력

대법원 1988. 3. 22. 선고 85누884 판결

판결요지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이사회 결의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적법한 소집절차도 없이 개최되어 한 것이라면 그 이사회결의는 당연무효이다.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이사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의 법적 지위 및 권한 범위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16996 판결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권리자가 당하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로서 그 분쟁의 종국적인 판단을 받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법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재단법인의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는 단지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재단법인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재단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재단법인의 근간인 이사회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것과 같은 재단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는 것은 이러한 가처분의 본질에 반한다.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만료된 재단법인 이사의 직무수행권 및 그 한계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614 판결

판결요지

임기 만료된 재단법인 이사는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별다른 급박한 사정도 없이 임기만료 전의 현임 이사를 해임하고 그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한 이사 및 평의원 연석회의를 스스로 소집하고 이를 제안하는 것과 같은 일은 임기 만료된 이사장에게 수행케 함은 부적당한 임무에 해당한다.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임기만료 후 후임 이사장 취임 전에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의 확정으로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정관에서 이사장 직무대행 사유로 정한 '이사장의 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7131 판결

판결요지

재단법인의 정관에서 "이사장의 유고시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이사장의 유고란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하기 전에 이사장이 사망,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하지만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한 후 후임 이사장이 취임하기 전에 임기만료한 이사장에 대하여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임기만료한 이사장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사장의 유고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임기가 만료된 재단법인 이사의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의 권한 대행권

대법원 1963. 4. 25. 선고 63다15 판결

판결요지

이사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는 그 이사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임기 만료된 정족수에 달하는 이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후임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하여도 그 결의를 무효라 할 수 없다.

재단법인의 이사가 사임을 함에 있어 사임의 의사표시 외에 법인의 승낙을 요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749 판결

판결요지

재단법인의 이사는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사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고, 그 의사표시가 수령권한 있는 기관에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며, 법인의 승낙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45조, 제46조 소정의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의 법적 성질

대법원 1996. 5. 16. 선고 95누4810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민법 제45조와 제46조에서 말하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법률상의 표현이 허가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성질에 있어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법적 성격은 인가라고 보아야 한다.

사단법인의 이사장 직무대행자가 개인의 입장에서 그 사단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 민법 제64조가 규정하는 이익상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2다69211 판결

판결요지

이사장등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의하여 선임된 사단법인의 이사장 직무대행자는 위 법인에 대하여 이사와 유사한 권리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므로, 위 법인과의 사이에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64조가 준용되고, 위 법인의 이사장 직무대행자가 개인의 입장에서 원고가 되어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64조가 규정하는 이익상반 사항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임기만료된 재단법인의 이사가 적법한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26187 판결

판결요지

재단법인의 이사 전부 또는 일부가 임기만료되었음에도 후임 이사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후임 이사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어서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들 인원수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전임(前任)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임 이사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주무관청의 허가 없는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의 효력

대법원 1998. 12. 11. 선고 97다9970 판결

판결요지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무효로 되고, 이는 공익법인의 채권자가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비영리 재단법인의 이사장의 행위가 주무관청의 허가의 문제로 법률상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단법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린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도2639 판결

판결요지

비영리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설립목적과는 다른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매수하여 사용할 의도를 가진 공소외인과 사이에 기본재산의 직접적인 매도는 주무관청의 허가문제 등으로 불가능하자 이사진 등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재단법인의 운영을 공소외인에게 넘긴 후 공소외인이 의도하는 사업을 할 수 있게 재단법인의 명칭과 목적을 변경함으로써 사실상 기본재산을 매각하는 효과를 얻되 그 대가로 금원을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그 일부를 수령한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의 문제로 법률상 유효한 약정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재단법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린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경매와 주무관청의 허가

대법원 1967. 2. 22. 선고 65마704 결정

판결요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의 변경에 속하는 것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고 이 허가없이 한 위의 재산처분은 임의 매매의 경우이던 경매의 경우이던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목적범위를 벗어난 행위의 효력

대법원 1965. 7. 6. 선고 65다854 판결

판결요지

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목적에 속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관하여 어떤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법인을 위하여 그 효력이 없다.

비영리법인에 있어, 성질상 이사장 개인의 행위를 이유로 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한 위법이 있는 예

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누21 판결

판결요지

민법 제38조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를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인설립당시에는 그 목적사업도 공익을 해하는 것이 아니었으나 그 후 사정 변동에 의하여 그것이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되었을 경우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이사회 결의 없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의 효력

대법원 2000. 6. 28. 선고 2000다20090 판결

판결요지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에 관하여 준용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 제1조·제6조·제7조, 그 밖의 위 각 법의 여러 규정을 아울러 살펴보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 제7조에서 공익법인의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 한다고 한 것은 공익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재산의 원활한 관리 및 유지 보호와 재정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공익법인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그 본래의 목적사업에 충실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할 것이므로,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가 이사회의 의결 없이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그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

정관변경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정관변경인가처분의 취소·무효 확인의 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6. 5. 16. 선고 95누4810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민법」제45조와 제46조에서 말하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법률상의 표현이 허가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성질에 있어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법적 성격은 인가라고 보아야 한다. 인가는 기본행위인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이 되는 정관변경 결의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 하여도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으므로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가 적법 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공익법인이 이사회의 결의 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행위의 효력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8195 판결

판결요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는 재산의 '처분'뿐만 아니라 그 '취득'에도 이사회의 결의를 요구하고 있다. 그 취지는 공익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재산의 원활한 관리 및 유지·보호와 재정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공익법인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그 본래의 목적사업에 충실하게 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공익법인이 주식 기타 목적물을 증여받는 등으로 그 재산을 대가의 출연 없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써 공익법인의 재산적 기초가 더욱 공고하게 되므로, 위와 같이 이사회의 결의를 요구하여 그 결의가 없으면 재산의 취득을 무효로 하는 취지를 관철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공익법인이 이사회의 결의 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였다고 해도, 유상취득의 경우와는 달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다.

Chapter 4

법인의 사업·결산 및 세무관련

재단법인 기본재산의 편입

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다1038 판결

판결요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편입행위는 기부행위의 변경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주무관청의 인가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재단법인 한국기원이 각종 바둑대회를 주관해 준 행위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비영리 문화행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2786 판결

판결요지

재단법인 한국기원이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 아래 기도문화의 발전과 바둑의 보급, 전문기사와 아마기사의 양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문화단체이고, 각종 바둑대회의 개최나 후원 등을 고유의 사업으로 삼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인이 각종 바둑대회를 주관해 준 행위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비영리 문화행사에 해당한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증가와 주무관청의 인가의 요부

대법원 1978. 7. 25. 선고 78다783 판결

판결요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은 기부행위의 변경이 되므로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수익사업에 있어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가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두8100 판결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은 그로 인하여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 제14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8항 제2호에 의하면, 법인이 구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되, 수익사업(같은 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는 위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사업에 있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그 미제출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가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재단법인의 출연자가 출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누19146 판결

판결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출자자라 함은 법인과의 거래 당시에 당해 법인에 출자지분을 가지고있는 주주나 사원 등과 같이 법인과의 사이에 법률상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인데, 재단법인의 출연자는 출연에 의하여 재산을 재단법인에 귀속시킨 사실이 있을 뿐 그것만으로 법인과의 사이에 무슨 관계를 유지하는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자인 출자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공익법인이 외형상 무상취득의 형태로 취득한 재산이라도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8864 판결

판결요지

공익법인의 재산취득행위가 외형상 일응 무상취득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취득행위의 실질적인 목적이 당해 공익법인의 설립목적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거의 전적으로 기증자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었다거나, 기증행위에 조건 또는 부담이 붙어있고 그 조건 등의 내용이 기증된 재산의 종류, 가액 등에 비추어 공익법인에 지나치게 과다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Ministry of Justice

실무자를 위한
비영리·공익 법인 관리·감독 업무 편람

Part 8

주요 민원사례

Chapter 1 법인일반 관련 _ 322
Chapter 2 법인의 설립·해산 관련 _ 325
Chapter 3 법인의 관리·운영 관련 _ 329

Chapter 1

법인일반 관련

재단법인의 분할

Q	「민법」상 비영리재단법인의 경우 법인분할이 가능한지 여부
A	「민법」에는 법인의 합병, 분할 등에 관한 규정이 없음. 따라서 현행법상 불가능함

재단법인의 통합(합병) 가능 여부

Q	재단법인 서울대학교장학회와 재단법인 서울대학교학술연구 재단을 통합함에 있어 다음 3가지 방안 중 현행 법체계상 적법한 것은 무엇인가? ① 소멸예정법인을 해산하여 청산절차를 밟은 후 재산을 존속법인에 양도하는 방안 ② 학교법인이나 회사법인의 경우를 준용하여 합병에 의하여 통합하는 방안 ③ 소멸예정법인의 재산을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에 증여한 후 소멸예정법인의 해산절차를 밟는 방안
A	합병에 의한 방법은 법률상 전혀 불가능하고 소멸예정법인의 해산 및 청산 후 존속법인에의 잔여재산 양도방법은 잔여재산의 귀속권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강제할 방법이 없으므로 현행법상 그 목적실현이 보장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없고, 결국 증여 후 해산하는 "③"의 방안만이 적법하다 할 것임

비영리재단법인의 상법상 회사로의 변경

Q 비영리재단법인을 상법상 유한회사 · 주식회사로 전환하거나 상법상 회사와 합병할 수 있는지 여부

A 현재 법인의 합병제도는 「상법」상 회사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은 합병을 하는 것이 불가능함. 또한 비영리법인이 회사로 전환되거나 합병하는 것은 현행 민법상 불가능함.

재장학사업을 위한 법인

Q 장학사업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인을 공익법인이 아닌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설립 가능한지 여부

A 민법의 적용을 받는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할지 아니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으로 설립할지 여부는 법인 설립자의 자유라 할 것이며, 장학사업을 한다고 하여 반드시 공익법인법상의 공익법인으로 설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비영리법인의 주식회사 설립·운영

Q 「민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A 「민법」상 비영리 법인이 당해 사업을 하기 위한 자금을 얻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비영리목적에 어긋나지 않음. 또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그 수익이 구성원에게 분배되지 않는 한 수익사업의 종류에 대한 제한은 없음. 따라서, 본 사안의 법인이 영리법인인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해당 법인이 수익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은 언제나 사업목적의 수행에 충당되어야 하며,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그 수익이 구성원에게 분배되어서는 아니됨

비영리법인 동일명칭

Q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A	상법상 회사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명칭을 비영리법인이 명칭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음. 다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제3자의 오인 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주무관청이 재량으로 판단할 사항임

Chapter 2

법인의 설립·해산 관련

사단법인의 설립발기인

Q	법인이 사단법인의 설립발기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A	사단법인에 있어서 사원은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도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따라서 법인도 사단법인의 설립발기인이나 설립 후 사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할 것임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법인 설립

Q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연한 재단법인이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A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를 열거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동조의 적용이 없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익법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공익법인을 예정하여 둔 것으로 볼 수 있음

잔여재산의 귀속

Q	민법상 사단법인을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설립예정인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법인에게 귀속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A	해산할 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 규정에 따라 다른 비영리법인인 사회 복지법인에게 귀속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조례에 근거한 법인설립

Q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만으로도 법인설립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A	「민법」 제31조에 따르면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성립됨.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는 법률이 아니므로 이에 근거하여 법인이 성립될 수는 없음. 다만 설립된 법인을 운영하는 등의 내용이 조례에 규정될 수는 있음

비영리법인의 공익법인에로의 전환

Q	이미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을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동법이라 함)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절차
A	주무관청은 기존의 재단법인이 공익법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기존의 설립허가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공익법인으로의 전환을 허가할 수 있을 것임 현재 설립되어 있는 재단법인을 공익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단법인의 목적이 동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목적사업에 해당하여야 하고, 동법 제4조와 동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익법인의 설립허가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기본재산이 확보되지 않은 재단법인의 설립허가

Q	사단법인의 해산으로 주무관청에 귀속된 재산을 동일한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법인이 증여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본재산이 확보되지 않은 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A	기본재산이 명확하게 확보되지 않은 재단법인에 대하여 기본재산 확보를 조건으로 설립허가를 할 수 없고, 사단법인 해산으로 주무관청에 귀속되는 재산에 향후 동일 목적으로 갖고 설립되는 재단법인에 증여한다는 필수적 조건을 부가할 수도 없음

경호격술 관련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주무관청

Q	경호격술의 보급 및 경호격술인의 교육 등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는 "대한경호격술연맹"을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하는 경우 설립허가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을 묻는 질의
A	"대한경호격술연맹"의 주된 목적사업을 격술을 통한 경호에 있다고 본다면 주무관청은 경찰청으로 볼 수 있고, 주된 목적사업을 경호격술의 보급 및 교육으로 본다면 주무관청은 문화관광부로 볼 수 있을 것임

주무관청의 변경

Q	주 목적사업의 변경으로 주무관청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A	공익법인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정관을 변경할 수 있는데, 주된 사무를 주관하는 행정관청이 주무관청이 되므로, 결국 정관 변경으로 주된 사무가 변경되는 경우 주무관청도 변경될 수 있음

해외이주민 국내정착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주무 관청

Q 해외 이주민의 국내 정착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의 설립허가를 담당할 주무관청에 관한 질의

A 설립하려고 하는 안산이주민센터는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등의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의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한 보호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그 주된 목적이 사회복지사업이므로 이를 주관하는 보건복지부가 주무관청이 됨. 그런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의의 설립허가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고, 당해 법인의 활동범위가 경기도에 속하므로 이 법인의 설립허가권자는 경기도 지사임

특수관계인의 범위

Q 공익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출연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모든 직원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A 보수를 지급하고 그 대가로 타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것이 고용관계이며(민법 제655조),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에 있으면 족함. 따라서 법인의 ‘직원’들은 출연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어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Chapter 3

법인의 관리·운영 관련

이사 또는 이사장의 자격

Q	법인이 다른 법인의 이사, 이사장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 여부
A	법인의 이사는 법인의 업무집행을 하거나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여야 하고, 대표이사가 되기 위한 전제에 있는 자들이므로 자연인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다수의 견해임.

공익법인의 이사 관련

Q	공익법인의 이사가 5인인 경우 이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1인이 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A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은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5인의 이사로 이사회가 구성되는 경우라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1인만이 이사로 활동할 수 있을 것임.

임원의 수에 대한 질의

Q	공익법 제5조①에 의하면 “공익법인에는 5인이상 15인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두되,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주무관청이 승인할 수 있는 이사와 감사의 수 한계여부
A	공익법 제5조①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승인만 얻는다면 법인의 이사 및 감사의 수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주무관청이 승인시 이사 및 감사의 수를 적당한 범위내로 제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방하다.

임원의 임기개시일

Q	비영리재단법인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를 선임 후 관할관청의 취임승인을 신청한 경우, 관할관청에서는 임원의 임기개시일을 이사회 의결일로 소급하여 승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할청의 승인을 얻은 날인지의 여부
A	임원선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요하는 경우, 그 임기개시일은 승인을 얻은 날부터라고 할 수 있음(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432 판결 참조)

이사 등 기관 이사와 감사의 겸직

Q	감사가 이사를 겸직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정관의 타당성
A	민법에는 감사와 이사의 겸직금지 규정은 없으나, 주무관청은 이사·감사 겸직의 정관을 이유로 설립을 불허하거나 정관시정을 조건으로 설립허가 할 수 있음

재적이사의 기준

Q	법인정관에 기재되어 등기된 이사 수와 현재 이사 수가 다를 경우, 이사회의결 시의 재적이사 수는 어느 것이 기준인지 여부
A	재적이사 수는 정관상의 이사 수를 기준으로 함. 따라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의 흠결이 있을 경우, 해당 결의는 절차상 흠결로서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음

다른 이사를 대리인으로 한 표결권의 행사

Q	비영리 재단법인의 이사가 다른 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A	임의기관인 「민법」상 법인 이사회의 의결에 대해서 법률상 필수기관인 주식회사의 이사회나 공익법인 이사회의 의결과 같이 엄격히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보이며, 따라서 이사회 의사(議事)의 대리의결은 정관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 가능하다고 판단됨

등기되지 아니한 이사의 지위

Q	재단법인의 정관상 이사로 선임된 당연직 이사가 등기부상 등록 되지 않은 경우 이사로서의 권한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A	이사에 관한 등기사항을 누락하거나 변경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권한 및 직무 수행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님. 그러나 이사로 등기되지 아니한 이사는 다른 이사나 감사 등 법인에 관여하는 법인 내부 기관이 아닌 법인 외부의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이 이사로서 행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주장하여 대항할 수 없음

사단법인을 탈퇴한 등기이사의 지위

Q 비영리사단법인의 등기이사로 있던 중, 해당 법인을 탈퇴할 경우 등기이사직도 당연 소멸되는지의 여부

A 사단법인의 이사는 「민법」상 특별한 자격제한이 없으므로, 사원이 아니어도 이사직은 담임할 수 있음. 만약 해당 법인의 정관에서 사원만이 이사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사원의 탈퇴로서 이사직위도 같이 해소될 것이지만, 그런 규정이 없다면 사원탈퇴와 이사직의 해소 문제는 별개로 처리하여야 할 것임

의결정족수에 관한 질의

Q ○○법인은 이사의 정수는 10인, 재적이사는 5인으로 정관상 의결정족수가 이사정수의 과반수로 규정되어 있어 의결이 불가능할 때 처리방법은?

A 이사회에서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 이사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나, 동 법인은 이사의 정원이 부족하여 결의가 불가능함.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한 후, 다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안건을 의결하여야 할 것임

사단법인의 사원 결의권

Q 민법 제73조의 사원의 결의권과 관련하여 ① 각 사원은 개인인지 법인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1개의 결의권을 가지는지 여부, ② 법인의 정관에서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A 민법 제73조 제1항에 의하면 각 사원은 원칙적으로 평등한 결의권을 가짐. 그러나 이 사원결의권 평등 원칙은 정관으로 변경할 수 있음(동조 제3항)

공익법인 이사의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

Q	공익법인의 이사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
A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고 규정함. 따라서 이사 본인이 직접 서면결의를 하는 것도 금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사 대리인의 선임을 통하여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결의하는 것은 더욱 허용되기 어려울 것이므로 대리인을 선임하여 표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총회 의사정족수의 완화

Q	비영리사단법인의 정관변경으로 총회 의사정족수를 완화하는 것이 위법 또는 무효인지, 주무관청 직권으로 정관변경이 가능 한지 여부
A	총회 의사정족수를 완화하는 정관변경이 위법 또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 주무관청이 직권으로 정관을 변경할 사항은 아님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과 수익사업 승인에 관한 질의

Q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으로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기본재산 처분허가'와 '수익사업 승인'을 각각 받아야 하는지 여부
A	공익법 제11조는 기본재산을 임대 등 처분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조③은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임대하려면 기본재산 처분의 허가와 수익사업 승인을 각각 받아야 할 것임

기본재산에 대한 담보설정

Q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담보설정을 할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
A	재단법인 기본재산으로 저당권설정을 하는 경우, 저당권의 설정 역시 처분행위로서 기본재산의 증감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역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한 기본재산의 사용·처분

Q	비영리재단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임의로 기본재산을 사용 · 처분하였을 경우 주무관청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
A	비영리재단법인의 재산처분사실은 정관 변경 사항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주무관청에 대하여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보아 주무관청은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민법 제97조 제4호)

주무관청의 예규를 위반한 법인의 처리

Q	법인이 「행정자치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 및감독에 관한규칙」 제7조의 수지예산서,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재산 목록 등을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처리문제
A	매 사업연도 종료 후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해당 법인의 임원자체가 공중분해 되어 모일 수 없는 경우라면, 이는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설립허가의 취소가 가능함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처분 관련(1)

Q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여 기본재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기본재산을 감축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A	보통재산으로 조세를 부담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공익법인법상 기본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사용변경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일정금액을 장기차입하여야 하는 방법만이 규정되어 있음(공익법인법 제11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내지 제18조). 이 경우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야 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처분 관련(2)

Q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공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장기차입할 수 있는지 여부
A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기본재산이 아닌 보통재산으로 충당하여야 함. 법인이 장기차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5/10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처분 관련(3)

Q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인 정기예금(3억원)으로 유가증권(채권, 주식)을 구입하여 운용하거나 금융펀드에 가입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

A	공익법인법 제11조제2항은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가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평가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은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기본재산인 정기예금을 주식, 채권, 펀드로 변경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임

의사록의 공증

Q	비영리법인의 주사무소 이전 변경등기시, 의사록의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A	법인이 관련 등기를 할 때, 의사록의 공증은 모든 법인에 필요한 것이 아니며, 비영리법인 등은 제외됨(「공증인법」 제66조의 2 제1항 참조). 따라서 귀 법인이 「민법」 제32조에 근거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라면 의사록의 공증이 요구되지는 않음

분사무소의 설치

Q	서울특별시에서 설립허가 받은 사회복지법인이 경상남도 분사무소 설치에 관한 정관변경 인가 승인을 받지 않고 경상남도 에서 장애인직업재활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A	사회복지법인 정관 제3조 제2항에서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분사무소 위치 등에 대한 정관 규정이 없으므로 경상남도 분사무소 설치 및 활동이 정관 위반도 아니고, 이 때 정관의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법률이나 정관에 정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본건 사회복지법인은 경상남도 관내 사업인 본건 장애인재활직업사업을 수행할 권리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됨

조례를 근거로 한 감독권의 행사

Q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학사업을 하는 공익재단법인에 대해, 조례에 따라 해당 법인에 출연한 지방자치단체가 주무관청으로부터 감독권 등의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를 근거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A	다른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공익법인에 대한 감독권을 위임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만으로는 감독권을 행사할 수는 없음

Ministry of Justice

실무자를 위한
비영리·공익 법인 관리·감독 업무 편람

Part 9

주요 기관 질의 사례

- 주무관청의 결정 관련 회신
- 운용소득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관련
- 공익법인 해당 여부 관련
- 성실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관련
- 공익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및 주무 관청 관련
- 법인 주무관청 변경 관련
- 공익법인 정관상 목적사업 관련
- 지방문화원 임원 임기관련
- 공익법인 사업의 범위 등 관련
- 다른 주무관청 소관 사업 수행 관련
- 설립허가 지역 외 사업수행 및 법인 설립 허가 취소 관련
- 공익법인의 주무관청 결정 근거 관련
- 감사와 이사의 겸직가능성에 대한 회신
-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관련 질의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법인 설립주체성
- 비법인사단의 법인설립 관련 질의 회신
- 공익법인(장학재단) 정관의 목적 변경과 수익사업 허가 관련 질의 회신
-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경우 공익법인 설립이 강제되는지 여부
- 비영리법인 대표자 자격 제한 관련
- A부 소관 사업수행 법인을 B부에서 설립허가 할 수 있는지 관련
- 잔여재산 관련 정관변경 허가 관련
- 비영리법인 활동범위 관련
- 이사 임면 사항의 조례 규정 여부 관련
- 공익재단 해산시 잔여재산 귀속 및 관리 관련
- 법인 임원의 연임제한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 공익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 비영리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등에 관한 질의 회신
-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질의 회신
- 비영리재단법인의 정관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 총회 결의의 의사정족수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 정관변경 허가신청시 일부 규정에 대한 허가 관련 검토
- 「민법」 제97조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 공익법인의 임원 정수 증감 관련 질의 검토
- 민법 제75조 총회 결의 방법 관련 질의 검토

2012. 3.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주무관청의 결정 관련 회신

검토 배경

- '12. 3. OOOO 위원회(이하 '본건 위원회'라고 함)가 OOO에 관한특별법(이하 '본건 특별법'이라 함)제37조에 근거해 설립될 재단법인의 주무관청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검토 의견

- 「민법」, 본건 특별법은 주무관청의 정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주무관청은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주관하는 행정관청'으로 해석됨[1)]

- 이 때 행정관청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기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1) 「민법주해」 p555, 박영사(2008)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의미한다고 할 것임[2), 3)]

- 따라서, 본건 특별법에 근거해 설립되는 재단법인과 관련된 행정업무를 관장하면서, 해당 법인에 대한 감독·과태료 부과 등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행정기관을 법인 설립 허가의 주무관청으로 봄이 상당함

- 이에 본건 특별법, 특별법 시행령 등을 근거로 판단하면, 본건 위원회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4)]인 추도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5)] 등을 심의·의결 하고 있어 주된 행정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나,

- 본건 위원회의 업무규정인 특별법 제8조와, 특히 본건 위원회가 원칙적으로 2012. 12. 31.까지 존속하는 한시적 위원회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건 위원회는 해당 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하기에 적당한 행정관청으로 보기 어려움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특별법의 소관부서이며 본건 위원회의 존속기간 이후 위원회의 소관사무를 승계[6)]할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재단법인 설립허가의 주무관청을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2) 「행정절차법」 제2조 제1호

3)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0348, 행정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 행정청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여 이를 자기의 이름을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하고,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를 외부에 표시할 권한을 가지지 못하는 의결기관은 행정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 행정청이라고 할 수 없음

4) 본건 특별법 제37조 제1호

5) 본건 특별법 제8조 제4호

6) 본건 특별법 제19조 제4항

2012. 5.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운용소득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관련

검토 배경

● '12. 2. OOO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함)에서 공익법인 지도·감독 관련 법령해석 질의

질의 개요

● 교육청은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의 7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30% 이내에서 인건비 등 집행하도록 지도·감독하면서, 불이행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함) 위반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세무서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있음

※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5호,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은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의 7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세무서는 인건비 지출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해석하여, 인건비 등 지출의 합계액이 운용소득의 70% 이상인 경우에는 가산금을 미부과하고 있음

● 이에 교육청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 교육청이 공익법인에게 운용소득의 7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 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있는 것이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포함할 수 있는 인건비의 범위

견해의 대립

- 甲 설(민원인 및 세무서) : 상근임직원의 인건비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되는 금액임
- 乙 설(서울시교육청) : 장학금과 극히 제한적인 인건비만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는 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검토 의견 : 甲설이 타당함

가. 甲설이 현행법령의 문리해석에 부합함

- 상증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11항 해석상 8,000만원 이내의 인건비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는 금액 으로 봄이 상당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②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11항

⑥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나. 甲설이 현행법령의 입법연혁에 부합함

● 상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과정을 확인해 보면, 乙설과 같은 취지의 인건비 제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삭제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인건비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함이 상당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00. 12. 29. 개정 전)

②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인건비 및 관리비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00. 12. 29. 개정)

②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관리비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현행 법령)

②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8,000만원 초과 금액)

2.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6 ('01. 4. 3. 개정 전)

제10조의5 (직접 고유목적사업에의 사용등) ① 영 제3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하는 인건비 및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당해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의사·교사·사서·보모 및 전문연구원(이하 이 조에서 "의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인건비 전액

2. 다음 각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의사 등을 제외한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나. 의사 등을 제외한 사용인중 근무기간이 가장 오래된 자 3인에 대한 인건비

3. 당해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의 수선비·전기료·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6 ('01. 4. 3. 개정)

제10조의6 (직접 고유목적사업에의 사용 등) ① 영 제38조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관리비"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의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전기료·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를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6 (현행 법령)

제10조의6(직접 고유목적사업에의 사용 등) ① 삭제 〈2012.2.28〉

※시행규칙의 내용이 시행령으로 이전됨

다. 乙설과 같이 해석할 특별한 이유 없음

- 교육청은 甲설에 의할 경우, 장학금 수행률을 제고할 여지가 없으므로 乙설과 같이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함

- 그러나 교육청은 공익법인의 주무관청으로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설립허가권(제4조 제1항), 수익사업 승인권(제4조 제3항), 임직원 수 승인권(제5조 제9항), 업무 감독권(제14조 제1항), 이사 취임승인 취소권(제14조 제2항), 사업 시정·정지권(제14조 제3항), 설립허가 취소권(제16조), 감사권(제17조) 등 권한이 인정되므로, 이를 통하여 적정 장학금 지급의 일반적인 지도·감독이 가능함

※ 국세청도 '00년부터 일관하여 공익법인이 제출한 인건비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질의에 대한 답변

가. 교육청의 현 지도·감독이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 교육청은 소관 공익법인의 주무관청이므로, 공익법인에게 장학금 수행률을 높이도록 단순 권고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 그러나 상증세법 규정은 장학금 수행률 70%의 근거조항이 아니므로, 운용수익 70% 미만 장학금 지급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위 각 처분이 위법하게 판단될 여지가 있음

나.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될 수 있는 인건비의 범위

- 상증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11항, 상증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입법연혁, 기존 국세청 질의 회신례 등에 비추어 인건비로 지출된 금액은, 연간 소득 합계 8,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액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2012. 9.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공익법인 해당 여부 관련

검토 배경

- '12. 4. OOO에서 '사단법인 OO연구소'(이하 'OO연구소')가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 적용되는 법인인지 질의

질의 개요

- '71년 OOOOO에서 OO연구소 창설[7]

7) 설립당시 'OOOOOO' 등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공보부 소관 법인으로 창설

- '75년 공익법인법, '76년 동법 시행령이 제정될 당시 부칙에서 법 시행 당시 공익법인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으나, 주무관청의 공익법인 해당사실 통지 및 북한연구소의 정관변경 절차 미이행

- '12. 4. OO연구소 운영[8]과 관련, OO연구소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사장과, 공익법인에 해당한다는 감사의 의견 대립[9]이 발생하여 통일부에 의견조회

- '12. 4. OOO는 OO연구소가 '공익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정관 변경을 통보하는 한편, 법무부에 본건 의견조회

견해의 대립

- 甲 설 : 제정법 부칙 제2항 취지상 법인 목적과 사업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정과 동시에 공익법인에 해당함

- 乙 설 : 제정령 부칙 제2항에 따른 통지, 제정법 부칙 제3항에 따른 경과조치가 없던 경우에는 민법상 사단법인에 해당함

8) '11년 현재 임대료 OOOO만원 등 연간 OOOO만원 상당 수익 존재

9) 공익법인으로 판단되면, ① 사업범위가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범위 내로 제한되고, ② '이사회' 설치가 의무화되며(제6조), ③ 임원 관련 요건이 강화되고(제5조), ④ 상근 임직원 수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야 하며(제5조 제9항), ⑤ 수익사업을 하려면 주무관청의 승인이 필요하고(제4조 제3항), ⑥ 기본재산 처분에 주무관청의 허가 필요하며(제11조 제2항), ⑦ 잔여재산 귀속이 제한되고(제13조), ⑧ 주무관청의 관리감독권이 구체화되며(제14조 제2항, 제3항), ⑨ 비영리법인의 경우 과태료 제재만이 있으나, 공익법인은 징역·벌금 등의 형사처벌 제재도 규정하고 있는(제19조) 등 차이가 존재함

관련 규정 : 제정법령 부칙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부칙 〈법률 제2814호, 1975.12.31〉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후 3월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현존공익법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공익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③ (동전) 부칙 제2항의 공익법인은 6월내에 이 법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와 정관의 변경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동전)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하는 때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8059호, 1976.4.1〉

① (시행일) 이 영은 197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영의 적용대상이 될 공익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통지) 주무관청은 이 영 시행후 3월 이내에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그 소관 법인중 법 및 이 영의 적용대상이 될 공익법인을 확인하고 그 뜻을 당해 공익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공익법인은 이 영 시행후 3월 이내에 주무관청 으로부터 그 감사중 1인을 추천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는 한 이 영 시행후 6월 이내에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중 1인을 추천의뢰 하여야 한다.

④ (수익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공익법인중 수익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법인은 이 영 시행후 6월 이내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수익사업의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상근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공익법인중 상근직원을 두고 있는 법인은 이 영 시행후 6월 이내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상근직원의 정수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공익법인은 이 영 시행후 6월 이내에 이 영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와 정관의 변경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공익법인법 시행 이전 법인에 대한 공익법인법 적용 가능성 : 적용 가능(甲설 타당)

- 문리해석상 공익법인법 부칙 제2항에서 현존 공익법인에 대해 공익법인법에 의한 설립을 간주하고 있으므로, 공익법인법 시행령 부칙 제2항 소정의 통지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을 공익법인으로 인정하는 형성적 효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미 공익법인으로 간주된 법인에 대하여 새로이 시행되는 공익법인법 규율에 알맞게 정관 등을 정비하라는 행정적 절차 안내를 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함[10]

- 법원도 공익법인법의 적용 대상인 공익법인의 의미와 관련하여 법인의 사업내용을 기준으로 판단[11]하고, 설립허가 근거법만을 기준으로 공익법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지는 아니함

- 특히 최근의 유사사례[12]에서 법원은 75년, 76년 주무관청에서 공익법인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 공익법인 여부를 판단하지는 아니하고 법인의 주된 목적사업에 따라 공익법인 해당 여부를 판단하였음

10) 2011. 1. 법무심의관실은 공익법인법 시행 전 민법에 의해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에 대하여 공익법인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유권해석한바 있음.

11) 대법원 2010다43580호, 77도4002호 등.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 법률이 규제대상으로 하는 동법 제2조 소정의 공익법인은 민법 제32조 소정의 비영리법인 중 순수한 학술, 자선 등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 소정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거나 주로 위와 같은 학술, 자선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와함께 부수적으로 그 이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법인만을 말하는 것"이라고 판시.

12) 고용노동부가 1964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대한산업보건협회를 공익법인으로보아 공익법인으로 통지하고, 대한산업보건협회가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

- 따라서 OO연구소의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이 공익법인법 상 공익법인에 해당한다면, 법령 제정 당시의 경과조치 이행과 무관하게 공익법인법이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OO연구소의 공익법인 해당여부 :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 필요

- OO연구소의 정관상 목적은 'OOOOO운동을 국내외서 전개하여 OOOO의 기반구축에 기여함'임

- 공익법인법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제2조)을 공익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음

- 법원은 주된 목적이 공익사업이 아닌 법인의 공익법인 인정에 소극적이고,[13),14)] 시행령 부칙 제2항에 의한 공익법인 통지를 하지 않은 점을 공익법인으로 보기 어려운 사유로 적시[15)]한 바도 있는바, OO연구소의 정관상 목적, 사업내용, 최근까지 공익법인으로 관리·감독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OO연구소를

13) 의료기관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목적 등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개발 등을 하는 비영리 법인을 공익법인이 아니라고 판시(대법원 2010다43580호)하고, 종교 전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수반하여 자선 및 사회교육사업을 하는 경우도 공익법인이 아니라고 판시(대법원 77도4002호)함.

14) 특히 유사사례로 최근 뉴스보도 된 대한산업보건협회 사건에서 "현행법이 규제대상으로 하는 공익법인은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중 순수한 학술, 자선 등을 목적으로 하거나 학술, 자선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이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법인만을 말한다"라고 판시하면서 원심(서울행정법원), 항소심(서울고등법원) 모두 대한산업보건협회의 공익법인성을 부정한바 있음.

15) 대법원 77도4002호 판결.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으로 보기에 어려운 점도 존재함[16]

- 따라서 구체적인 법인의 사실관계를 조사하여[17] 법인의 실제 사업 내용[18]이 '장학', '학술', '자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입증될 수 있는 경우 공익법인으로 볼 수 있을 것임[19]

16) 학보 발행, 학술회의 개최, 강연회 개최 등 학술 사업을 하고 있으나, 주 목적인 통일문화진흥운동이 공익법인법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애매함

17) 공익법인법 제4조(설립허가)는 설립허가 신청시 주무관청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설립허가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실질 사업내용 등의 확인이 필요함

18) 교육청도 같은 취지에서 정관 규정만에 의하지 않고, 사업계획서, 사업수지예산서 등에서 사업비 총액의 70% 이상 집행하는 사업을 주된사업으로 파악하고 있음[공익법인 실무편람. 2010년판]

19) 반대로 통일관련 운동이 주사업이고, 이에 부수적인 학술, 장학사업을 하는 것이라면 공익법인법상 규제를 받는 공익법인으로 보기 어려움

2012. 7.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성실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관련

검토 배경

- '12. 5. OOO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함)에서 성실공익법인[20]의 기본재산 처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질의 내용

- 성실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한 후 신고하였을 때, 주무관청이 처분기준 미이행을 이유로 신고한 처분을 취소 요구 가능한지[21]

- 성실공익법인이 반복적으로 재산을 처분할 경우, 신고로 갈음해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은 반복처분 총액으로 기본재산의 100분의 20인지, 아니면 매 처분시 처분 전 기본재산의 100분의 20인지

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외부감사,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 결산서류의 공시 이행 등을 하는 공익법인

21) 교육청 질의가 '사법상 거래행위'와 '신고' 중 어떤 행위를 취소하고자 하는 것인지 불분명하여, 질의 담당자와 통화 후 '신고'처분의 취소여부를 묻는 것임을 확인하고 회신 작성하였음. 참고로 사법상 거래행위는 수리거부시 그 효력의 유효·무효여부가 다투어지게 됨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함)

제11조 ③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장기차입 (長期借入)하려면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기본재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매도·교환 또는 용도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무 관청에 대한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검토 의견

가. 신고처분의 취소 관련 : 신고취소가 아닌 수리거부 처분 사항임

- 교육청은 주무관청 처분기준 미이행을 이유로 신고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문의하고 있으나, 처분기준을 미이행 하였다면 수리거부 처분[22), 23)]함이 상당하고 당사자의 신고는 취소의 대상은 아님[24), 25)]

22)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4항은 "신고서를 제출받은 주무관청은 지체 없이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익법인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성실공익법인은 보정을 요구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이를 보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보정요청 및 수리거부가 가능한 취지로 규정하고 있음

23) 납골당 설치신고는 행정청의 수리에 의해 비로서 효과가 발생하고, 납골당 설치신고는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수리거부가 가능하다(대법원 2008두22631호).

24)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대법원 94누6062호 등).

2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은 강행규정으로 이에 위반한 주무관청의 허가 없는 처분은 무효"라는 것이 판례 입장(대법원 97다9970호)임

※다만, 본건 교육청의 수리거부가 정당한지 여부는 입법목적과 교육청 내부기준과의 관련성 등에 따라 별도 판단될 사항임[26]

나. 신고로 갈음해 처분할 수 있는 재산 : 정관변경 전에는 '기존' 정관 기본재산의 20% 범위에서만 신고로 갈음하여 처분 가능

- 정관상 기본재산의 20% 범위에서는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신고로 갈음하여 재산 처분이 가능함

- 위 한도 이상을 신고로 갈음하여 처분하기 위해서는 재산처분 반영된 정관변경을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변경된 정관상 재산의 20% 한도에서 다시 신고로 갈음한 처분이 가능함[27]

26) 반복처분으로 기본재산이 유지되지 못할 우려는 법개정 과정에서 이미 제기된 문제로, 개정위 소위도 "기본재산 처분 등을 신고제로 완화하는 경우라도 기본재산의 변동은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고 정관변경에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사후적 감독이 가능함"이라고 판단한바 있음

27) 반복처분으로 기본재산이 유지되지 못할 우려는 법개정 과정에서 이미 제기된 문제로, 개정위 소위도 "기본재산 처분 등을 신고제로 완화하는 경우라도 기본재산의 변동은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고 정관변경에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사후적 감독이 가능함"이라고 판단한바 있음

2012. 7.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공익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 운영 및 주무 관청 관련

검토 배경

- '12. 6. OOO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함)에서 공익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 운영 가능성 및 주무관청에 대하여 질의

질의 내용

- 공익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 ·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 공익법인이 소변검사를 위한 의료기관 개설 · 운영 사업을 추가할 경우 주무관청의 판단기준

관련 규정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함)

제4조(설립허가 기준)

③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2조(정의)

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각호생략)

② 제1항의 법인에는 제1항 각호의 사업과 그 이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제4조(설립허가신청)

② 공익법인의 사업이 2이상의 주무관청의 소관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설립허가)

② 제4조제2항의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다른 주무 관청과 협의하여 그 설립허가를 하여야 한다.

검토 의견

가. 공익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가능성 : 가능

- 공익법인에는 공익법인법에 따른 협의의 공익법인[28]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함)에 따른 광의의 공익법인[29]이 존재

- 상증법 시행령 제12조 제4호[30]는 의료법인을 광의의 공익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광의의 공익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음은 당연함

- 또한 ①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민법 기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데위 특별법에 공익법인법을 제외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② 공익법인법 제4조 제3항, 동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공익법인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점 등에서 협의의 공익법인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이 가능함

  ※ 참고로 교육청은 사단법인 OOOO보건협회(이하 'OO보건협희'라고 함)를 협의의 공익법인으로 판단하고,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였으나, OO보건협회는 공익법인법에 의거 설립된 법인이 아니므로[31] '협의의

28) 공익법인법 제2조 :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

29) 상증법 제16조 :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

30)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4호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31) 설립신청 및 허가가 '공익법인법'이 아닌 '민법'에 의해 이루어진 법인임

공익법인'이라고 보기도 어려움.[32]

나. 공익법인이 소변검사를 위한 의료기관 개설 · 운영 사업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 주무관청 : 협의의 주무관청은 사실관계 조사 및 주무관청 상호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

- 통상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관리 · 감독의 주체가 되는 행정관청을 주무관청(협의)으로 칭하고 있으나,[33] 법인의 목적 사업을 주관하는 관청은 모두 해당 법인의 주무관청(광의)임[34]

- 따라서 교육 관련 법인이 보건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교육청 및 보건복지부 모두가 광의의 주무관청에 해당되나,

- '협의의 주무관청'에 관하여 검토해 보면,

- 공익법인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정관을 변경[35]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주된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이 협의의 주무관청임

32) 광의의 공익법인으로 현재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http://npoinfo.hometax.go.kr)에서 사업유형 '의료'인 공익법인으로 관리되고 있음

33) 교육청도 본건에서 '협의의 주무관청'이 어디인지를 질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34)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 공익법인의 사업이 2이상의 주무관청의 소관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35) 공익법인법 제1조, 공익법인법시행령 제28조, 민법 제45조 제3항, 제42조 제2항

- 그런데 본건 질의 대상인 학교보건협회의 주된 사업이 무엇인지는 정관[36] 만으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움

- 결국 관계 사실을 조사하고,[37] 법인의 실제 사업 내용[38]의 중심이 교육과 보건 중 어느쪽인지, 어느 행정관청이 법인 업무를 좀 더 원활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광의의 주무기관 사이 상의 후 협의의 주무관청을 정하여야 함

36) '보건에 관한 홍보 및 교육', '학교보건 봉사, 보건사업'은 교육과 보건 양 측면을 모두 지니고 있음

37) 공익법인법 제4조(설립허가)도 설립허가 신청시 주무관청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설립허가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38) 교육청도 같은 취지에서 정관 규정만에 의하지 않고, 사업계획서, 사업수지예산서 등에서 사업비 총액의 70% 이상 집행하는 사업을 주된사업으로 파악하고 있음[공익법인 실무편람. 2010년판]

2012. 8.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법인 주무관청 변경 관련

검토 배경

- '12. 7. OOOO부에서 'XXXX기념재단'이 정관상 주 사업을 '장학'에서 '청소년 국제교류'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 질의

질의 내용

- 주 목적사업의 변경으로 주무관청을 변경[39]하는 것이 가능한지
- 'XXXX기념재단'의 공익법인의 지위 유지가 가능한지

주요 관련 규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39) 본 사안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에서 외교통상부로의 주무관청이 변경이 문제되고 있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1. 학자금·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법인에는 제1항 각호의 사업과 그 이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제4조(설립허가신청) ② 공익법인의 사업이 2이상의 주무관청의 소관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설립허가) ② 제4조제2항의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다른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그 설립허가를 하여야 한다.

검토 의견

가. 주 목적사업 변경으로 인한 주무관청 변경 : 가능

- 공익법인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정관을 변경[40]할 수 있는데, 주된 사무를 주관하는 행정관청이 주무관청이 되므로,[41] 결국 정관 변경으로 주된 사무가 변경되는 경우 주무관청도 변경될 수 있음

※ 실무상으로 위와 같은 법인 주무관청 변경이 상당수 이루어지고 있음

40) 공익법인법 제1조, 공익법인법시행령 제28조, 민법 제45조 제3항, 제42조 제2항

41)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 따라서 'XXXX기념재단'의 현 주무관청인 OOO 교육청이 본건 정관 변경을 허가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변경이 가능함

※ 다만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취지상 본 사안의 경우 OOO 교육청은 OOOOqn와 협의하여 정관 변경을 허가해야 함

나. XXXX기념재단의 공익법인성 유지 여부 : 주무관청 검토 필요

- 'XXXX기념재단'이 정관 개정안에 기재한 '청소년 교류협력사업', '교육지원사업', '문화교류지원사업'의 실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함[42]

- 따라서 주무관청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43] 재단의 실제 사업 내용[44]이 '장학', '학술', '자선'에 관련된 것인지 및 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공익법인 여부를 검토해야 함

42) 교류협력, 교육지원, 문화교류지원이 '장학'이 아니라고는 단언하기 어렵고, 가사 일부 장학 등과 무관한 부분이 있더라도 주된 사업이 '장학', '학술' 관련이라면 그 외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 공익법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어, 결국 법인의 실 사업 파악이 필요함

43) 공익법인법 제4조(설립허가)도 설립허가 신청시 주무관청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설립허가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44) 교육청도 같은 취지에서 정관 규정만에 의하지 않고, 사업계획서, 사업수지예산서 등에서 사업비 총액의 70% 이상 집행하는 사업을 주된사업으로 파악하고 있음[공익법인 실무편람. 2010년판]

2012. 12.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공익법인 정관상 목적사업 관련

검토 배경

- '12. 10. OOO교육청에서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하여 질의

질의 내용

- △△ 대학교 역사기념관 설립을 위하여 ☆☆ 공익법인에서 기부금을 접수 받아 △△ 대학교로 지원하는 사업이 해당법인에 목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규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 (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1조(재산) ③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면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서 생략).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① 법 제2조에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1. 학자금·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연구비·연구조성비·장려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문·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3.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이들 사업을 지원하는 도서관·박물관·과학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4. 불행·재해 기타 사정으로 자활할 수 없는 자를 돕기 위한 모든 자선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행하는 사업

검토 개요

가. 공익법인[45]의 역사기념관 설립 지원 가능여부 : 가능

- 공익법인법 시행령은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공익법인의 목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46]

45) 다만, 공익법인에는 공익법인법에 따른 협의의 공익법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광의의 공익법인이 존재하고, 통상 단순 민법상 비영리법인임에도 공익성을 표명하는 경우 이를 공익법인으로 칭하는 경우도 있으나, ☆☆ 공익법인이 공익법인법의 전적인 적용을 받는 협의의 공익법인이라는 전제하여 검토함

46)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 ‘학자금’, ‘장학금’, ‘장학’ 등의 용어는 공익법인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 법정 용어가 아니므로 일반적인 어의(語義)에 따라 해석할 수밖에 없고, 법문상으로도 ‘명칭에 관계없이’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 등을 지급·지원하면 족하며, 시행령도 ‘시설 지원’을 목적사업의 일종으로 열거하고 있고, 역사기념관 설립 지원이 학습을 장려하는 ‘장학’과 무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공익법인의 역사기념관 설립기금 지원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됨

나. 주무관청에 의한 본건 사업의 공익성 등 구체적 검토 필요

- 다만,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은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하고,[47] 공익법인은 원칙적으로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는[48] 등의 제한이 존재함

- 본건과 같이 공익법인이 기부금을 접수받아 특정 대학교의 역사기념관 설립을 지원하는 경우, 기부받은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간주되므로,[49] 기부금을 접수하고 이를 대학교에 지원하는 등 기본재산을 변경할 때 정관을 변경해야 하고,[50] 주무관청의 허가 또한 받아야 하는바,[51), 52)] 결국 절차상 필수적으로 주무관청의 검토를 요함

47)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48)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 특히 동 시행령 같은조 제2항에 의해 위 조건은 설립시 반드시 붙여야 하는 조건임

49)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

50) 공익법인법 제11조 제2항

51) 공익법인법 제11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52) 나아가 주무관청은 목적사업 외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공익법인법 제14조 제2항 제3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동법 제16조 제1항 제4호)

- 결국 역사기념관 설립 지원이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에 해당 될 수는 있으나, 위 지원이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 · 증진하는 것인지 등의 부분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주무관청이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 공익법인의 설립지원 가능여부를 개별 기념관의 공익성 등 구체적 사실관계 확정 없이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

2012. 12.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지방문화원 임원 임기관련

검토 배경

- '12. 11. OOOOOOO에서 지방문화원의 임원 임기 관련 문의

질의 내용

- OOO문화원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 인지 여부
- 임원의 임기기산일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

관련 규정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지방문화원의 설립)

① 지방문화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지방문화원은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행정구역을 그 사업구역으로 한다.

④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하려면 미리 그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지방문화원은 그 명칭 중에 "문화원" 또는 "문화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인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명칭이나 다른 지방문화원과 구별할 수 있는 지명(地名)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구역의 특색을 고려하여 역사인물, 전통문화 등을 명칭에 부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⑥ 지방문화원은 시·군 또는 자치구별로 1개의 원(院)을 둔다.

⑦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임원)

① 지방문화원에는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이사(理事)와 2명의 감사(監事)를 둔다.

② 원장은 지방문화원을 대표하고 지방문화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지방문화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4조(「민법」의 준용)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검토 개요

가. OOO문화원은 '공익법인법'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아님

- 해당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은 아님

※ 통상 '공익법인'이라 칭해지는 법인은 공익법인법에 따른 협의의 공익법인[53]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광의의 공익법인[54]이 존재 하는데, 서초문화원은 본건에서 문의하고 있는 공익법인법이 적용되는 협의의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나. 임원의 임기 기산일은 창립총회 선출일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

- 임원선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요하는 경우, 그 임기개시일은 승인을 얻은 날부터라고 할 것임[55]

53) 공익법인법 제2조 :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

54) 상증법 제16조 :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

55)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432 판결 ; 원심이, 피고보조참가인(아래에서는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의 정관에 의하면 참가인의 이사회에서 새로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4년인데, 박성학은 1992. 4. 9. 이사회에서 임기 만료된 신금봉의 후임 이사로 선임되어 1992. 5. 16. 교육부장관의 취임승인을 받고 이사에 취임하였으므로, 그의 임기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로 취임한 1992. 5. 16.부터 1996. 5. 15.까지 4년이고, 참가인이 그 취임승인신청을 하면서 박성학이 이사회의 선임결의도 없이 취임하였다가 사임한 윤철순의 후임 이사로 선임되어 그 임기가 윤철순의 잔여임기인 것처럼 사실과 달리 기재하고 그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취임승인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박성학의 임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 그러나 「지방문화원진흥법」 제7조에서는 임원의 취임에 대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요하지 않고, 제14조에서는 「민법」의 사단법인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데 「민법」에서도 임원취임에 별도의 규정이 없어, 서초문화원의 경우 주무관청 승인일, 설립인가일을 기준으로 임원 임기를 정하기는 어려움

- 이에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를 때,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사는 법인의 이사 선임결의에 따라 피선임자가 법인과 위임에 유사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취임하며, 이 경우 그 임기개시일은 취임을 승낙한 다음날 부터 기산이 됨[56), 57)]

- 다만 본건의 경우 이사 취임 이후에 법인이 설립등기된 사안으로 창립총회 선출일과 법인성립일 중 어느 시점을 임원 임기 개시일로 보아야 할지가 명확하지는 아니함

- 그러나 ① 법인과 임원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관계인데 위 위임관계는 창립총회 선출로 개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민법상 비법인 사단에도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이 원칙적으로 준용되는바[58)]임기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볼 이유가 없는 점, ③ 민법 법인 규정상 설립등기[59)] 외의

56) 「주석 민법 (총칙1)」, 편집대표 박준서, 2002, 691쪽

57)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1다7599호 판결 등 :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관계와 같음

58)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56866호 등

59) 민법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①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는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제3자 대항요건[60]이므로 이사의 '임기'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 하였어도 대내적으로는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면 본건에서 서초문화원 임원의 임기는 창립총회 선출일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됨[61), 62)]

2013. 1.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공익법인 사업의 범위 등 관련

검토 배경

- '12. 12. OOOO시에서 공익법인의 사업 범위 등에 관하여 질의

60) 민법 제54조 (설립등기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① 설립등기이외의 본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61)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의견. 참고로 상법상 회사와 관련한 임기 관련 논의는 상법상 회사와 민법상 법인의 여러 가지 차이점(준칙주의·허가주의, 설립중 단계의 성격)을 고려할 때 이를 그대로 본건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62) 다만 이는 민법의 일반해석에 따른 원칙적 결론이고, 각주 제3호 판결과 같이 임원의 임기에 대하여 다르게 판단할 요소(창립총회시 별도의 협의, 정관의 특별 규정)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 산정 방법이 달라질 여지는 있음

질의 내용

- 장학사업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인을 공익법인이 아닌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이 가능한지 여부
- 공익법인이 기존의 장학사업과 함께 교육사업의 일환인 '평생교육사업'을 할 수 있는지

관련 규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 (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제1항의 법인에는 제1항 각호의 사업과 그 이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평생교육법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⑤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검토 개요

가. 장학사업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인을 공익법인이 아닌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설립 가능한지 여부 : 가능

- 통상 '공익법인'이라 칭해지는 법인은 공익법인법에 따른 협의의 공익법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광의의 공익법인[63]이 있는데, 협의의 공익법인에는 상증법 등에 따른 혜택[64]이 부여되는 반면 법에 따른 엄격한 규제[65]가 이루어짐

- 민법의 적용을 받는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할지 아니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으로 설립할지 여부는 법인 설립자의 자유라 할 것이며, 장학사업을 한다고 하여 반드시 공익법인 법상의 공익법인으로 설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우리 민법 및 공익법인법은 법인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민법 제32조, 공익법인법 제4조)를 취하고 있으나, 이는 일정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법인 설립을 허가해 준다는 의미이지, 법인을 설립할 것인지 및 어떤 법인을 설립할 것인지는 설립자의 자유이고 이를 강제할 수는 없음.

63) 상증법 제16조 :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

64) 출연자에 대한 상속세면제(상증법 제16조 제1항),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면제(상증법 제48조 제2항), 고유목적준비금의 손금삽입(법인세법 제29조),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등

65) ① 사업범위가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범위 내로 제한되고, ② '이사회' 설치가 의무화되며(제6조), ③ 임원 관련 요건이 강화되고(제5조), ④ 상근 임직원 수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야 하며(제5조 제9항), ⑤ 수익사업을 하려면 주무관청의 승인이 필요하고(제4조 제3항), ⑥ 기본재산 처분에 주무관청의 허가 필요하며(제11조 제2항), ⑦ 잔여재산 귀속이 제한되고(제13조), ⑧ 주무관청의 관리감독권이 구체화되며(제14조 제2항, 제3항), ⑨ 비영리법인의 경우 과태료 제재만이 있으나, 공익법인은 징역·벌금 등의 형사처벌 제재도 규정하고 있는(제19조) 등 일반 민법상 비영리법인과 차이가 존재

공익법인에 대한 혜택을 부여받고자 하는 법인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하는 것은 당연하나, 비영리 법인이 장학금 지급을 하려 한다는 이유로 법인이 희망하지도 않는 규제를 강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공익법인법 제4조에 따라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이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기본재산(사단법인 3억, 재단법인 5억)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공익법인 설립허가를 해 주고 있는데,[66] 장학금 지급 사업 법인은 공익법인으로만 설립허가 할 수 있다면, 일정 재산 이하 장학 법인은 공익법인 허가가 되지 아니하나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므로 민법상 비영리 법인으로도 설립허가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를 우려가 있음

※ 또한 공익법인은 그 수익사업의 수혜자를 제한할 수 없는데(공익법인법 시행령 제6조), 출생지 · 출신학교 · 직업 · 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당해 법인과의 특수관계 등에 따라 장학금 지급을 하려는 법인의 경우 그 취지를 존중하여 일반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허가할 것이지, 공익법인으로 설립허가 하고 공익법인법에 따라 수혜자 제한을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다만 장학사업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인이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설립되더라도, 판례가 '설립허가 근거법'이 아닌 '법인의 사업내용'을 기준으로 공익법인 여부를 판단[67]하고, 공익법인법 제2조도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익법인법에 따라 설립되지 않은 법인도

66) 서울시교육청 2011년 공익법인 업무편람 10면

67) 대법원 2010다43580호, 77도4002호 등.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 법률이 규제대상으로 하는 동법 제2조 소정의 공익법인은 민법 제32조 소정의 비영리법인 중 순수한 학술, 자선 등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 소정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거나 주로 위와 같은 학술, 자선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와함께 부수적으로 그 이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법인만을 말하는 것"이라고 판시

장학사업 등을 주 목적으로 행할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공익법인법 규정의 적용을 받게될 수 있음

나. 공익법인이 기존의 장학사업과 함께 교육사업의 일환인 평생교육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가능

-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법 제2조의 적용범위에 비추어 볼 때,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법인은 교육시설 또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을 그 독립된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보임

- 그러나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평생교육법 제28조 제5항이 명시적으로 공익법인을 평생교육시설 설립주체로 규정하고 있고,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도 공익법인이 통상의 목적사업 외 다른 사업도 함께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익법인도 평생교육 사업 수행이 가능함

  ※ 공익법인이 평생교육 사업만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나, 학술·자선 단체가 부수적으로 평생교육을 실시(예컨대, 성매매여성의 자활을 돕기 위한 단체가 그들을 상대로 미용·메이크업 등의 직업 교육을 하는 경우)하는 것은 평생교육법 및 공익법인법 규정상 가능함

2013. 2.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다른 주무관청 소관 사업 수행 관련

검토 배경

- '13. 1. OOOOO에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관련 재단법인의 인허가 등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법령해석 요청

질의 내용

- 재단법인을 설립할 경우 그 설립목적이 2 이상의 행정관청과 관련되는 경우 각각 주무관청의 허가를 모두 얻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
- 기존 재단법인이 설립목적과 관련 없는 새로운 목적을 추가하려는 경우 설립허가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로 새로운 사업도 가능한지 여부
- 재단법인이 설립허가를 한 주무관청 소관의 사업이 아닌 다른 주무관청 소관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③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설립허가신청) ② 공익법인의 사업이 2이상의 주무관청의 소관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설립허가) ② 제4조제2항의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주무 관청은 다른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그 설립허가를 하여야 한다.

검토 개요

가. 봉안시설 설치·관리 재단법인의 경우 설립목적이 2 이상 행정관청과 관련되면 각각 설립허가를 얻어야 하는지 : 각각 허가 필요

- 민법 제32조는 비영리법인이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68]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민법상 비영리 법인이 2개 이상 행정관청 소관 사업을 하는 경우 모든 행정관청의 허가가 필요한지 또는 일부 행정관청 허가로 충분한지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함

68) 민법은 주무관청의 정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주무관청은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주관하는 행정관청'으로 해석됨{「민법주해」, p555, 박영사(2008)}

- 다만 학설상으로는 “법인의 목적이 두 개 이상의 행정관청의 소관사항인 때에는 그들 행정관청 모두 주무관청이며, 그 중 어느 하나의 허가를 얻지 못하면 법인은 설립되지 못한다”라는 것이 다수설[69]의 입장임

- 민법이 법인설립 허가주의를 취하는 이유는 무분별한 법인 난립을 방지하고 법인을 관리·감독하기 위해서인데, 업무 소관 행정관청이 아니면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를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학설상 다수설과 같이 각각 설립허가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70]

  ※ 다만 공익법익법이 적용되는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5조 제2항 규정상 주된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이 설립허가의주체가 되고, 다른 행정관청과 ‘협의’가 필요할 뿐이나, 검토요청 사안의 경우 공익법인법이 적용되는 사례가 아니므로, 민법상 원칙에 따라 소관 주무관청의 허가를 전부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함

나. 기존 재단법인이 새로운 목적을 추가할 경우 설립허가 주무관청의 정관 변경허가만으로 충분한지 : 다른 주무관청의 허가도 필요

- 민법 제45조 제2항, 제42조 제2항에 따라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음

- 재단법인의 새로운 목적사업 추가는 정관의 변경을 의미하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데, 이 때 ‘주무관청’의 의미는 설립허가시 ‘주무관청’의 의미와

69) 「주석 민법」 p599, 한국사법행정학회(2002)

70) 하나의 주무관청 허가만으로 충분하다고 해석한다면, 본건 법령해석 사안과 같은 경우 봉안시설 설치·관리 사업을 하는 법인이 보건복지부의 설립허가 및 이후 관리를 전혀 받지 않을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는바, 결국 종교와 분묘 사업을 동시에 하려는 법인은 양 사업 소관 행정관청 전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봄이 타당함

동일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정관변경을 통해 새로운 목적을 추가할 경우에는 그 목적 사업 소관 행정관청의 정관변경 허가 또한 필요하고, 허가 없이 이루어진 정관변경은 그 범위에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됨

나. 재단법인이 설립허가를 한 주무관청 소관 사업이 아닌 다른 주무관청 소관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 다른 주무관청의 허가 필요

- 재단법인도 법상 절차에 따라 정관의 변경은 가능하므로, 정관 변경을 통해 설립허가 주무관청 소관 업무 외 사업도 추진 가능함

- 다만 이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으로부터 정관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음[71), 72)]

71) 새롭게 정관변경, 사업추가를 하는 경우, 기존 정관 및 사업의 일부 변경도 이루어지게 되므로 기존 설립허가 주무관청 등의 허가 또한 필요함

72) 공익법인법이 적용되는 법인의 경우 주된 주무관청의 설립·정관변경 허가만 필요하고, 다른 주무관청은 주된 주무관청이 각 허가시 협의하는 것으로 충분하나, 민법이 적용되는 법인의 경우 모든 소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현행 법률 해석론에 대해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공익법인법 적용 법인의 경우 ① 사업범위가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범위 내로 제한되고, ② 수익사업을 하려면 주무관청의 승인이 필요하며(제4조 제3항), ③ 기본재산 처분에 주무관청의 허가 필요하고(제11조 제2항), ④ 잔여재산 귀속이 제한되며(제13조), ⑤ 주무관청의 관리감독권이 구체화되며(제14조 제2항, 제3항), ⑥ 비영리법인의 경우 과태료 제재만이 있으나, 공익법인은 징역·벌금 등의 형사처벌 제재도 규정하고 있는 점(제19조) 등을 고려하면 설립 및 정관변경 허가 이후에는 관리·감독이 어려운 민법적용 법인의 경우는 설립 및 정관변경 허가시 엄격하게 주무관청 모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2013. 2.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설립허가 지역 외 사업수행 및 법인 설립 허가 취소 관련

검토 배경

- OOOO에서 '2011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자 선정 취소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법령해석 요청

질의 내용

- 서울특별시에서 설립허가 받은 사회복지법인이 OOOO 분사무소 설치에 관한 정관변경 인가 승인을 받지 않고 OOOO에서 장애인직업재활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행정기관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추가사업자로 지정된 법인을 상대로 분사무소 미설치를 이유로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관련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법인의 설립허가) ① 사회복지법인(이하 이 장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신청 등) ① 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민법

제33조 (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설립허가신청) ② 공익법인의 사업이 2이상의 주무관청의 소관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설립허가) ② 제4조제2항의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주무 관청은 다른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그 설립허가를 하여야 한다.

검토 개요

가. 서울특별시에서 설립허가 받은 사회복지법인이 OOOO에서 사회복지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가능

- 민법 제32, 33, 34조에 의하면 법인은 주무관청[73]의 허가를 얻어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됨

- 이와 관련, 법인의 목적이 두 개 이상 행정관청의 소관일 경우 모든 행정관청의 허가가 필요한지에 대해 견해대립[74]이 있으나,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사항으로 소관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이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사안의 경우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의 설립허가에 의해 법인은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상태임

-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에서 설립허가 받은 사회복지법인이 OOOO 관할 사업을 수행할 권리능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해 보면, 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 주체가 되는데,

- 본건 사회복지법인 정관 제3조 제2항에서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뿐, 분사무소 위치 등에 대한 정관 규정이 없으므로 OOOO 분사무소 설치 및 활동이 정관 위반도 아니고,

73) 민법은 주무관청의 정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주무관청은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주관하는 행정관청'으로 해석되는데{「민법주해」, p555, 박영사(2008)}, 본건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시·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무소 소재지 소관 시·도지사가 주무관청의 역할을 담당함

74) 민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의 경우, "법인의 목적이 두 개 이상의 행정관청의 소관사항인 때에는 그들 행정관청 모두 주무관청이며, 그 중 어느 하나의 허가를 얻지 못하면 법인은 설립되지 못한다"라는 것이 다수설 입장임{주석 민법」 p599, 한국사법행정학회(2002)}

- 이 때 정관의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법률이나 정관에 정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는 것[75]이므로

- 본건 사회복지법인은 OOOO 관내 사업인 본건 장애인재활직업사업을 수행할 권리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됨

나. 행정기관 착오로 경상남도에 분사무소가 미설치된 법인을 사업자 선정한 경우, 이를 이유로 선정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구체적 사실 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자 선정의 취소가능 문제는 위 사업의 성격, 본건 사회복지법인, OOOO, XXXX부 사이의 각 계약 · 신청 · 허가의 성격 및 내용 등 구체적 사실 관계에 따라 결정될 사안으로 질의내용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음

- 다만 본건 사회복지법인이 분사무소 설치에 관한 정관 변경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는 본 사업이 당연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 결국 XXXX부 회신과 동일하게, 분사무소 미등기를 이유로 권리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시정명령 · 법인설립 허가취소를 할 수는 없으나, 다만 경상남도 분사무소 설치 및 경상남도의 허가가 사업 관련 허가 및 계약의 중요부분이었다면 사안에 따라 취소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 · 검토가 필요한 부분임

75)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8821호 등.

2012. 8.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공익법인의 주무관청 결정 근거 관련

검토 배경

- '13. 3. OOOO에서 설립허가 신청 법인의 주무관청에 관련 질의

질의 내용

- OXOXOXOX의 주무관청 결정 근거는 무엇인지

관련 규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함)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 (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설립허가 기준) ③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2조(정의) ①「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각호생략)

② 제1항의 법인에는 제1항 각호의 사업과 그 이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제4조(설립허가신청) ② 공익법인의 사업이 2이상의 주무관청의 소관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설립허가) ② 제4조제2항의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주무 관청은 다른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그 설립허가를 하여야 한다.

검토 의견

가. 원칙적으로 협의의 주무관청은 사실관계 조사 및 주무관청 상호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임

- 민법, 공익법인법 등은 주무관청의 정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주무관청은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주관하는 행정관청'으로 해석됨[76]

  ※ 이에 통상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관리 · 감독의 주체가 되는 행정관청을 주무관청(협의)으로 칭하고 있으나, 법인의 사업을 주관하는 관청은 모두 해당 법인의 주무관청(광의)임[77]

- 본건 법인은 행정처분에 대한 상담,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자선사업, 영 · 육아보육사업, 노인복지사업, 의료사업 등 다수 사업을 수행하려는

76) 「민법주해」 p555, 박영사(2008)

77) 「민법주해」 p555, 박영사(2008)

법인이므로 광의의 주무관청은 다수이고, 설립허가의 주체가 되는 협의의 주무관청은 결국 관계 사실을 조사하고,[78] 법인의 실제 사업 내용[79]의 중심이 어느쪽인지, 어느 행정관청이 법인 업무를 좀 더 원활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광의의 주무기관 사이 상의 후 협의의 주무관청을 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이는 본건 법인이 '공익법인법에 따른 공익법인'이라는 전제하의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원칙이고, 단순 민법에 의거한 법인이라면 설립을 위해서는 정관에 언급된 관련 주무관청 전체의 설립허가를 얻어야 함

나. 실무적으로는 설립허가 신청을 받은 법인이 주무관청으로서 설립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타 행정부처 소관 법인으로 판단되면 주무관청을 안내할 수는 있는 사안임

- 현재 본건 법인이 OOOO에 설립허가 신청을 하였다면 일응 신청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OOOO가 허가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안임[80]

- OOOO가 본건 법인의 주된 사업의 주무관청이 아니거나, 본건 법인이 OOOO가 주무관청인 사업 관련 공익법인의 설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면,

78) 공익법인법 제4조(설립허가)도 설립허가 신청시 주무관청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설립허가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79) 교육청도 같은 취지에서 정관 규정만에 의하지 않고, 사업계획서, 사업수지예산서 등에서 사업비 총액의 70% 이상 집행하는 사업을 주된사업으로 파악하고 있음[공익법인 실무편람. 2010년판]

80)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건 법인이 노인복지사업도 사업의 내용으로 하고 있어 OOOO도 주무관청으로 설립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음

신청인 의사를 확인하여 주된 사업에 해당하는 행정부처를 안내하거나 또는 설립불허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본건 법인이 공익법인으로 설립허가 신청을 하고 있으나, 공익법인법 제2조에 부합하는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목적사업 중 행정처분에 대한 상담 등은 변호사법 위반 여지도 있는 등 질의사항만으로는 적법한 주무관청을 판단하기 어려움

※ 주무관청 결정에 대한 법리적 근거가 아닌 실제적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OOOO에서 판단할 사항임

2013. 4.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감사와 이사의 겸직가능성에 대한 회신

검토 배경

- '13. 4. OOOO가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류 중 감사가 이사를 겸직할 수 있게 되어있는 정관의 타당성'에 대하여 질의

관련 법령

민법

제57조 (이사)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제58조 (이사의 사무집행) ①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제66조 (감사)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제67조 (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③ 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임원 등)

① 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⑧ 감사는 이사와 제5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그 중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주무 관청이 추천할 수 있다.

검토 개요

가. 직무 성질상 감사의 이사 겸임은 타당하지 아니함

-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에 있어서, 감사와 이사의 겸직을 금지하는 명백한 근거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함[81]

- 다만 법인의 재산상황 및 이사의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는 감사의 직무 성질상 '이사와 감사는 겸임할 수 없는 것'으로 통상 해석되고 있음[82]

※ 법규정에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능(ex. 발기인 / 이사 겸직 여부)

81) 참고로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8항에서 명시적으로 감사의 이사겸임을 금지하고 있음.

82) 「주석 민법」 p736, 한국사법행정학회(2002).

나. 주무관청은 정관상의 문제를 이유로 설립을 불허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라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본건에서 주무관청[83]의 설립허가는 재량행위[84]이므로 이사, 감사 겸직이 규정된 정관을 이유로 설립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또는 위 정관을 시정할 것을 조건[85]으로 설립허가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86]

83) 체육관련 법인이므로 원 소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이나,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권한의 위임을 받은 충청남도가 허가 주무관청

84)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8437 판결 : 민법은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의 자유 설립을 부정하고 있고, 제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 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 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며,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법인설립 불허가처분에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다든지 또는 사회관념 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고, 주무관청이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판단 과정에 일응의 합리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경 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허가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85)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

86) 법인이 정관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법인이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를 근거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2013. 4.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관련 질의

검토 배경

- '13. 4. OOOOO에서 사단법인 감독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질의 사안이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안인지 등을 질의

질의 사안

- '11. 4. 주무관청(OOOOO)에서 법인에 임원정비 등 시정명령
- '12. 8. 법인에서 총회를 통해 새로 임원을 선출
- '12. 12. 및 '13. 1.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선임된 임원 중 일부가 정관상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주무관청이 임원 재선출 권고
- '현재까지 법인에서 주무관청의 권고사항 미이행

관련 규정

민법

제38조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검토 개요

가. 임원 재선출 권고 미이행이 설립허가 조건 위반 또는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면 설립허가 취소 가능

-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는 재량행위[87]이나, 설립허가의 취소는 민법 제3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임[88), 89)]
- 본건 임원 재선출 권고 미이행을 민법 제38조 사유 중 '목적 외 사업 수행'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설립허가 조건의 위반'이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의 취소가 가능함
- 이에 설립허가 조건의 위반인지 여부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허가시 '제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 것만으로 본건을 허가조건 위반이라고 보기는 다소 어렵다고 판단됨

  ※ 법원이 취소사유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고, 학설도 "단순히 주무관청의 제시된 요청사항에 위반하였다고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입장[90]임

87)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8437 판결 : 민법은 ...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며,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

88)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누363호 판결 : 비영리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있어서의 그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의 취소는 민법 제3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89) 대법원 1977. 8. 23. 선고 76누145호 판결 : 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는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존재가 공익을 해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한편 감독관청에 제출할 서류를 기한 보다 지연하여 제출한 사실만으로 설립허가조건을 위배하였다 하여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행위는 재량권의 범위를 심히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

90) 「민법주해」 p555, 박영사(2008)

- 다만 자격조건이 위배된 임원을 의도적으로 선출하고, 이러한 임원들의 업무수행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인정된다면 이 경우 설립허가 취소가 가능할 것이지만, 위해성은 주무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판단할 사항임

2013. 5.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법인 설립주체성

검토 배경

- '13. 4. OOOOOO부에서 비영리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설립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

관련 법령

민법

제31조 (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 (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규칙

제2조(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생년월일의 등기) 법인의 임원·사원·업무집행자· 청산인의 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임원·사원·업무집행자·청산인이 주민등록 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그 생년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한다.

1. 비영리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②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공익법인법

제5조(임원 등) ④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검토 개요

가. 원칙적으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이 가능함

● 비영리법인 설립 관련 규정인「민법」[91]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91) 민법 제3장 법인편 제31조~제97조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등에 외국인 등의 설립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음

- 또한 「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규칙」 등에 외국인 등의 법인설립을 예정한 규정도 존재함

- 따라서 원칙적으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이 가능함

※ 참고로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의 과반수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는 제한 등이 있으나, 민법상 비영리법인에는 위와 같은 제한이 존재하지 아니함

나. 다만 주무관청에서 제반사정을 이유로 설립을 불허할 수는 있음

-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는 재량행위[92] 이므로 외국인 등의 설립에 문제가 있다면 주무관청이 설립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음

92)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8437 판결 : 민법은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의 자유 설립을 부정하고 있고, 제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 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 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며,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법인설립 불허가처분에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다든지 또는 사회관념 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고, 주무관청이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판단 과정에 일응의 합리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경 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허가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013. 5.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비법인사단의 법인설립 관련 질의회신

검토 배경

- '13. 5. OOOOO에서 '(가칭) 사단법인 OOOOO 호남향우회총연합회'(이하 '호남향우회'라고 함)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

관련 법령

민법

제31조 (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 (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검토 개요

가. 비법인사단의 정식 법인설립이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님

- OOOOO에서는 호남향우회가 비법인사단으로 이미 판례상 단체성을 인정받고 있으므로 법인설립 허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아닌지 질의하고 있음

- 그러나 비영리법인 설립 관련 규정인「민법」[93]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비법인 사단의 법인설립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음

  ※ 참고로 구민법에서는 '공익법인'만이 민법상 법인이 될 수 있던 관계로 영리를 추구하지 않더라도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는 법인이 될 수 없었으나, 현재는 그와 같은 제한은 없음

- 판례가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종중, 교회 등 비법인사단에 단체성을 이미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비법인사단의 법인설립 허가를 금지하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려움

  ※ 실제로 비법인사단이 차후 설립허가를 받은 사례들도 다수 존재(대법원 2010다10986호, 2009다22419호, 서울서부지법 2009가합9034호 등)

- 나아가 민법 제32조에서 명시적으로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교가 목적이라는 것만으로 법인설립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나. 다만 주무관청에서 제반사정을 이유로 설립을 불허할 수는 있음

- 따라서 질의한 바와 같이 비법인사단이 법인설립 허가신청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93) 민법 제3장 법인편 제31조~제97조.

●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는 재량행위[94] 이므로 호남향우회 설립에 정책적·사실적 문제가 있다면 주무관청이 설립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는 있음

2013. 6.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공익법인(장학재단) 정관의 목적 변경과 수익사업 허가 관련 질의 회신

검토 배경

● '13. 6. OOOO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함)에서 공익법인(장학재단)의 정관변경 및 수익사업 허가신청과 관련하여 질의

94)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8437 판결 : 민법은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의 자유 설립을 부정하고 있고, 제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 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 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며,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법인설립 불허가처분에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다든지 또는 사회관념 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고, 주무관청이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판단 과정에 일응의 합리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경 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허가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질의 내용

● 공익법인(장학재단)이 의료기관 개설 등 내용으로 정관변경 및 수익사업 허가를 신청한 것이 타당한지

- 장학법인의 의료사업 관련 정관 변경을 허가해야 하는지
- 의료관련 정관변경을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 장학법인이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분사무소 설치시 허가 가능 여부

관련 규정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함)

제4조(설립허가 기준)

③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2조(정의)

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각호생략).

② 제1항의 법인에는 제1항 각호의 사업과 그 이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제4조(설립허가신청)

② 공익법인의 사업이 2이상의 주무관청의 소관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설립허가)

② 제4조제2항의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다른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그 설립허가를 하여야 한다.

검토 의견

가. 공익법인(장학재단)이 의료기관 개설 등 내용으로 정관변경 및 수익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 가능

- 공익법인에는 공익법인법에 따른 협의의 공익법인[95]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함)에 따른 광의의 공익법인[96]이 존재

- 상증법 시행령 제12조 제4호[97]는 의료법인을 광의의 공익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광의의 공익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음은 당연함

95) 공익법인법 제2조 :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

96) 상증법 제16조 :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

97)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4호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또한 ①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민법 기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데위 특별법에 공익법인법을 제외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② 공익법인법 제4조 제3항, 동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공익법인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점 등에서 협의의 공익법인도 의료기관을 개설 · 운영하는 것이 가능함

  ※ 수익사업과 영리사업은 구별되는 개념으로, 공익법인은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사업'은 할 수 없으나 법인의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은 할 수 있음

- 따라서 공익법인이 의료기관 개설 관련 정관변경, 수익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님

나. 공익법인(장학재단)이 정관변경 허가를 요청하는 경우 교육청은 변경허가를 해야 하는지 : 허가가 강제되지는 아니함

- 공익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대해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법제에서 설립허가는 주무관청의 재량행위[98]이고, 정관변경 허가 또한 주무관청의 재량행위[99]임

98)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8437 판결 : 민법은 ...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며,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

99) 대법원 1985. 8. 20. 선고 84누509 판결 :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이나 정관변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제도 아래에서는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이나 정관변경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그 본질상 주무관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행위 (본 판례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판례이나 공익법인에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됨)

- 따라서 주무관청인 교육청에서 정관변경 필요성 등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 후 불허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변경 불허 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고, 변경허가가 강제되는 것은 아님

다. 의료관련 내용의 정관변경을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지 : 가능

- 추가되는 내용(의료)의 소관을 변론으로 하고, 새로운 내용의 추가는 '현행 정관의 변경'을 의미하므로 현행 정관에 따른 주무관청인 교육청의 정관변경 허가가 필요함

- 다만 보건복지부 소관(실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의료 관련 목적사업이 추가되는 경우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광의의 주무관청[100]에 해당되게 됨

- 따라서 의료 관련 사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는 정관 변경 허가를 위해서는 교육청이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사전에 협의[101]할 필요는 있음

  ※ 다만 대외적으로 정관변경 허가 등 관리·감독을 하는 '협의의 주무 관청'은 그 법인의 '주된 사무'를 주관하는 관청이므로 정관 변경 후 의료 관련 사업이 장학사업보다 주된 사무가 된다면 협의의 주무관청이 변경될 수 있으나, 그러한 변경이 없다면 교육청이 계속 정관변경 허가 주체임

100)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 공익법인의 사업이 2이상의 주무관청의 소관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01)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5조 "다른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부분 참조

라. 공익법인이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분사무소 설치시 교육청의 허가 가능 여부 : 가능

- 현재 교육청이 공익법인의 주무관청이므로 그 분사무소 설치 관련 정관변경도 당연히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다만 정관변경 허가시 관계부처(본건에서는 OOOO시)와의 협의가 필요함

2013. 7.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경우 공익법인 설립이 강제되는지 여부

검토 배경

- '13. 6. 법무법인 AA에서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함)의 해석과 관련하여 질의

질의 요지

- 장학사업을 부수목적사업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반드시 공익법인으로 설립해야 하는지 아니면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도 설립 가능한지 여부

관련 규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① 법 제2조에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1. 학자금·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연구비·연구조성비·장려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문·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3.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이들 사업을 지원하는 도서관·박물관·과학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4. 불행·재해 기타 사정으로 자활할 수 없는 자를 돕기 위한 모든 자선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행하는 사업

검토 개요

가. 장학사업을 부수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을 공익법인이 아닌 민법상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 가능한지 여부 : 가능

- 민법과 공익법인법을 단순히 일반법·특별법의 관계로 보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장학사업을 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공익법인법이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함

- 그런데 공익법인법 제1조는 동법의 목적을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국가배상법 등과 같은 우선 적용 규정도 없으므로[102] 공익법인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에서 민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에는 해석상 어려움이 있음

- 한편 '공익법인'이라 칭해지는 법인은 공익법인법에 따른 협의의 공익법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광의의 공익법인[103]이 있는데, 협의의 공익 법인에는

10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조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국가배상법 제8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다만, 「민법」 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103) 상증법 제16조 :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 이라 한다)"

상증법 등에 따른 혜택[104]이 부여되는 반면 법에 따른 엄격한 규제[105]가 이루어짐

- 그런데 공익법인의 혜택을 부여받고자 하는 법인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할 수는 있겠으나, 협의의 공익법인 설립을 강요할 법적 근거는 없고, 결국 어떤 형태의 법인을 설립할지는 설립자의 자유라고 할 것임

※ 공익법인법 제4조에 따라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이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기본재산(사단법인 3억, 재단법인 5억)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공익법인 설립허가를 해 주고 있는데,[106] 장학금 지급 사업 법인을 공익법인으로만 설립할 수 있다면, 일정 재산 이하 장학법인은 재산 부족으로 공익법인 허가도 받을 수 없고,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므로 민법상 비영리 법인 허가도 받을 수 없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를 우려가 있음

104) 출연자에 대한 상속세면제(상증법 제16조 제1항),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면제(상증법 제48조 제2항), 고유목적준비금의 손금삽입(법인세법 제29조),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등

105) ① 사업범위가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범위 내로 제한되고, ② '이사회' 설치가 의무화되며(제6조), ③ 임원 관련 요건이 강화되고(제5조), ④ 상근 임직원 수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야 하며(제5조 제9항), ⑤ 수익사업을 하려면 주무관청의 승인이 필요하고(제4조 제3항), ⑥ 기본재산 처분에 주무관청의 허가 필요하며(제11조 제2항), ⑦ 잔여재산 귀속이 제한되고(제13조), ⑧ 주무관청의 관리감독권이 구체화되며(제14조 제2항, 제3항), ⑨ 비영리법인의 경우 과태료 제재만이 있으나, 공익법인은 징역·벌금 등의 형사처벌 제재도 규정하고 있는(제19조) 등 일반 민법상 비영리법인과 차이가 존재

106) 서울시교육청 2011년 공익법인 업무편람 10면

※ 또한 공익법인은 그 수익사업의 수혜자를 제한할 수 없는데,[107] 출생지 · 출신학교 · 직업 · 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당해 법인과의 특수관계 등을 고려하여 장학금 지급을 하려는 법인이 있다면 그 취지를 존중하여 (공익법인의 혜택은 부여하지 않더라도) 일반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허가할 것이지, 공익법인으로 설립허가 하고 공익법인법이라는 이유로 위와 같은 수혜자 제한을 금지하는 것 또한 논리적으로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다만 장학사업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인이 민법상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되더라도, 판례가 '설립허가 근거법'이 아닌 '법인의 사업내용'을 기준으로 공익법인 여부를 판단[108]하고, 공익법인법 제2조도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익법인법에 따라 설립되지 않은 법인도 장학사업 등을 주 목적으로 행할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공익법인법 규정의 적용을 받게될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임

- 특히 장학사업을 부수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라면 공익법인법의 적용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더 적다 할 것이므로, 민법상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나. 다만 주무관청의 비영리 법인 설립허가가 강제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재단법인이 장학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일부 수행하더라도 민법상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는

107)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6조

108) 대법원 2010다43580호, 77도4002호 등.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 법률이 규제대상으로 하는 동법 제2조 소정의 공익법인은 민법 제32조 소정의 비영리법인 중 순수한 학술, 자선 등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 소정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거나 주로 위와 같은 학술, 자선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와함께 부수적으로 그 이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법인만을 말하는 것"이라고 판시하는 등 공익법인인지 여부를 설립 허가 내용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사업내용을 확인하는 경우가 상당수임

재량행위[109]이므로 주무관청에서 공익법인으로 설립해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설립을 불허하는 것 또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공익법인법은 주무관청의 시정이나 정지명령 등 다양한 관리·감독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 및 각 주무관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은 설립허가 취소(민법 제38조) 및 벌칙(민법 제97조) 외에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판례는 설립허가의 취소는 민법 제3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취소사유를 제한하고 있으며,[110] 학설도 "단순히 주무관청의 제시된 요청사항에 위반하였다고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입장[111]이고, 공익법인법 제정 이유 자체가 민법상 규정만으로는 공익성을 유지하는 법인 규제가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영리 재단법인을 일단 설립허가한 이후에는 관리·감독이 극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므로 주무관청에서 차후의 여하한 문제발생 소지 등을 근거로 공익법인 설립을 권고하면서 비영리 재단법인 허가를 불허하는 것 또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109)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8437 판결 : 민법은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의 자유 설립을 부정하고 있고, 제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 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 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며,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법인설립 불허가처분에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다든지 또는 사회관념 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고, 주무관청이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판단 과정에 일응의 합리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경 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허가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10)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누363호 판결 : 비영리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있어서의 그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의 취소는 민법 제3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111) 「주석민법」 p643, 한국사법행정학회(2002)

2013. 5.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비영리법인 대표자 자격 제한 관련

검토 배경

- '13. 7. AAA에서 비영리법인 대표자격과 관련 문의

질의 개요

-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 법률적으로 비영리법인 대표이사 자격이 있는지
- 정관상 임원 중 '회장은 축산물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를 대표 자격 판단에 적용할 수 있는지

관련 규정

민법

제38조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임원 등)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검토 개요

가. 벌금 300만원 선고 받은 사실은 비영리법인 (대표) 이사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민법」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는 이사의 자격에 대한 규정이 없음
- 다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제6항에서 공익법인 임원의 자격제한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음
- 강한 공익성을 요구하는 공익법인에서도 '벌금 선고'를 임원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은 점 등을 볼 때 비영리법인에서 '벌금 선고 사실'이 이사 결격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나. 본건 정관규정을 근거로 대표 자격을 제한하기는 어려움

- 공익법인법은 주무관청의 시정이나 정지명령 등 다양한 관리 · 감독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 및 각 주무관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은 설립허가 취소(민법 제38조) 및 벌칙(민법 제97조) 외에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또한 설립허가의 취소를 극히 제한하는 것이 판례 입장임[112)]

- 따라서 본건에서 비영리법인의 주무관청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으므로,* 정관규정의 해석을 통해 대표이사 자격을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민법상 벌칙규정 및 법인해산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함

112)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누363호 판결 : 비영리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있어서의 그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의 취소는 민법 제3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2013. 10.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A부 소관 사업수행 법인을 B부에서 설립허가 할 수 있는지 관련

검토 배경

- '13. 9. AAAA부에서 BBBB부의 'CCCC산업협회 설립허가' 적법성 관련 질의

질의 내용

- AAAA부 소관 사항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협회(민법상 사단법인)를 BBBB부가 설립허가할 수 있는지
- 사업내용이 AAAA부와 관련이 있는 협회를 AAAA부와 협의 없이 허가하는 것이 위법하지 아니한지

관련 법령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설립허가신청) ② 공익법인의 사업이 2이상의 주무관청의 소관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설립허가) ② 제4조제2항의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주무 관청은 다른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그 설립허가를 하여야 한다.

검토 개요

가. AAAA부 소관 사항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협회를 BBBB부가 설립허가 할 수 있는지 : BBBB부와도 관련 있는 경우 허가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AAAA부의 설립허가도 필요

- 민법 제32조는 비영리법인이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113]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민법상 비영리 법인이 2개 이상 행정관청 소관 사업을 하는 경우 모든 행정관청의 허가가 필요한지 또는 일부 행정관청 허가로 충분한지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함
- 다만 학설상으로는 "법인의 목적이 두 개 이상의 행정관청의 소관사항인 때에는 그들 행정관청 모두 주무관청이며, 그 중 어느 하나의 허가를 얻지 못하면 법인은 설립되지 못한다"라는 것이 다수설[114]의 입장임

113) 민법은 주무관청의 정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주무관청은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주관하는 행정관청'으로 해석됨{「민법주해」, p555, 박영사(2008)}

114) 「주석 민법」 p599, 한국사법행정학회(2002)

※ 다만 공익법익법이 적용되는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5조 제2항 규정상 주된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이 설립허가의주체가 되고, 다른 행정관청과 '협의'가 필요하나, 검토요청 사안의 경우 공익법인법이 적용되는 사례가 아니므로, 민법상 원칙에 따라 소관 주무관청의 허가를 전부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함

- 민법이 법인설립 허가주의를 취하는 이유가 무분별한 법인 난립을 방지하고 법인을 관리·감독하기 위해서인데, 업무 소관 행정관청이 아니면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를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학설상 다수설과 같이 각각 설립허가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115), 116)]

나. 사업내용이 AAAA부와 관련 있는 협회의 설립허가를 BBBB부가 협의 없이 허가한 것은 절차 위반인지 :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움

- 통상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관리·감독의 주체가 되는 행정관청을 주무관청(협의)으로 칭하고 있으나, 법인의 사업을 주관하는 관청은 모두 해당

115) 하나의 주무관청 허가만으로 충분하다고 해석한다면, 본건의 경우 타부처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관리 감독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문제가 있음

116) 공익법인법이 적용되는 법인의 경우 주된 주무관청의 설립·정관변경 허가만 필요하고, 다른 주무관청은 주된 주무관청이 각 허가시 협의하는 것으로 충분하나, 민법이 적용되는 법인의 경우 모든 소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현행 법률 해석론에 대해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공익법인법 적용 법인의 경우 ① 사업범위가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범위 내로 제한되고, ② 수익사업을 하려면 주무관청의 승인이 필요하며(제4조 제3항), ③ 기본재산 처분에 주무관청의 허가 필요하고(제11조 제2항), ④ 잔여재산 귀속이 제한되며(제13조), ⑤ 주무관청의 관리감독권이 구체화되며(제14조 제2항, 제3항), ⑥ 비영리법인의 경우 과태료 제재만이 있으나, 공익법인은 징역·벌금 등의 형사처벌 제재도 규정하고 있는 점(제19조) 등을 고려하면 설립 및 정관변경 허가 이후에는 관리·감독이 어려운 민법적용 법인의 경우는 설립 및 정관변경 허가시 엄격하게 주무관청 모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함

법인의 주무관청(광의)임[117]

- 공익법인법에 따른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광의의 주무관청이 복수일 때, 관계 사실을 조사하고,[118] 법인의 실제 사업 내용[119]의 중심이 어느쪽인지, 어느 행정관청이 법인 업무를 좀 더 원활하게 관리 · 감독할 수 있는지 검토한 후 광의의 주무기관 사이에서 상의를 통해 협의의 주무관청을 정하는 것이 원칙임

  ※ 따라서 본건 법인이 '공익법인'이라면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등에 의해 주된 사업을 주관하는 관청에서 설립허가를 해야 하고,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해 관계부처와는 협의를 할 의무가 있으므로, AAAA부가 주된 사업의 관할부처라면 설립허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관계부처라도 협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가능함

- 그런데 CCCC산업협회는 공익법인이 아니므로, BBBB부의 설립허가를 절차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움

  ※ 다만 전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AAAA부의 설립허가도 있어야 온전한 설립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학설의 다수설임

117)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 공익법인의 사업이 2이상의 주무관청의 소관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18) 공익법인법 제4조(설립허가)도 설립허가 신청시 주무관청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설립허가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119) 교육청도 같은 취지에서 정관 규정만에 의하지 않고, 사업계획서, 사업수지예산서 등에서 사업비 총액의 70% 이상 집행하는 사업을 주된사업으로 파악하고 있음[공익법인 실무편람. 2010년판]

2013. 11.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잔여재산 관련 정관변경 허가 관련

검토 배경

- '13. 11. OOOO시에서 정관변경 허가 관련 질의

질의 사안

- A 교회가 설립한 B 재단법인이 해산절차를 진행하면서, 잔여 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과 유사한 단체에 기부'하도록 되어있는 정관 규정을 '당초 출연한 자에게 귀속'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경우, 주무관청이 이를 허가해야 하는지 여부

- B 재단법인이 A 교회를 '법인과 유사한 단체'로 보아 잔여재산을 A 교회에 기증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사안

민법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②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42조 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②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95조(해산, 청산의 검사, 감독)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검토 개요

가. 정관변경을 허가할 것인지는 주무관청의 자유재량 사항임

-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가능하고(민법 제45조 제1항),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음(민법 제45조 제3항, 제42조 제2항)

- 그런데 정관변경 허가는 주무관청의 자유재량 행위이므로 정관변경을 허가해 줄지는 B 재단법인의 사업목적 등을 고려하여 주무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B 재단법인의 신청에 따라 이를 허가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 대법원은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이나 정관변경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그 본질상 주무관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행위로서 그 허가 여부에 대하여 다툴 수 없는 법리이므로 비영리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을 불허가한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라고 판시(대법원 84누509호 판결)

나. B 재단법인이 A 교회에 잔여재산을 기부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주무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임

-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을 의미하므로 해산시 잔여재산은 정관상 목적에 맞게 처분되어야 하고, 사단법인의 경우에도 구성원들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식의 처분은 금지되므로 재단법인의 경우에도 당연히 설립자가 반환받아 간다는 취지의 재산처분은 허용될 수 없음

-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 하에 유사한 목적에 처분하는 것은 허용되나, B 재단법인과 A 교회의 목적이 동일한지, 재산이 기부되는 경우 B 재단법인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될 것인지 등은 구체적 사실판단을 요하므로 주무관청에서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 본건에서 기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기증이 B 재단법인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 등을 주무관청이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14. 8.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비영리법인 활동범위 관련

검토 배경

- OO부에서 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 관련하여 질의

질의 사안

-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설립 허가를 한 지자체의 지역적 범위를 벗어나 분사무소 설치 등의 절차 없이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는 경우 법인의 활동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인지 여부

관련 법령

민법

제33조 (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검토 개요

가. 특정 지자체에서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이 다른 지역에서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지 : 원칙 가능

- 민법 제32, 33, 34조에 의하면 법인은 주무관청[120]의 허가를 얻어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됨

- 이 때 정관의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법률이나 정관에 정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는 것[121]이므로

- 원칙적으로 정관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비영리법인은 설립허가한 지자체 외의 지역에서도 사업을 수행할 권리능력이 있음

  ※ A 지자체에서 설립 허가한 장학재단이 반드시 A지역 주민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B 지자체에서 설립 허가한 문화 재단이 B지역 주민에게만 공연·전시 등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님

나. 법인에 대한 조치방법이 있는지 : 설립허가 취소 검토 여지

- 비영리법인의 설립에는 허가주의가 적용되므로(민법 제32조) 주무관청은 설립허가 시 조건을 붙일 수 있는데, 법인이 이러한 조건을 위반 하거나 기타

120) 민법은 주무관청의 정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주무관청은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주관하는 행정관청'으로 해석되는데{「민법주해」, p555, 박영사(2008)}, 본건에서는 환경부 및 환경부장관의 설립허가 권한을 위임받은 경기도를 주무관청으로 볼 수 있음

121)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8821호 등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민법 제38조)

- 따라서 만약 해당 법인 설립 허가시 설립을 허가한 지자체 외에서 사업을 하지 않도록 조건을 붙인 경우나, 비영리법인이 지자체 지역 외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공익을 해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상 설립허가 취소가 가능할 여지는 있음

  ※ 설립 허가시 조건을 붙이지 않은 경우에는 지자체 지역 외 활동을 문제 삼기 어려움. 공익을 해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법원은 취소사유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고, 학설도 "단순히 주무관청의 제시된 요청사항에 위반하였다고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입장[122]임

2014. 8.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이사 임면 사항의 조례 규정 여부 관련

검토 배경

- AA도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이사임면과 관련하여 질의

122) 「주석민법」 p643, 한국사법행정학회(2002)

질의 내용

- (질문 1)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법인 설립 근거가 되는 조례에 규정할 수도 있는지
- (질문 2) 비영리법인 이사임면에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 (질문 3) 조례에 법인 이사 인사청문회 규정을 두는 것이 위법한지

관련 법령

민법

제41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이하 생략)

제46조(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제60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검토

가.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설립근거가 되는 조례가 아닌 정관에 규정되어야 '유효'함

- 민법은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과 관련하여 제41조에서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60조에서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 사건 비영리법인이 AA도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더라도 설립 이후 독립한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례의 변경만으로 당연히 이사임면 및 이사 대표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조례에 규정될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아니한 이사도 정관 규정에 따라 선임되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는다면 유효하게 이사로 임명되고, 업무를 집행할 수 있음

나. 비영리법인 이사 임명에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조례에 맞춰 비영리법인 정관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나, 조례의 개정이 정관변경을 당연 강제하는 것은 아님

- 비영리 사단법인은 민법 제42조, 비영리 재단법인은 민법 제45, 제46조에 따라 정관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설립근거인 조례에 맞춰 정관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 현재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비영리 법인은 모두 주무관청이 ‘AA도’인 ‘재단법인’으로 현행 정관에는 ‘도지사가 이사를 임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도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도지사가 임면’하는 식으로 변경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 비영리법인은 독자적 법인격이 인정되므로 조례 변경이 있다고, 이에 맞추어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님

- 정관상 AA도지사가 이사 임면을 하는 등, AA도에서 법인을 실질 운영하고 있으므로, 법인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조례에 맞게 정관을 변경하고, 주무관청인 AA도가 이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함

다. 인사청문회 규정 방식에 따라 조례의 위법성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음

- 이 사건 비영리법인의 원 주무관청은 안전행정부이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도·감독 업무가 AA도에 위임되어 있는 상황임

- AA도지사의 법인 '정관변경 허가 업무'는 기관위임 사무[123]이므로, 도지사의 정관변경 허가 업무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함

※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이 때 사무란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를 가리키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한한다. 그러므로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할 것(대법원 2004추34호 판결 등)

123) 국가 등의 사무가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것. 이 경우 수임기관인 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등의 기관의 지위에서 그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효과는 당연히 국가 등에 귀속되고, 이에 대한 감독은 위법사유뿐만 아니라 부당사유에 대하여도 행해질 수 있으며, 비용도 국가가 부담.

- 그러나 상당수 시 · 군 · 구 등 지자체가 통상 시 · 군 · 구의 자체 예산으로 비영리 재단법인(소위 '문화재단')을 설립한 후 조례를 통해 이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재단 설립 · 운영 업무는 자치사무로 판단할 수 있음

  ※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4추34호 판결 등)

- 따라서, AA도가 재단 설립 · 운영자의 지위에서 '재단 운영 방식'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 종합하면, AA도지사가 이사 임면에 대한 정관 변경 승인을 할 때 조례에 따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조례는 위법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으나, AA도지사가 이사 임면을 할 때 조례에 따른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조례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2014. 8.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공익재단 해산시 잔여재산 귀속 및 관리 관련

검토 배경

- AA구에서 공익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귀속 및 관리주체 등에 대하여 질의

질의 내용

- (질문 1) 재단법인 OO장학회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주체가 AA구인지 AA교육청인지
- (질문 2) 해산 후 잔여재산의 관리주체는 AA구인지, AA교육청인지
- (질문 3) 잔여재산을 사회복지 및 인재육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재단에 증여 및 무상대부가 가능한지

관련 법령

공익법인법

제13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에 귀속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대부(無償貸付)한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공익법인은 그 정관에 당해 공익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이 귀속될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공익법인의 청산인은 해산 후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잔여 재산이 귀속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잔여재산의 목록을 제출하고, 지체 없이 권리 이전절차를 취한 후 재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 재산은 주무관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당해 법인의 주무관청이 교육부장관인 경우에는 교육감)이 관리하되,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 에게 증여하거나 무상대부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검토

가. 잔여재산의 귀속주체는 'AA구'임

- 공익법인법 제13조는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 사건 재단법인 정관 제36조는 "잔여재산은 AA구에 귀속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잔여재산의 귀속주체는 'AA구'임

나. 잔여재산의 관리주체는 'AA시교육청'임

-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 재산은 주무관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당해 법인의 주무관청이 교육부장관인 경우에는 교육감)이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 사건 재단법인은 장학재단으로 주무관청은 교육부이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AA시교육감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재산의 관리주체는 'AA시 교육청'임

  ※ 따라서 잔여재산의 등기명의자 및 예금주 등은 AA구가 될 것이지만, 위 재산의 관리는 AA시교육청이 담당

다. 잔여재산을 사회복지재단에 증여 및 무상대부가 가능한지는 주무관청의 판단사항임

-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에 따라 잔여재산은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대부될 수 있는데, 목적의 유사성 및 대부 등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은 주무관청(AA시교육청)에서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장학재단의 재산은 '장학'이라는 목적에 바쳐진 재산이므로 그 처분에 있어서 주무관청(교육부 및 그 위탁을 받은 교육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공익법인법 및 동 시행령의 취지임

2015. 5.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법인 임원의 연임제한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검토 배경

- '15. 5. ○○○○시에서 법인 임원의 연임제한 규정의 해석에 대하여 질의

질의 내용

-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A는 정관에 "대표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이 경우, 1회 연임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대표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지 혹은 2회 대표회장으로 선출되면 일정기간이 지나더라도 다시 대표회장으로 선출될 수 없는지 여부

검토 의견 : 1회 연임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대표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음

- 연임(連任)이란 “원래 정해진 직위를 다 마친 후에 계속하여 그 직위에 머무르는 것”[124]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관에서 “1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2회 연속하여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후 다음 임기에는 대표이사로 선출될 수 없음

- 다만 일정기간이 지난 후 다시 대표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사단법인 A는 정관에 중임을 1회로 제한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중임(重任)이란 “현재의 임기만료 후 바로 연이어 취임(연임)하거나 그렇지 않고 퇴임한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다시 취임하는 경우”를 모두 지칭하는 것으로 연임보다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정관에서 “중임할 수 없다” 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 연임여부와 관계없이 중임제한 규정에 따라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임원의 취임이 제한됨

- 따라서 정관에 중임제한 규정이 없는 이상, 1회 연임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대표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다고 해석됨

124)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2015. 12.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공익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검토 배경

- '15. 12. ○○○○시에서 공익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주체와 관련하여 질의

질의 내용

- 지방자치단체인 ○○○○시에서 재산 출연을 통해 공익법인B를 설립 · 운영 중에 있음
- 이 사건 공익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 주체를 "○○○○시 교육청"에서 "○○○○시"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검토 의견 : 정관변경은 가능하나, 변경하더라도 관리주체는 ○○○○시 교육청이 됨

-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 제13조에 따라 해산한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주무관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당해 법인의 주무관청이 교육부장관인 경우에는 교육감)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규정을 둔 이유는, 출연자 및 운영자가 청산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익법인 제도의 기본취지에 반하며, 공익적 견지에서 잔여재산이 동일한 목적으로 계속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대부(無償貸付)한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공익법인은 그 정관에 당해 공익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이 귀속될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공익법인의 청산인은 해산후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잔여재산이 귀속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잔여재산의 목록을 제출하고, 지체없이 권리 이전절차를 취한 후 재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 재산은 주무관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당해 법인의 주무관청이 교육부장관인 경우에는 교육감)이 관리하되,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게 증여하거나 무상대부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공익법인법」 제13조 제1항은 잔여재산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관변경을 통해 귀속주체를 "○○○○시 교육청"에서 "○○○○시"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됨

- 다만 장학재단과 같이 주무관청이 교육부인 공익법인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125]이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정관을 변경하더라도 재산관리주체는 ○○○○시 교육청이 되므로 정관변경의 실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움

2015. 12.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비영리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등에 관한 질의 회신

검토 배경

- '15. 11. ○○구에서 비영리법인의 사무처리 관련 질의

질의 내용

125)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비영리법인의 관리·감독 권한이 교육감에게 위임된 경우. 이 사건 공익법인도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관리·감독 권한이 ○○○○시 교육감에게 위임되었음

- (질문 1 및 질문 2) 비영리법인에서 기본재산 담보제공에 관한 정관변경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담보로 제공된 기본재산이 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 (질문 3) 기본재산 처분시, 주무관청에서는 법인의 목적사업에 준해서만 허가를 해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법인의 수익사업에도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 (질문 4) 법인 사무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권한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여부

질의 1 : 경매를 통한 기본재산의 처분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자체는 주무관청의 허가대상이 아니나, 기본재산이 정관의 별지에 기재되어 정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결국 기본재산의 처분은 정관의 개정사항이 되어 정관변경절차가 필요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대법원의 등기예규 제886호도,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증여, 교환, 신탁해지, 공유물분할, 그 밖의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매매·증여 등 정관 변경을 수반하는 기본재산의 처분의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경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임(대법원 1967. 2. 22. 선고 65마704 결정)

※ 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기본재산의 처분은 무효이며(대법원 1978. 7. 25. 선고 78다783 판결), 대법원 등기예규 제886호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는 등기이전이 허용되지 않음

- 기본재산 처분을 위한 정관 변경의 허가는 기본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측에서 받아야 하며, 경매를 신청하는 법인의 채권자나 경매 매물을 경락받은 자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

※ 대법원 판례도 "재단법인의 채권자가 재단법인을 상대로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 신청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9202 판결)

질의 3 : 기본재산은 다양한 사유를 들어 처분할 수 있음

- 민법은 기본재산의 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기본재산의 처분사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제11조 제3항 참조)

- 따라서 사무실 이전, 채무변제, 목적사업 수행, 수익사업 개시 등 다양한 사유를 들어 기본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며, 주무관청에서는 해당 기본재산의 성질(현금 또는 환가가 어려운 채권·부동산), 법인의 재정적 사정, 처분의 불가피성, 처분사유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본재산 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변경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음

질의 4 : 법인사무 전반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 민법은 제37조에서 비영리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검사·감독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음

- 감독대상인 법인의 사무에는 법인의 활동업무(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의 수행) 뿐만 아니라 법인의 재산상황(기본재산 등)에 대한 검사·감독도 포함되며, 주무관청이 법인사무를 검사·감독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음[126]

  ※ 각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은 검사 · 감독의 방법으로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제8조)

-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법인의 활동업무·재산상황 등 법인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독권이 인정되므로, ① 정관변경허가 등 각종 허가신청에 대하여 제반사정을 파악하기 위한 경우, ② 법인설립허가 취소사유[127](특히 목적 외 사업수행이나 영리행위여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③ 과태료 부과대상[128]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등 비영리법인 전반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126) 김용담 대표 집필, 주석 민법 민법총칙(1), 2010년, 647면

127)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28) 민법 제97조(벌칙)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2.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
3. 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4.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제76조와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79조,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7. 제88조, 제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민법상 법인의 부동산 취득과 처분 등에 따른 등기예규(대법원등기예규 제886호)

제정 1997.09.11 [등기예규 제886호, 시행]

- 본문
- 개정이유
- 개정문

제정 1997.09.11 등기예규 제886호

1)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부동산에 관하여 법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민법상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부동산을 매매, 증여, 유증, 그 밖의 원인으로 취득하고 법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2)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가.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증여, 교환, 신탁해지, 공유물분할, 그 밖의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해 부동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아님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위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나. 다만,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또는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다.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무효,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단, 합의해제의 경우는 제외)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신청 또는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와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신청의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 증여, 교환, 신탁해지, 공유물분할, 그 밖의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이외에 근저당권 등의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도 그 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해 부동산이 법인의 기본재산이 아님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위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기본재산의 경매와 주무관청의 허가(등기예규 제104호, 예규집 93항),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처분 등과 주무관청의 허가(등기예규 제780호, 예규집 94항)는 이를 폐지한다.

(출처 : 민법상 법인의 부동산 취득과 처분 등에 따른 등기예규 제정 1997.09.11 [등기예규 제88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2016. 1.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질의 회신

검토 배경

- '15. 12. ○○○○부에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업무 관련 질의

질의 내용

-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요건 중 하나로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법인의 종류가 다른 경우에도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설립허가를 불허해야 하는지 여부

※ 사안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AA"와 명칭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사단법인 AA"의 설립허가신청을 불허해야 하는지 여부

「○○○○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① ○○○○부장관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맞는 경우 그 설립을 허가한다.

1.~2. (생 략)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검토 의견 : 법인의 종류가 다르다면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음

-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제3자 입장에서 하나의 법인으로 오인되거나 행정상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나,
  -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4조에서 민법법인은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임을 명칭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 점,
  - 상업등기선례에서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특수법인의 명칭에는 법인의 종류(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를 기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점[129]에 비추어[130],
-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등기부에 현출되는 명칭은 법인의 종류에서 명확하게 구분되므로 제3자의 오인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워, 법인의 종류가 다르다면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129) 2007. 3. 5. 상업등기선례 제200703-1호

130) 즉, "사회복지법인 AA"는 법인의 명칭에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음

2016. 1.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비영리재단법인의 정관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검토 배경

- '15. 11. ○○○○부에서 비영리재단법인의 정관과 관련하여 질의

질의 내용

- 재단법인은 사단법인과 달리 사원을 둘 수 없는바, 정관에서 "회원"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여부

검토 의견 : 단순 이용자 또는 기부자인 '회원'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음

가. 원칙적으로 재단법인에 사원을 둘 수 없음

-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이 법인으로 된 것으로, 설립자의 의사(정관)에 의하여 타율적으로 활동한다는 점에서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들의 통합된 의사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사단법인과 구별됨

※ 민법은 사단법인에 대하여 사원총회에서 정관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민법 제42조), 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 정관에서 변경방법을 정한 경우에 한하여 정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민법 제43조)

- 따라서 원칙적으로 재단법인에는 법인의 운영을 위한 이사 외에 법인의 구성원인 '사원'을 둘 수 없음

나. 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단순 이용자로서의 "회원"은 허용됨

- 다만, 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단순 이용자 또는 기부자에 대하여 정관에서 회원으로 인정하고 회원에게 법인의 사업내용을 공개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는 등 일정한 편의를 제공하여 주는 경우,
  - 법인의 구성원으로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는 사단법인의 '사원'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우며, 법인과 관련된 이용자 등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회원'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다고 해석됨

- 이 경우 '회원'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는 정관에 규정하기 나름이나,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방법 결정 등 사단법인의 사원과 유사한 권한이 인정되는 등 단순히 이용자 또는 기부자로서의 '회원'의 의미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관변경이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정관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주무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임

2016. 1.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총회 결의의 의사정족수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검토 배경

- '15. 12. ○○○○○○부에서 비영리사단법인 사원총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관련하여 질의

질의 내용

- '비영리사단법인 사원총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문제가 된 법인의 정관변경 신청 내용

총회는 회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의사정족수(총회의 성회요건) : 총 회원의 1/5 이상 출석

※ 의결정족수(총회의 결의요건) : 총 회원의 1/5 이상 출석 및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

검토 의견 :

가. '의사정족수'를 회원 5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허용됨

- 총회의 성립과 관련된 의사정족수의 경우, 민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정관에서 정하여야 할 사항임

- 총회의 성회요건을 반드시 결의요건과 일치시킬 필요는 없으며, 총회에서 최종적인 의결을 하지 못하더라도 총회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점[131]에 비추어, 정관에서 총회의 성회요건인 의사정족수를 1/5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도 허용됨

  ※ 국회법 제73조도 본회의 개의요건인 의사정족수를 재적의원 5분의 1로 규정하고 있어 본회의의 의결정족수와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음

나. 다수결에 의한 합의체의 의사결정을 형해화하지 않는 범위에서 '의결정족수'를 완화하는 것도 허용됨

- 민법 제75조는 총회의 결의와 관련하여,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총회결의를 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정관에서 달리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상법 제391조 제1항은 주식회사 이사회의 의결정족수와 관련하여 정관으로 의결정족수를 가중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여 민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음

131) 송덕수, 신민법강의 제7판, 박영사, 2014년, 442쪽; 김용담 대표집필, 주석민법 민법총칙(1) 제4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0년, 780쪽

●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헌법 제21조)에 따라 사단법인의 설립·운영자는 법인 운영에 있어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규모가 큰 사단법인의 경우 의결정족수에서 총사원 과반수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총회의결을 어렵게 할 소지도 있으므로, 정관에서 민법 규정보다 완화하여 규정하는 것도 허용됨

※ 주식회사의 총회 의결정족수의 경우 과반수출석을 요구하지 않으며(상법 제368조), 비법인사단인 종중(宗中)의 경우에도, 대법원 판례는 비법인사단인 종중의 의결정족수로 '출석 종중원의 과반수'만을 요구할 뿐, '전체 종중원의 과반수 출석'을 요구하지 않고 있음(94다17772 등)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 "이사회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정관이 정한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된 「사립학교법」 제18조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07. 11. 16.)에서도, "다수결에 의한 합의체의 의사결정을 형해화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학교법인은 정관으로 의결정족수를 낮출 수 있다."고 해석한 바 있음

● 다만 의결정족수를 완화하는 경우에도, 당해 사단법인의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을 형해화할 정도에 이른 경우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움

※ 의결정족수에서 "출석한 사원의 과반수 찬성"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단체의 의사결정의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함[132)]

- 따라서 의결정족수를 민법 제75조의 규정보다 완화하여 정관에 규정할 수 있으나, 주무관청에서 합의체의 의사결정을 형해화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관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할 수 있음

2016. 3.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검토 배경

- '15. 12. ○○○○에서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신청 관련 질의

질의 내용

- (질문 1) 부동산인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신청을 허가할 때

132) 정동윤 외 5인 대표집필, 주석상법 회사법(3), 한국사법행정학회, 2003년, 79쪽

매매대금을 예금으로 유지하고 추후 부동산을 매입 또는 신축하면 이를 기본재산으로 다시 편입하도록 조건을 붙인 경우, 위 매매대금을 기본재산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문 2) 기본재산의 처분허가 시, 매매금액과 관련하여 공시지가나 감정평가서 검토 없이 허가를 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 (질문 3) 비영리법인 이사진이 아닌 자가 창건주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후 정관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에도 정관변경을 허가할 경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질문 4) 관련 소송이 진행 중임을 들어 정관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할 경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 1 : 정관상 기본재산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재산은 일반적으로 법인의 존립기초가 되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되며, 기본재산의 경우 정관에 기재하여 관리하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이하 생략)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동법 제45조제3항 또는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 공익법인과 달리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있어 기본재산의 처분 자체는 주무관청의 허가대상이 아니나, 기본재산이 정관의 별지로 구성되어 있어 기본재산의 변동은 정관의 개정사항이 되어 정관변경절차를 거칠 필요(민법 제45조 및 법인규칙 제6조)가 있으며, 주무관청은 기본재산의 매각에 관하여 정지조건부허가 등을 부관으로 하여 허가할 수 있음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50044 판결

기본재산의 처분허가에 부관을 붙인 경우 그 처분허가의 법률적 성질이 형성적 행정행위로서의 인가에 해당한다고 하여 조건으로서의 부관의 부과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그것이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중 어느 종류의 부관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부관의 내용, 경위,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사안의 경우, 기본재산인 부동산의 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변경을 허가하면서 향후 매각대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구매할 때까지 매각대금을 정기예금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매각대금 보관이 기본재산처분의 허가조건으로 되어 있더라도, 재단법인의 이사회가 정관을 변경함에 있어 기본재산의 매각대금을 정관상 기재되는 기본재산으로 편입[133]하여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주무관청도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이 기본재산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질의 2 : 감정평가서, 지가확인서 등의 확인을 통해 매매대금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성은 있음

- 주무관청이 기본재산의 처분을 허가함에 있어, 법인이 보유한 재산의 원활한 관리 및 유지와 재정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반대급부인 매매대금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33) 정관으로 정하기에 따라 부동산 외에 유체동산이나 예금·주식·채권 등도 기본재산으로 할 수 있음

- 법인규칙은 제6조에서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기본재산의 가액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 감정평가서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 관련자료를 통해 기본재산 처분의 불가피성과 매매대금의 타당성 등을 검토[134]하여, 매매대금이 위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기본재산의 처분허가를 불허할 수 있음

질의 3 : 정관변경허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다른 이유를 들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민법 제45조 및 제46조에 규정된 재단법인 정관변경신청에 대한 허가는 법률상 표현이 "허가"로 되어 있으나, 대법원 판례는 정관변경의 허가는 그 성질에 있어 법률행위를 보충해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 그 법적 성질을 "허가"가 아닌 "인가"로 보고 있음

대법원 1996. 5. 16. 선고 95누4810 전원합의체 판결

인가는 기본행위인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이 되는 정관변경 결의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하여도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으므로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가

134) 서울특별시교육청, 2011 공익법인실무매뉴얼, 2011년, 37쪽

적법 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 따라서 기본행위(이사회의 정관변경 결의 등)에 하자가 있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재산의 소유권 귀속이나 재단법인의 운영권 분쟁 등의 여부와는 별개로 행정청의 정관변경허가(실질은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이에 대하여 별도로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질의 4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불허가처분은 행정심판법 제2조[135] 및 행정소송법 제2조[136]에 규정된 "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주무관청)을 상대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135)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136) 행정소송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처분"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2016. 8.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정관변경 허가신청시 일부 규정에 대한 허가 관련 검토

검토 배경

- '16. 6. ○○○○○○, 정관변경 허가신청시 일부 사항에 대한 허가 가능여부 질의

질의 내용

-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제4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에 대하여, 신청 사항 중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검토 의견

- 주무관청은 개정될 정관 규정이 반영된 새로운 '정관'(이하 '허가 대상 정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허가를 하는 것으로서, '허가 대상 정관' 규정 중 일부 규정만을 선택적으로 허가할 수 없다고 판단됨

-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이 때 주무관청은 '정관 규정'의 변경이 아니라 '정관'의 변경에 대하여 허가[137), 138)]하여야 함

- 또한, 정관변경 허가신청에 대한 허가는 법률상 표현이 "허가"로 되어 있으나, 그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주무관청이 사인의 법률행위를 보충해주는 "인가"로 보고 있음[139)]

※ 행정법상 인가는 신청에 따라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보충적 행위로서, 항상 상대방의 신청에 의해 행해지고 인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내용은 신청인이 결정하며 행정청은 인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인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내용을 수정하여 인가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것임[140)]

- 따라서 '허가 대상 정관'에 대하여, 그 중 일부 정관 규정을 허가하지 않고 나머지 정관 규정만 반영된 정관을 허가하는 것은, 사실상 '허가 대상 정관'의 내용을 수정하여 인가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아니함

- 결국, 주무관청은 허가신청한 '허가 대상 정관' 전체에 대한 허가 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이지, 그 중 일부 정관 규정만을 선택적으로 허가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137)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민법 제42조제2항)

138) 각 소관부처 법인규칙도 법인이 정관 변경 허가를 받으려면 '개정될 정관(신·구대비표 첨부)' 즉, 정관 전문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139) 대법원 1996. 5. 16. 선고 95누4810 전원합의체 판결

140) 박균성, 『행정법론(上)』, 박영사, 2014, 330면

2016. 8.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민법」 제97조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검토 배경

- '16. 7. ○○○○시로부터 「민법」 제97조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질의

질의 내용

- 「민법」 제97조제4호의 과태료 부과권자가 누구인지
- 해산신고 기한인 3주가 지나서 주무관청에 해산신고한 경우, 「민법」 제97조제4호의 '주무관청에 사실을 은폐한 때'에 해당되는지

검토 의견

- 「민법」 제97조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과태료 재판을 개시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며, 주무관청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 이를 법원에 통지할 수 있음
  - 「민법」 제97조제4호는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이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

- 「민법」에서 정하는 사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1호가목,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141]), 법인의 주무관청이「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하여 법인에게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
- 민사상 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그 실질에 있어서는 일종의 행정처분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됨[142](「비송사건절차법」제247조[143])
- 「비송사건절차법」은 과태료 사건에 대한 관할과 재판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바, 법원이 과태료에 처하여야 할 사건이 있다고 판단하면 이 법에 의하여 직권으로 과태료 처분의 재판을 개시하는 것이고,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의 신청은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음[144]
- 따라서 「민법」제97조제4호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를 받을 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직권으로 과태료 재판을 개시함으로써 이루어지고, 법인의 주무관청은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법원에 과태료 사항을 통지할 수 있음

● 「민법」 제86조에 따른 해산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여 법원에 통지할지 여부는 기한 내 신고하지 않는 경위, 은폐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무관청에서 판단한 사안임

141) 민법, 상법 등 사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나 민사소송법, 가사소송법 등 분쟁 해결에 관련한 절차를 규율하는 법의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지 아니함

142) 박준서, 『주석 민법(총칙(2))』, 한국사법행정학회, 2001년, 40면

143) 비송사건절차법 제247조: 과태료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144) 대법원 1998. 12. 23. 98마2866 결정

2016. 8.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공익법인의 임원 정수 증감 관련 질의 검토

검토 배경

- '16. 7. ○○시로부터 공익법인의 임원 정수 증감에 대하여 질의

질의 내용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임원 수를 5명 미만 또는 15명 초과로 정수 증감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검토 의견

- 「공익법인법」 제5조제1항 규정의 문리적 해석대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으면 5명 미만 또는 15명 초과로 정수 증감이 가능함

2016. 11.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민법 제75조 총회 결의 방법 관련 질의 검토

검토 배경

- '16. 10. ○○○○부로부터 민법 제75조 총회 결의 방법에 대하여 질의

질의 내용

- 민법 제75조 총회의 결의 방법과 관련하여, 원격통신수단을 통한 결의가 가능한지 여부

검토 의견

- 민법에서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결의 방법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격통신수단을 통한 결의는 총회의 결의 방법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민법 제75조제1항은 '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결의권은 사원 스스로 출석하여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러한 원칙을 엄격히 관철한다면 경우에 따라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사원은 결의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총회가 유회(流會)[145]되는 우려가 있으므로, 민법 제73조제2항은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146]
- 한편, 상법 제391조제2항은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위 상법 규정의 취지는, 회사의 규모가 커져 이사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사들이 동일한 장소에서 일시에 회합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다자간 통신회의를 통하여 협의와 의견교환이 가능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147]
- 다만, 상법상 이사회의 의결에는 이사가 '출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원격통신수단을 이용한 '서면결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님
- 결국, 현행 민법에서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결의 방법에 관하여 상법과 달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총회의 결의 방법은 사원의 직접 출석만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불합리를 피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총회의 결의 방법에 원격통신수단을 통한 결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145) 성원 미달이나 그 밖의 이유로 회의가 성립하지 아니함

146) 김용담, 『주석민법 총칙(1)』, 한국사법행정학회, 2010, 774면

147) 권재열, 『주석상법-회사법(3)』, 한국사법행정학회, 2014, 270면

실무자를 위한
비영리·공익 법인 관리·감독 업무 편람

부 록

민법, 공익법인법·시행령, 법무부 법인규칙 4단 비교

부록 : [민법, 공익법인법·시행령, 법무부 법인규칙 4단 비교]

민 법	공익법인법	공익법인법 시행령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정의) 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1. 학자금·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 생년월일(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를 적은 서류 및 정관) 1부

민 법	공익법인법	공익법인법 시행령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 연구비·연구조성비·장려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문·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3.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이들 사업을 지원하는 도서관·박물관·과학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4. 불행·재해 기타 사정으로 자활할 수 없는 자를 돕기 위한 모든 자선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행하는 사업 ② 제1항의 법인에는 제1항 각호의 사업과 그 이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민 법	공익법인법	공익법인법 시행령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기준) ①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 · 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②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징수, 수혜(受惠) 대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설립허가신청) ①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정관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정관 1부 4. 재단법인인 경우에는 출연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한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기부신청서 1부,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회비징수예정명세서 또는 기부신청서 1부 5. 삭제 6. 부동산·예금·유가증권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등의 증명서 1부 7. 사업개시예정일 및 사업개시이후 2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8.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창립총회회의록 및 사원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사원명부(사원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사원의 총수를 기재한 서류) 각 1부	제4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1.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②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민 법	공익법인법	공익법인법 시행령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9. 삭제 ② 공익법인의 사업이 2이상의 주무관청의 소관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회비·기부금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목적사업이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4조제2항의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다른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그 설립허가를 하여야 한다.	

민 법	공익법인법	공익법인법 시행령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설립허가시에 붙일 조건) ①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사단법인의 경우에 회비에 의하여 경비에 충당할 비율과 회비징수방법 기타 회비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수혜자의 출생지·출신학교·직업·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당해 법인과의 특수관계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뜻 3. 목적사업의 무상성 기타 목적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목적사업의 원활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정관상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재산을 추가출연하고자 하는 경우의 정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함에 있어서 제1항제2호의 조건을 반드시 붙이되, 주무관청이 수혜자의 범위를 특히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한정할 범위에 관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등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설립이 허가되는 공익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말한다)과 합의하여야 한다.	

민 법	공익법인법	공익법인법 시행령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재산이전의 보고) 공익법인(재단법인에 한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출연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3개월 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부동산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재산이전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수익사업의 승인신청) ① 공익법인이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경영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추정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1부 3. 사업에 종사할 임원명부 1부 4. 행정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공익법인이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민 법	공익법인법	공익법인법 시행령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9조(설립등기등의 보고) 공익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등기등을 한 때에는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기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설립 관련 보고) ①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제3조제3호에 따른 재산을 비영리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36조(법인의 주소)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민 법	공익법인법	공익법인법 시행령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제14조(감독) ①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주무 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의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해당 공익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를 발생시킨 경우 3.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한 경우 ③ 주무 관청은 수익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공익법인에 대하여 그 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수익을 목적사업 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 2.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공익법인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제출)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민 법	공익법인법	공익법인법 시행령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7조(감사 등) ① 주무 관청은 감독상 필요하면 공익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업무재산관리 및 회계를 감사하여 그 적정을 기하고,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그 밖에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법인사무의 감사) ① 주무관청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행함에 있어서는 공익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 기타 참고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를 감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주무관청은 직전 회계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게 할 수 있다. ④ 주무관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와 별도로 회계감사를 받게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회계감사로 제3항에 따른 감사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감사인은 감사를 종료한 후 지체 없이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① 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법인에 관계 서류·장부나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비영리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민 법	공익법인법	공익법인법 시행령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설립허가의 취소) ① 설립허가를 한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공익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일부의 목적사업에 해당 사유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2.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6.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취소는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감독청이 시정을 명령한 후 1년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다.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청문) 주무 관청은 제16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부록 : [민법, 공익법인법·시행령, 법무부 법인규칙 4단 비교]

민 법	공익법인법	공익법인법 시행령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9조(영리법인)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사단법인에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3조(정관의 준칙 등) ① 공익법인은 정관에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定數)·임기 및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1.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정관에 기재할 사항) ① 공익법인의 정관에는 법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에 관한 사항 2.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사원 및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익법인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사업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민 법	공익법인법	공익법인법 시행령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1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10조(정관변경허가신청) 공익법인이 민법 제42조제2항, 동법 제45조제3항,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이유서 1부 2. 정관개정안 1부 3.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4.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구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4조(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민 법	공익법인법	공익법인법 시행령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6조(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제47조(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출연재산의 귀속시기) ①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②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민 법	공익법인법	공익법인법 시행령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①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제50조(분사무소설치의 등기) ①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사무소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전조제2항의 사항을 등기하고 다른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내에 그 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민 법	공익법인법	공익법인법 시행령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1조 (사무소이전의 등기) ① 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제49조제2항에 게기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제52조(변경등기) 제49조제2항의 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2조의2(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53조(등기기간의 기산) 전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제54조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① 설립등기 이외의 본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민 법	공익법인법	공익법인법 시행령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5조(재산목록과 사원명부) ① 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년 3월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은 성립한 때 및 그 연도말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단법인은 사원명부를 비치하고 사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재산) ① 공익법인의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하며,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을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는 경우 3. 기본재산의 운용수익이 감소하거나 기부금 또는 그 밖의 수입금이 감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여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이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 관청에 대한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1.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기본재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매도·교환 또는 용도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6조(재산의 구분) ① 공익법인의 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③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보통재산이 과다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기본재산의 처분) ① 법 제11조제3항 제1호에 따라 기본재산의 매도 · 증여 · 임대 또는 교환에 관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그 허가신청서에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분재산명세서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작성한 감정평가서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확인서(교환의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민 법	공익법인법	공익법인법 시행령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 제3항제3호에 해당하여 기본재산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 이 경우 직전 편입이 있은 날부터 최소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⑤ 공익법인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4.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교환 또는 매도의 경우에 한한다) ② 삭제 ③ 법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기본재산의 담보에 관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그 허가신청서에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담보에 제공할 재산목록 2. 피담보채권액 3. 담보권자 4.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 5.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④ 법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기본재산의 용도변경에 관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기본재산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 허가신청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제18조(장기차입에 대한 허가) ① 공익법인이 법 제1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장기차입은 차입하려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② 공익법인이 당해연도의 예산으로 상환할 단기차입을 행한 경우에는 예산수지를 명확히 하여 당해연도내에 반드시 상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민 법	공익법인법	공익법인법 시행령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기본재산의 보통재산으로의 편입) ① 법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기본재산의 운용수익이 감소하거나 기부금 또는 그 밖의 수입금이 감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기본재산의 운용수익이 감소한 경우 2. 기부금 등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이 감소한 경우 3. 회비수입이 감소한 경우 4.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익이 감소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보통재산이 고갈된 경우 ② 공익법인은 법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본재산명세서 및 편입재산명세서 2. 기본재산의 평가액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기본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확인서를 포함한다) 1. 기본재산명세서 및 편입재산명세서	

민 법	공익법인법	공익법인법 시행령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 기본재산의 평가액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기본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확인서를 포함한다) 3. 보통재산 편입 이후 2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제18조의3(기본재산의 처분 등의 신고) ① 법 제11조제4항제1호에서 "매도 · 교환 또는 용도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기본재산을 매도 ·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이하 "매도 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매도등을 할 수 있거나 보통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는 기본재산의 범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기본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중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은 각각 "매도등을 한 날 또는 편입신고를 한 날의 직전 거래일부터 이전 2개월"로 본다	

민 법	공익법인법	공익법인법 시행령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이하 "성실공익법인"이라 한다)이 법 제11조제4항제1호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기본재산의 매도등을 한 경우에는 그 매도등을 한 날부터 3주일 이내에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내에 주무관청에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기본재산명세서 및 매도등을 한 재산의 명세서(제2항에 따른 평가액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각각 포함한다) 2.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3.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④ 성실공익법인이 법 제11조제4항제2호에 따라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본재산명세서 및 편입재산명세서(제2항에 따른 평가액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각각 포함한다) 2. 보통재산 편입 이후 2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3.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4.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민 법	공익법인법	공익법인법 시행령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5. 직전 편입이 있은 날부터 최소 3년이 경과하였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다만, 최초 편입인 경우는 제외한다. 6.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⑤ 법 제11조제4항제2호에 따라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한 성실공익법인은 편입을 한 날부터 3주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주무관청은 지체 없이 제3항 또는 제4항 각 호의 서류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익법인에게 보정(補正)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성실공익법인은 보정을 요구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이를 보정하여야 한다.	
	12조(예산 및 결산 등) ① 공익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익법인은 주무 관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해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산보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공익법인은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다음 해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공익법인의 재산관리, 예산편성,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사업계획등의 제출) ① 공익법인이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 공익법인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실적 및 결산은 해당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민 법	공익법인법	공익법인법 시행령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③ 성실공익법인은 제2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내역(해당 회계연도의 사용내역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 자료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 사용내역(해당 회계연도의 사용내역을 말한다) 4. 기본재산의 목록	
제56조(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제57조(이사)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제5조(임원 등) ① 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③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제7조(임원취임승인신청) ① 공익법인이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임원취임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의 서류는 주무관청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하고, 연임되는 임원에 대한 취임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호·제3호·제5호 및 제7호의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민 법	공익법인법	공익법인법 시행령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⑤ 이사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⑦ 이사나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기면 2개월 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⑧ 감사는 이사와 제5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그 중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주무 관청이 추천할 수 있다. ⑨ 공익법인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상근임직원의 수를 정하고 상근임직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한다.	1. 임원의 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 이력서 1부 3. 임원으로 취임하려는 사람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4. 취임승낙서 1부 5. 민간인 신원진술서 4부 6. 삭제 7.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임원의 특수관계부존재각서 ② 삭제 제12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교 · 자선 · 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공무원, 그 밖에 국가 · 지방자치단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특수관계자로 보지 아니한다.	

민 법	공익법인법	공익법인법 시행령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1. 출연자(출연자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한 출연자를, 출연자가 그 밖의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 다만, 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2. 제1호에 따른 출연자(이하 "출연자"라 한다) 또는 이사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람 가. 6촌 이내의 혈족 나. 4촌 이내의 인척 다.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친생자(親生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親養子)로 입양된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비속(直系卑屬) 3.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5. 당해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사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한다"고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민 법	공익법인법	공익법인법 시행령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1.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자 1인과 그와 제1항제2호·제4호 및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이하 "지배주주"라 한다)들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 및 제2호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③ 특수관계가 없는 이사가 재임중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어 특수관계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2월 이내에 특수관계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이 초과되지 아니하도록 이사를 개임하여야 한다.	
		제14조(상근직원의 정수 승인신청) 공익법인이 법 제5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근직원의 정수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승인신청서에 기구도표와 부문별 또는 개인별 관장업무를 명시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이사의 사무집행) ①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②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제6조(이사회) ① 공익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15조(이사회의 소집승인 신청) 법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소집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민 법	공익법인법	공익법인법 시행령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1.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사유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을 증명하는 서류 3. 이사회를 소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손해의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7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공익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공익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이사장이나 이사가 공익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8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민 법	공익법인법	공익법인법 시행령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闕位)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이사가 이사회를 주재한다.		
	제9조(의결정족수 등) ① 이사회의 의사(議事)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③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다. ④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59조(이사의 대표권) ①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 법	공익법인법	공익법인법 시행령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0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61조(이사의 주의의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제62조(이사의 대리인 선임)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임시이사의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64조(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65조(이사의 임무해태)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민 법	공익법인법	공익법인법 시행령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6조(감사)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제13조(주무관청의 감사추천) ① 주무관청은 법 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감사 1인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설립허가시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추천을 행함에 있어서는 공익법인에게 후보를 선정하여 추천을 의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추천의뢰된 자 중에 적격자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추천 의뢰를 요구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으로부터 감사 1인을 추천한다는 뜻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월내에 추천의뢰가 없는 경우 또는 주무관청의 추천에 의하여 임명된 감사가 임기만료 기타의 사유로 결원이 된 때에도 제2항과 같다. ④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종전에 그 법인의 감사중 1인을 주무관청이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새로이 법 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당해 공익법인의 감사중 이사회에서 지명한 자 1인은 주무관청에서 추천한 감사에 대한 취임승인이 있은 날의 전일에 퇴직된 것으로 본다.	

민 법	공익법인법	공익법인법 시행령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7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제10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3.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② 감사는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 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이사가 공익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공익법인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留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총회의 권한)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민 법	공익법인법	공익법인법 시행령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0조(임시총회) ① 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청구있는 후 2주간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71조(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1주간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72조(총회의 결의사항) 총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73조(사원의 결의권) ① 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②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4조(사원이 결의권없는 경우)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민 법	공익법인법	공익법인법 시행령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5조(총회의 결의방법) ① 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② 제73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제76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77조(해산사유) ①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②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제78조(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79조(파산신청)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민 법	공익법인법	공익법인법 시행령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②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13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대부(無償貸付)한다.	제25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공익법인은 그 정관에 당해 공익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이 귀속될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공익법인의 청산인은 해산후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잔여재산이 귀속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잔여재산의 목록을 제출하고, 지체없이 권리 이전절차를 취한 후 재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 재산은 주무관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당해 법인의 주무관청이 교육부장관인 경우에는 교육감)이 관리하되,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게 증여하거나 무상대부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2.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총회의 회의록 1부(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 등으로 「민법」 제80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재산처분에 대한 총회의 결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제81조(청산법인)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제82조(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민 법	공익법인법	공익법인법 시행령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3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84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제85조(해산등기) ①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52조의 규정은 전항의 등기에 준용한다.			
제86조(해산신고) ①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전조 제1항의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청산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 및 주소를 신고하면 된다.			제10조(해산신고) ① 비영리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민 법	공익법인법	공익법인법 시행령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7조(청산인의 직무) ①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인도 ② 청산인은 전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88조(채권신고의 공고) 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민 법	공익법인법	공익법인법 시행령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② 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89조(채권신고의 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제90조(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 청산인은 제88조제1항의 채권신고기간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제91조(채권변제의 특례) ①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조건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의 불확정한 채권에 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제92조(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민 법	공익법인법	공익법인법 시행령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3조(청산중의 파산) ① 청산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 ③ 제8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공고에 준용한다.			
제94조(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청산 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비영리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5조(해산, 청산의 검사, 감독)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제96조(준용규정) 제58조제2항, 제59조 내지 제62조, 제64조, 제65조 및 제70조의 규정은 청산인에 이를 준용한다.			
제97조(벌칙)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2.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	제19조(벌칙) ① 제4조제3항이나 제11조제3항 · 제4항 또는 제12조제3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 법	공익법인법	공익법인법 시행령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3. 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4.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제76조와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79조,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7. 제88조, 제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1. 제1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 제17조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4. 감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경우 ③ 이사나 감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공익법인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와 주무관청이 추천한 감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조세 감면 등) 공익법인에 출연(出捐)하거나 기부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 증여세 · 소득세 · 법인세 및 지방세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18조(권한의 위임) 주무 관청은 이 법에 정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급관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재산관리) 공익법인은 그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민 법	공익법인법	공익법인법 시행령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21조(예산편성요강) ① 공익법인의 예산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별 및 계정과목별로 구분하여 추정대차대조표와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로 편성한다. ② 제1항의 추정대차대조표는 당해 연도말 현재에 추정되는 재정상태를 표시하되, 전년도말 현재와의 비교증감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추정손익계산서에는 당해 연도에 발행할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계상하되, 전년도의 수익과 비용을 비교·표시하여야 한다. ④ 추정대차대조표와 추정손익계산서의 부속명세서에는 각각 그 추정의 근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22조(회계원칙) ① 공익법인의 회계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② 공익법인의 회계조직은 재무제표규칙을 준용한다.	
		제23조(회계의 구분) ① 공익법인의 회계는 법인의 목적사업 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목적사업회계"라 한다)와 수익사업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수익사업회계"라 한다)로 구분한다.	

민 법	공익법인법	공익법인법 시행령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처리하고, 그 밖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처리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의 배분계산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24조(재산의 평가) 공익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2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임원 취임 승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5조제5항·제8항 및 이 영 제12조에 따른 이사회의 구성 및 감사의 자격과 관련한 특수관계자에 관한 사무 4. 법 제5조제8항에 따른 감사 추천에 관한 사무	

민 법	공익법인법	공익법인법 시행령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5. 법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기본재산 매도 등 또는 보통재산으로의 편입의 허가·신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13조에 따른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사무 7. 법 제14조에 따른 법인 감독에 관한 사무 8. 법 제16조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관한 사무 9. 법 제17조에 따른 법인 감사 등에 관한 사무 10. 제10조에 따른 법인 정관변경의 허가에 관한 사무	
		제28조(준용)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관청이 정하되, 따로 정한 사항이 없는 때에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공익법인 이외의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실 무 자 를 위 한

비영리·공익 법인

관리·감독 업무 편람

Ministry of Justice·Republic of Korea

기획·편집 : **박양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김민지 법무부 전문위원
김혜선 법무부 연구위원
박규진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법무관
이선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법무관

인 쇄 일 : 2016년 12월
발 행 일 : 2016년 12월
발 행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Tel: **(02) 2110-3164**
Fax: **(02) 2110-0325**
인 쇄 처 : 동광문화사
Tel: **(02) 503-5165**

2017

실무자를 위한

비영리·공익 법인 관리·감독 업무 편람

Ministry of Justice·Republic of Korea

법무부